

치안정책연구

민원안내 <특집>

- 운전면허
- 형사민원

치안논단

- 한국경찰변천에 관한 소고
-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테러리즘과 자유민주주의

치안정책연구

민원안내 <특집>

- 운 전 면 허
- 형 사 민 원

치안논단

- 한국경찰변천에 관한 소고
-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테러리즘과 자유민주주의

● 민원안내 <특집>

- 운전면허 / 이영돈
- 형사민원 / 이돈일

● 치안논단

- 한국경찰변천에 관한 소고 / 황택주
-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허경미
- 테러리즘과 자유민주주의 / 주수기

● 법제동향

-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 및 각하제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폭력범죄 선별입건제도
- 캠퍼스이용규범(서울대)

● 외국치안의 이모저모

- 세계의 치안사정 / 황수정
- 하이테크범죄대책 / 최선우


● 현장제언

- 「巡」과 「察」은 만점, 「警戒」·「制壓」은 미숙/이돈일
 - '98. 7. 16, 03:47 신창원 발견시 교훈 -
 - 범죄대응력 강화방안 -
- 치안상황 구내방송 / 황규정

민원안내

이번 호에서는 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민원안내」라는 제하에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게재한 내용중에서 각급 경찰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발췌하고 가·감하여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 주민이 많이 모이는 민원실 및 파출소 등에 비치」활용하도록 하면 민·경친선과 경찰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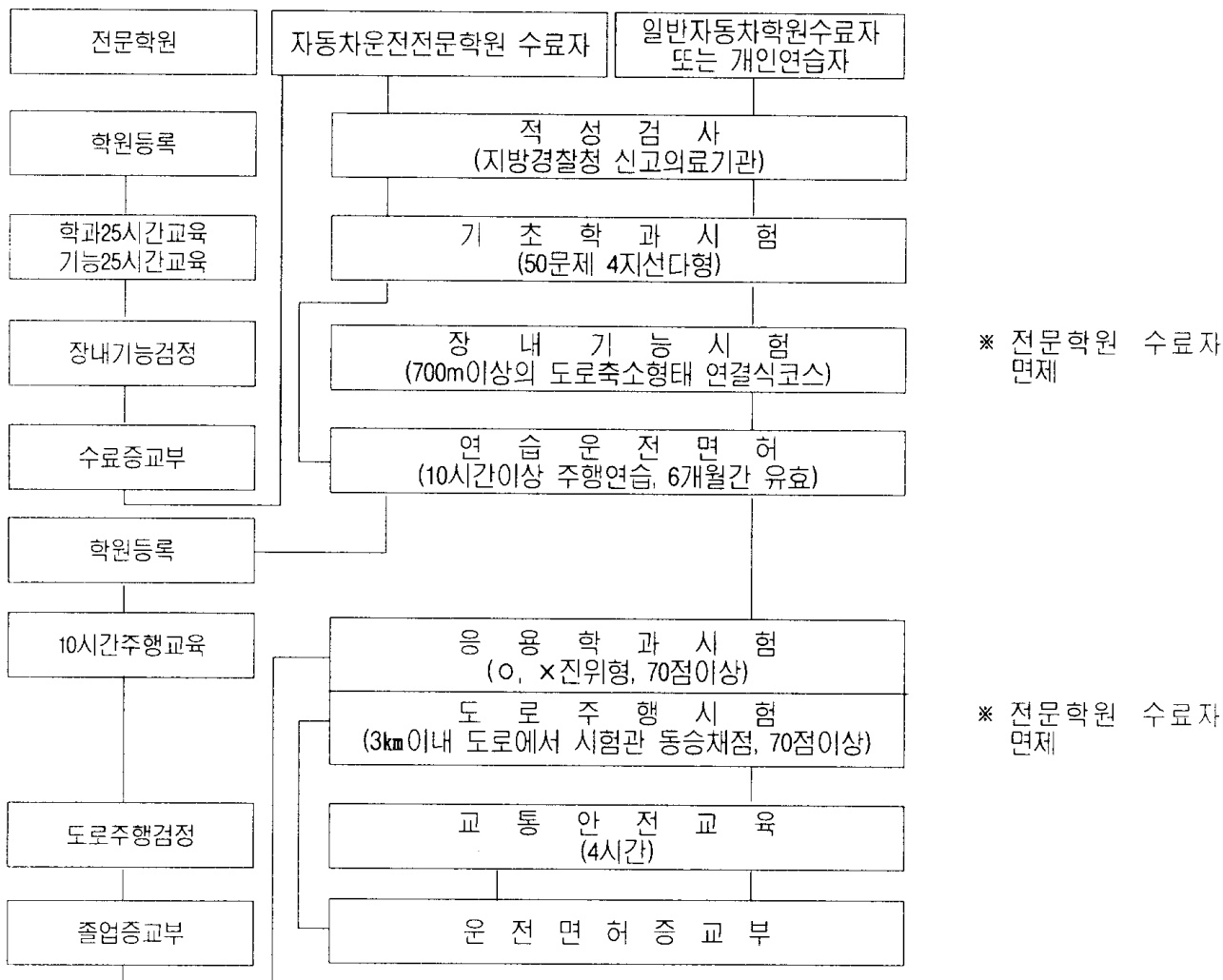
- 
- 운전면허 / 이영돈
 - 형사민원 / 이돈일

운 전 면 허

〈치안연구소 경감〉 이 영 돈

□ 면허시험 안내

가. 면허시험 전체흐름도



나. 운전면허의 종류와 자격

구 분	종 류	자 격
제 1 종	· 대형면허 · 특수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대형 및 특수면허는 만21세이상이고 제2종 보통이상의 운전경력 1년6월이상 · 보통 및 소형은 만18세이상
제 2 종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보통 및 소형면허는 만18세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이상

다. 적성(신체)검사

1) 검사장소

- 신체검사 신고의료기관 및 면허시험장 내 신고의료기관

2) 신체검사 합격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 색채식별	· 녹색, 적색, 황색의 식별 구분	· 신호등 표시
· 시력의 조건 (교정시력포함)	· 1종 : 각각 0.5이상이고 양안 0.8이상(대형포함) · 2종 : 양안 0.7이상	
· 신체장애	· 1종 : 중복장애(양쪽다리, 양쪽팔)는 불가 · 2종 : 중복장애도 가능	장애인운동 능력측정
· 청력의 조건	· 보통대화가 가능상태 · 보통대화 불가능시에는 정밀측정으로 1종은 55dB이상 청취가능해야 하고, 2종은 제한없음	이비인후과 판정(진단서)
· 필요한 서류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 주민등록증(사진이 첨부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신분증 또는 여권도 가능), 반명함판 사진 2매	

라. 응시원서 접수

항 목	내 용	비 고
· 신규접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2매 * 2종원동기 응시자중 만17세 미만인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신분증 대신	·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지참
· 수 수 료	· 학 과 : 1 2종 보통 3,500원, 원동기 1,000원 2종소형 3,500원 · 기 능 : 1 2종보통 13,000원, 1종대형 14,000원 원동기 1,000원, 2종소형 3,500원, 도로주행 15,000원 · 도로주행 : 18,500원(응용학과 3,500원, 도로주행 15,000원)	· 경찰청 영수필증 · 신체검사비 5,000원
	· 2종보통 소지자 → 1종보통 또는 1종대형응시 : 장내기능 시험(1종보통 6,500원, 1종대형 7,000원)	· 도로주행 시험생략
· 대리접수	·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서울지역은 '98. 6. 1부터 우편접수 가능	
· 응 시 자 · 주의사항	· 필기시험은 10분전,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은 30분전 입장 완료 ·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타 신분증명서 지참, 필기시험은 컴퓨터용 수성싸이펜 지참 · 응시표는 최초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 계속사용 · 불합격후 재응시할 때는 영수필증만 새로 붙여 제출 · 시험합격후에도 면허증 받기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	

마. 운전면허 응시원서 분실 재교부 안내

- 도장, 주민등록증
3시간 후에 발급됩니다.

○ 원서재교부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면허시험장에서 분실신고를 하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바. 운전면허 신규학과 접수

○ 학과시험

- 1종 대형또는 특수면허는 만21세 이상으

로 과거 운전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과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기능시험 일자를 지정받고 기능시험 지정시간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완료하여 시험 진행에 따른 교육을 받은후 시험에 응시해야 됩니다.

○ 구비서류

- 현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 수수료는 경찰청 영수필증 3,500원
- 신체검사 5,000 원
- 다른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일자 지정은 접수인원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 운전면허 재응시 안내

- 학과, 기능시험에 재응시하실분은 불합격후 즉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여 재접수후 지정받은 날짜에 응시하시고, 지정받은 시험날짜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변경가능하며,
- 재접수시는 경찰청 영수필증을 재첨부하여 시험일자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 대리접수시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아. 운전면허 응시자 전입자 안내

- 타 면허시험장으로 응시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며,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원하는 면허시험장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 기히 접수된 경우에는 응시일자가 경과되거나 이전에 접수한 면허시험장에서 취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응시원서 앞면사본 2매
 - 도장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재응시 안내

- 적성검사 미필, 또는 적성검사 연기를 하지 않아 면허증이 취소된 때에는 학과 시험을 합격하셔야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취소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5매
 - 주민등록증, 도장, 응시원서 1부
 - 범칙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증, 초본
- 면허증 발급은 1일 소요됩니다.

차. 1종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응시자 안내

- 1종 면허 소지자로서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에 응시하고자 하면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면허증, 주민등록증
 - 도장, 반명함판 칼라사진
 - 면허증 교부는 2일 소요됩니다.
-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카. 기초학과시험

항 목	내 용	비 고
·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시험내용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법령(94%) ·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6%)	
· 학과시험장	· 응시원서에 기재된 시간 10분전 입실 완료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지참	
· 문제지 추첨	· 응시생중 수험번호 홀수, 짝수 각 1명이 문제지 추첨	
· 문제지 구분	· 추첨한 문제지와 수험번호의 홀수, 짝수에 배부된 문제지 번호 확인	
· 주의사항	· 매 교시 50분간 시험, 시작후 30분간 퇴실불가 · 신분증 소지, 지정좌석 착석, 대리시험 여부등 확인 · 시험종료후 문제지 답안지를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퇴실	
· 학과시험발표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후, 응시원서에 합격 불합격 날인, 본인에게 재교부 · 응시자는 본인원서 및 합격 불합격 날인 여부 확인	
· 합격점수	· 1종 보통 : 80점이상 · 2종 보통 : 70점이상 · 원 동 기 : 60점이상	

타. 장내 기능시험

항 목	내 용	비 고
시험코스	총연장 700m이상, 도로축소형태의 연결식 코스	
채점항목	굴절, 곡선,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경사로, 지정시간 준수, 기어변속, 돌발사고 급정지 등 15개항목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 방식으로 채점	
합격기준	2종대형, 1 2종 보통 : 80점이상 2종소형 원동기 : 90점이상	
실격기준	특별한 사유없이 3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어변속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내에서 30초이상 정차한 때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파. 연습운전면허

항 목	내 용	비 고
· 교부대상	· 제1 2종보통면허시험응시자로서 적성검사, 기초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	
· 차종	·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2종보통 : 승용차, 9인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 1종보통 :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12톤미만 화물차 · 사업용 자동차 운전 금지	
· 준수사항	· 2년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면허와 동종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30×11cm
· 취소사유	·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 교통사고 · 준수사항위반 ·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 도로주행 불합격시 등	유효기간 6개월

하. 응용학과시험

항 목	내 용	비 고
· 응시자격	· 연습면허취득후 10시간이상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자	· 수수료 3,500원
· 시험방법	· 진위형(○, ×형) 20문제	시간 20분
· 시험내용	· 안전운전요령 · 특별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 교통도덕 등 도로이용자 준수사항	
· 학과 시험장	· 시험시간 10분전 입실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연습운전면허증 지참 · 1·2종보통(수동, 자동) 구분 시험관 안내로 착석 * 문제지 추첨, 전산채점 등은 학과시험(기초학과)과 동일	· 수수료 3,500원
· 합격기준	· 70점이상 합격자는 도로주행 시험접수	· 수수료 15,000원

거. 도로주행시험

항 목	내 용	비 고
시험코스	총연장 3km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조향장치조작 등 운전능력 19개 항목 · 직진 및 좌 우회전, 진로변경 등 법규준수 19개 항목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합격기준	70점이상	
실격기준	·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 앞지르기금지위반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등	

너. 교통안전교육

- 교육시간
 - 총 4시간(시청각 2시간, 강의2시간)
- 교육내용
 - 교통여건 및 교통도덕, 교통사고 현황
 - 교통법령 및 자동차점검 등 안전운행 요령
- 교육실시 : 도로교통안전협회

연습면허 취득후 응용학과시험, 도로주행 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교부장소
 - 각 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도장, 사진2매(반명함판 칼라), 안전교육필증

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면허시험

더. 운전면허증 교부

- 등록 및 교육

- 교부대상

항 목	내 용	비 고												
· 운전학원 등록 · 학원등록 비용	· 사진 3장,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 직접 등록 · 기본 - 학과 및 기능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학과 25시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학과 10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종 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11,2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86,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종 수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404,6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79,8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종 자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353,9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32,300원</td> </tr> </tbody> </table> - 도로주행 1 2종수동 : 180,000원 2종 자 동 : 200,000원 · 기능검정 불합격시 추가등록 비용 - 기능 재응시자(1 2종)는 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85,000원(1 2종 동일) 재검정비 : 총 17,400원 (검정수수료 5,000+검정료 12,400)	종 별	학과 25시간	학과 10시간	1종 보통	411,200원	386,000원	2종 수동	404,600원	379,800원	2종 자동	353,900원	332,300원	· 전문학원 및 지정 전전문학원
종 별	학과 25시간	학과 10시간												
1종 보통	411,200원	386,000원												
2종 수동	404,600원	379,800원												
2종 자동	353,900원	332,300원												

	<p>※ 기능평가 불합격시 보충교육 5시간 (비용은 재교육비와 동일) - 도로주행 재응시자(1 2종)는 5시간 재교육후 응시 재교육비 : 1 2종 수동 : 90,000원 2종 자 동 : 100,000원 재검정비 : 18,000원 (검정수수료 5,000+검정료 13,000)</p>	<p>※ 수강료는 각지방 경찰청 별로 약간 씩 차이가 있음</p>
· 교육이수시간	<p>· 1 2종 학 과 : 기본 25시간 · 1 2종기능(수동) : 기본 25시간 · 2종 기 능(자동) : 기본 25시간 · 도 로 주 행 : 기본 10시간</p>	
· 학과시험은 면허 시험장에서 합격하고 가능한 전문학원에 서 등록시	<p>· 학과시험 기합격자, 운전면허경력자는 본인 희망시 학과 2단계 10시간만 선택 수강 가능 · 기능은 종전대로 25시간 수강</p>	<p>· 학과시험합격 자는 “운전면허 응시표” 운전 경력자는 운전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접수</p>

머. 장애인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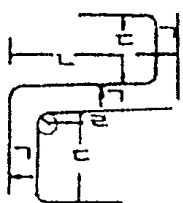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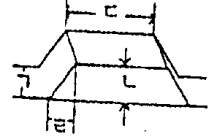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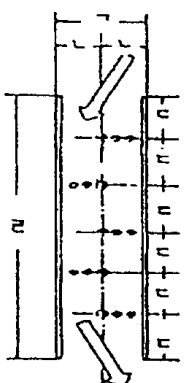
○ 신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면허시험장에

서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후 서류지
참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면허시험장 접
수 응시

항 목	내 용
· 장애인 시험 응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2매, 응시원서 작성후, 신체검사와 장애인 운동능력측정 판정을 받아 응시
· 운동능력측정 불합격시	· 1주일후, 면허시험장 장애인실에서 재측정 가능
·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변화시 조건 변경	· 장애인의 신체변화시 언제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면허조건 변경 가능
· 면허발급시 장애인 구분	· 장애인 면허라고 따로 구분 표시는 없고, 신체장애에 따른 자동변속기, 보청기등 착용 조건 부여 교부
· 응시범위	· 청각 또는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2종 면허 응시가능
· 구비서류	· 주민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 도장, 칼라사진,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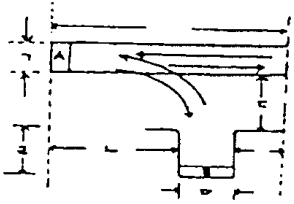
버. 제2종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

- 학과시험 : 진위형(○, ×)으로써 2종소형 70점이상, 원동기 60점이상 합격
- 기능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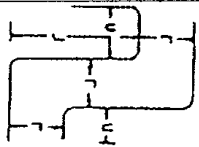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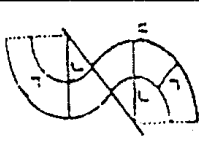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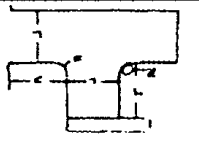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비 고
시험항목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등			
합격기준	90점이상			
실격기준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코 - 스				
굴 절	곡 선	좁 은 길	연속진로전환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점측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점측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점측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점측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점측하지 아니하고 통과	

서. 특수면허시험

○ 트레일러

코 -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연결하여 출발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진하여 A지점의 확인선을 접촉하고, 후진으로 B지점의 확인선을 접촉한 후 다시 A지점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지점에 도착 · 출발지점에 도착한 후 피견인차를 5분 이내 분리 · 총 지정시간 15분 이내 	
채 점 기 준		
시 험 항 목	감점	감 점 방 법
· 피견인차 연결	10	· 연결방법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초과시마다
· 방향전환코스견인 통과	20	· 지정시간 5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피견인차 분리	10	·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초과시마다

○ 견인차

코 - 스		
굴 절	곡 선	방 향 전 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연결하고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전진으로 통과한 후, 다시 피견인차를 5분 이내 분리하여 방향전환코스를 검지선 접촉없이 통과 · 각 코스는 지정시간 3분 이내, 총 지정시간 19분 이내 		
채 점 기 준		
시 험 항 목	감점	감 점 방 법
· 피견인차 연결	10	· 연결방법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초과시마다
· 굴절코스 견인통과	10	·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곡선코스 견인통과	10	·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피견인차 분리	10	·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초과시마다
· 방향전환코스 통과		·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합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 처리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이상

- 특수 : 강남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 소형.원동기

- 원동기 : 125 cc 미만은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소형면허 가능
125 cc 이상은 2종 소형면허 운전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면허증
- 도장또는, 서명
-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어. 특수, 대형, 소형 기능시험 안내

○ 대형

- 대형 : 만 21세 이상 경력 1년 6개월

저. 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면제대상자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비고
1.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공과 기계과 또는 자동차관련학과 졸업자로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 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72조 제1호 제2호	모든 면허	점검	· 관련증명서 · 졸업증명서 · 자격증 원본
2. 외국운전면허 갱신자	제72조 제3호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제외)	기능 범령 정검	· 제1종대형면허 응시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함)	기능 법령 점검 응용 도로주행	· 제1 2종보통면허 응시자
3. 군 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군면허 갱신자)	제72조 제4호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 법령 점검	· 군면허증(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군운전경력 확인서 -1차:소속부대장 -2차:지역사령관 · 운전병군자력기록표(사본-실인필) · 전역증, 주민등록증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 법령 점검 응용 도로주행	
4.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적성검사미필 취소자)	제72조 제5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	기능	· 취소기간에 관계없이 응시('97.12.6개정)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기능 응용 도로주행	
5. 제1종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72조 제6호	제1종특수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적성 법령 점검	
6.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72조 제6호	제1종대형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1종특수면허, 제2종소형면허	적성 법령 점검	
7. 제1종소형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제6호	제1종대형면허, 제1종특수면허	적성 법령 점검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적성 법령 점검 응용 도로주행	
8. 제1종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제6호	제1종대형면허, 제1종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적성 법령 점검	
		제2종보통면허	적성 법령 점검 응용 도로주행	
9.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제6호	제1종특수면허, 제1종대형면허, 제1종소형면허	법령 점검	

		제2종소형면허	적성 법령 점검	
		제1종보통면허	적성	
10.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제6호	제2종보통면허	적성	
1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람		제2종소형면허	적성 법령 점검	
12.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제72조 제6호	제1종보통면허	기능 법령 점검 응용 도로주행	
13. 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72조 제6호	제2종운전면허	기능 법령 점검 응용 도로주행	· 2종보통 10년무사고자, 1종보통으로 갱신
14. 법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인 사람	제72조 제7호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	
15. 법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제72조 제7호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도로주행	· 2종보통 10년무사고자, 1종보통으로 갱신

* 적성 : 적성검사, 기능 ; 코스시험, 점검 : 자동차구조, 응용 : 응용

□ 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

가. 벌점제도

-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

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제도임

- 1947년 미국 켄터키(Kentucky)주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1967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음

나.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제41조 제1항	100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78조	90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99조 제120조	40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2조 제3항	30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77조 제2항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5조	15
8.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부터)	제15조 제3항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제20조, 제20조의2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제21조 제48조의5	10
11.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제12조 제1항 제2항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1제13조 제2항 제4항	
13.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 2 제2항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제17조, 제17조의2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제19조의2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4조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제35조 제2항	
18.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4조	
19.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해 방해 행위	제48조제1항	
2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48조의3	

다. 교통사고야기시 벌점기준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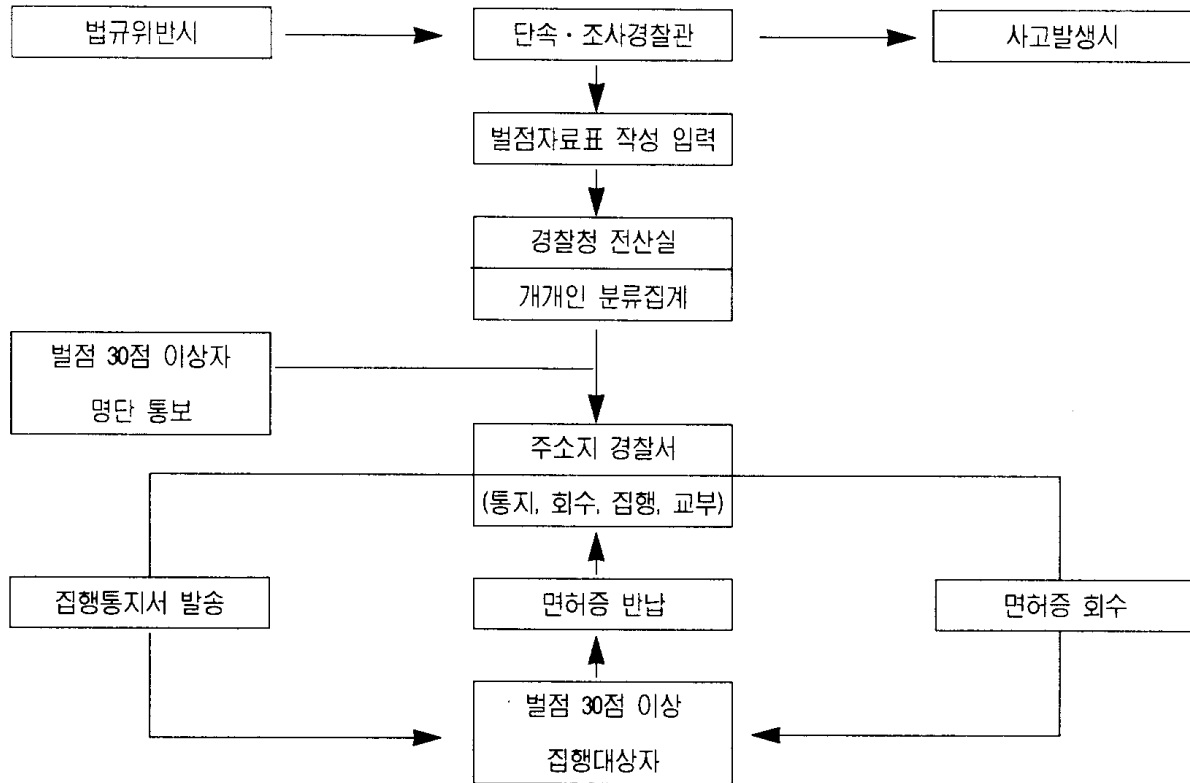
구 분		벌 점	내 용
교통사고인적피해	사망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2.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3.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위반항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교통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제1항	30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라. 운전면허 정치처분 흐름도



마.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별점이 3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단. 최종 별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점이 30점미만인 경우 별점이 소멸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별점30점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취,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바. 면허정지처분의 감경

○ 교정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교정교육시험성적	감 경 일 수
· 80점 이상	· 20일 감경
· 60~80점 미만	· 15일 감경
· 60점 미만	· 10일 감경

○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

사. 면허정지처분의 가중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받은 자에 대한 가중처벌

과거 1년이내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회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 음	· 없음(당해 처분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 회	· 10일 가산(당해 처분벌점일수+10일)
2 회	· 20일 가산(당해 처분벌점일수+20일)
3회이상	· 30일 가산(당해 처분벌점일수+30일)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 정지처분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면허증 반납지연일수의 2분의 1일 가산하여 집행, 단, 본래 정

지처분과 가산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운전면허 취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기준

기 간	벌 점 또 는 누 산 점 수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위 반 내 용 (14개 항목)	적 용 법 조
· 교통사고 야기도주	제78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제78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	제78조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제78조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제78조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및 녹색면허 갱신기간 1년 초과	제78조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제78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제78조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78조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제78조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78조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78조

○ 면허취소시 응시결격기간

- 음주운전(단순) 교통사고야기1년
- 차량절취, 차량이용범죄, 정지기간중 운전2년
- 무면허운전2년
- 음주운전 3회이상으로 교통사고야기3년
- 교통사고야기도주4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야기도주5년

자. 교정교육

구 분	내 용
대 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운전자 중 희망자 ·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30점이상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수강
교육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
교육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정지처분 경찰서에서 교정교육 통지서 수령후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신청 · 교정교육통지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준 비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반 4시간, 교통사고반 6시간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여건 및 사고 · 교통법규, 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 · 자동차 안전관리 등
교육내용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는 없으며 교재무료제공

차.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항 목	내 용	비 고
· 면허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인 경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 · 정지처분의 경우 관할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접수 	90일 이내 개인자료보호
· 교통법규위반 벌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관리계 또는 면허시험장 행정처분실에 직접 출석 문의하여야 함 · 전화문의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 ·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밀확인 가능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
· 면허취소처분 철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될 경우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 판결될 때 등의 경우 철회가 가능 	

□ 운전면허 관련민원

가. 적성검사[면허갱신]

항 목	내 용	비 고
· 적성검사의 시기	·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의 본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경우 녹색면허 갱신후에는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녹색면허도 1년 이내갱신
· 취급기관	·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적성검사 신청	· 녹색면허 ; 신청서,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매, 도장	· 수수료 10,220원
	· 일반면허 : 신청서,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매, 도장 * 면허증 주소가 현재 등본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1부 지참	· 수수료 10,800원 · 신체검사비 5,000원
· 녹색면허 대상	· 무사고, 무행정처분자 적성검사 면제(대리가능)	· 녹색으로 갱신
· 우편신청	· 도로교통안전협회비(6,720원) 은행납부후 영수증, 면허증, 수수료 3,500원,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신청	· 녹색면허 대상자 해당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 1년이내는 관할면허시험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 은행 납부후 적성검사 가능 ·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	· 범칙금 내역 1 2종 면허 6개월이내 : 50,000원 6개월이상 : 70,000원

나.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현역입대, 해외여행, 장기구금,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인 경우 - 면허증, 주민등록증, 부득이한 사실 확인 서류
 - 출 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입 원 : 입원확인서
 - 수 감 자 : 재소증명서
 - 군입영시 : 복무확인서, 면허증제출
 - 본인이 아닌경우 -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부득이한 사실 확인 서류

-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면허시험장에 신청을 하시면 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기간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 오손 분실 재교부

면허증이 오손 분실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 오손재교부	· 오손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1매 · 접수즉시 발급	· 수수료 3,500원 · 대리가능
· 분실재교부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1매 · 임시면허증 필요시 반명함판 사진 1매 추가 · 대리가능	· 14일후 수령(회수기간 등) · 수수료 3,500원
	· 2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증 발급 · 대리수령 가능	· 수수료 1,000원

라. 군면허 갱신

하셔야 됩니다.

※ 대리접수 불가

- 군에서 6월이상 군차량을 운전한 운전경력자로서 군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 이내에 군에서 운전한 경력에 상응한 일반 면허로 갱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군 운전면허증 원본
 - 군 운전경력 확인서 1통
 - 군 운전 자력기록표 1통
 - 전역증 원본, 사본
 -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 3,500원
 - 반명함판 칼라사진 5매
 - 사회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을 반납

마. 외국운전면허 갱신

-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당해 외국에서 6월이상 체류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면허증으로 변경 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외국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단 번역문에 발급일자 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함)

- 공증인가난 합동법률 사무소 및 주한 대사관
 - 아랍어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 외국면허 발급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 외국인 : 법무부에서 발행한 거류신고필증
 - 영주권자 : 출입국 신고서
 - 반명함판 칼라 사진 5매
 - 수수료 : 15,000 원 정도
 - ※ 대리접수 불가
- 해외 출국자로서 국제운전 면허증이 필요한 자는 국제운전면허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원본, 사본
 - 면허증 원본, 사본
 - 비자원본, 사본
 - (비자가 없는 국가는 비행기표나 출장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 수수 : 5,000원

바. 국제운전면허

항 목	내 용	비 고
· 장기체류 예정자 적성 검사 연기	· 국제면허 신청시 여권 및 비자, 무비자 국가일 경우 여권과 비행비표 지참 확인 받게 되면 연기 · 적성검사 연기기간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이며, 입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 수검	· 적성검사 연기수수료 1,000원
· 국제면허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내 체류국가의 외국면허 취득	

사. 기재사항변경

항 목	내 용	비 고
· 기재사항 변경	· 면허증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사유가 있을때 · 주민등록증, 면허증 지참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나 경찰, 면허시험장에 신고 · 동사무소 전입신고서 작성시, 동시 기록 · 군복무중, 복역, 입원, 정지 등의 사유로 기재변경을 못할시는 그 사유가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적성검사 연기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 면허증 - 주민증 - 인장 불이행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기간내 과태료 미납자	· 먼저 발부받은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가서 재발급 받은 후, 은행에 납부	

※ 개명 또는 연령변경할 때에는 판결문, 호적등 초본이 필요

아. 운전경력증명

항 목	내 용	비 고
· 1년 이내 운전경력	·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 경찰서 방문신청 · 주민등록증 지참
· 1년 이상 운전경력	· 1종보통 학과 기능 면제응시용 운전경력, 모범운전자 증명용등은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 가능 · 전화, FAX 또는 방문 신청 · 신청후, 5일 이내 수령	· 면허시험장에서만 접수 · 대리가능 · 수수료 2,000원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해당 면허시험장에 접수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 2,000원

○ 발급시간은 10:00 까지 접수분은 11:30 분 발급

12:00 까지 접수분은 14:00 분 발급

14:00 까지 접수분은 16:00 분 발급 예정입니다.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택시 양도, 양수, 개별화물 용도등은 접수한날 익일 15:00 이후 발급됩니다.

취소된 면허 경력은 취소된 면허번호를 첨부하여 취소된 면허대장이 당 면허시험장에

없을 경우 공문서류 발송, 신청후 사본대장 도착즉시 접수할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연습 허가신청

○ 자동차등의 운전 연습 허가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운전 연습 허가 신청서를 작성 운전연습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운전연습구역이 2개이상 경찰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진 1매

○ 수수료 : 1,000원

□ 참고자료

가. 전국 면허시험장 현황

지방청별	시험장	주 소	전화번호
서 울	강 남	강남구 대치동 998-1	02-555-0855
	도 봉	노원구 상계동 10동 611-1	02-934-7000
	강 서	강서구 외발산동 205-1	02-664-3610
	서 부	마포구 상암동 338	02-374-6811
부 산	남 부	남구 용호동 산45-3	051-626-7991
	북 부	사상구 덕포2동 381-1	051-304-0881
대 구	대 구	북구 태전동 1076-1	053-312-0683
인 천	인 천	남동구 고잔동 512-2	032-811-0113
경 기	용 인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225	0331-282-7714
	의정부	의정부시 금오동 산23-35	0331-847-7700
	안 산	안산시 외동 29-2	0331-403-4008
강 령	춘 천	춘성군 신북면 산천1리 443-3	0361-241-6001
	강 령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464	0361-645-6001
충 북	청 주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2	0431-54-7762
	충 주	충주시 거주동 1-7	0441-852-1450
충 남	대 전	동구 대벌동 364-2	042-273-1490
	예 산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산17	0458-33-2007
전 북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	0652-212-6962
전 남	전 남	전남 나주시 삼영동 산 10	062-263-7700
경 북	화 원	달성군 회원면 성산리 412-1	053-634-7990
	포 향	포항시 남구 연일동 113-4	0562-85-7400
경 남	마 산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700-1	0551-71-7600
	울 산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532-1	0552-63-1686
제 주	제 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211-4	064-99-7700

나. 서울지역 면허시험장 관할 안내

- 서부 면허시험장 : 중구. 종로. 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구 (374 - 6811)
- 강남 면허시험장 : 성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광진 (555 - 0855)
- 도봉 면허시험장 : 동대문. 성북. 중랑. 도

봉. 노원구. 강북 (934 - 7000~7)

- 강서 면허시험장 : 동작. 관악. 구로. 양천. 강서구. 금천. (664 - 3610~8) 영등포

다. 교정교육장 현황

(도로교통안전협회 각시 도지부)

지 역	주 소	전 화 번 호
서 울	서주구 염곡동 300-11	02-3498-2114
부 산	남구 대연3동 580-8	051-62205312
대 구	남구 대명동 1579-4	053-625-8611
인 천	연수구 옥련동 563-4	032-833-0100
경 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4-5	0331-38-5401
	의정부 가농동 375-2	0351-876-0820
강 원	춘천시 우두동 761-13	0361-53-2760, 2761
	강릉시 병산동 385	0391-652-795
충 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65	0431-50-5317
충 남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90-10	042-522-3647
전 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21	0652-84-5402
전 남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2-9	062-371-9855
경 북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경북도청내)	053-955-0502
경 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70-5	0551-56-7765
제 주	제주시 연동 308-6	064-46-1703

라. 인구 자동차와 운전면허 소지자 비교

구 분	인 구		자 동 차		운전면허소지자		
	(천명)	지수	(대)	지수	(명)	인구 1000명당 수	지수
'87	41,575	100	1,611,375	100	5,269,494	126	100
'88	41,975	101	2,035,448	126	6,191,821	147	117
'89	42,380	102	2,660,212	165	7,190,467	168	136
'90	42,793	103	3,394,803	210	8,543,903	200	162
'91	43,206	104	4,247,816	263	9,844,356	228	186
'92	43,664	105	5,230,894	324	11,613,300	266	220
'93	44,056	106	6,274,008	389	13,301,610	302	252
'94	44,452	107	7,404,347	459	14,889,762	335	282
'95	44,850	108	8,468,901	525	16,403,759	366	311
'96	46,434	111	9,553,092	592	17,720,833	382	336
'97	46,885	113	10,413,427	646	18,532,172	395	351
10년 평균 증가율	12		20.5		13.4		

마. 연도별 운전면허 발급 및 취소 현황

구 분	발 급		취 소					
	응 시	합 격	계	적성검사 미 필	점수초과	행정처분 기간 중 운 전	교통사고 야기도주	기 타
'86	2,097,012	623,186	66,463	56,171	-	305	866	9,121
'87	2,473,323	724,425	102,081	88,005	-	194	980	12,902
'88	3,725,139	1,010,096	86,160	69,621	-	232	919	15,388
'89	4,061,759	1,043,101	147,506	118,815	-	342	543	27,806
'90	5,275,814	1,521,607	176,056	132,925	-	662	436	42,033
'91	6,835,955	1,496,231	207,730	148,015	-	1,365	448	57,902
'92	8,957,466	1,872,866	113,152	44,234	-	2,234	2190	64,494
'93	9,154,212	1,567,200	107,668	31,457	58,960	3,397	4,804	9,050
'94	9,788,576	1,755,589	166,957	47,741	97,100	3,529	7,050	11,537
'95	9,502,431	1,784,331	223,755	46,974	124,263	3,942	7,749	40,827
'96	9,949,659	1,542,422	219,203	41,765	153,041	2,021	4,560	17,816
'97	4,524,955	1,072,722	239,080	15,446	203,677	818	3,508	15,631

바.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98. 6월말

면허종별		제 1 종				제 2 종			
계		9,037,573				9,999,884			
시도별		대 형	보 통	소 형	특 수	보 통	소 형	특 수	원동기
	19,037,457	965,110	7,887,073	915	184,475	8,051,707	102,381	0	1,845,796
서울	4,374,148	157,895	1,382,055	386	29,533	2,548,926	23,531	0	231,822
부산	1,462,266	76,428	649,968	151	23,777	605,064	7,908	0	98,970
대구	1,148,682	58,464	548,296	98	10,867	424,965	9,439	0	96,553
인천	882,376	50,026	420,607	26	11,480	335,464	3,590	0	61,183
경기	3,477,363	171,796	1,424,977	134	31,395	1,568,386	17,823	0	262,852
강원	632,791	40,657	256,241	6	6,621	232,234	3,070	0	93,962
충북	615,564	39,680	261,166	11	9,503	208,108	3,127	0	93,969
충남	1,312,702	72,204	578,984	11	11,609	447,412	7,430	0	195,052
전북	790,067	48,985	320,329	2	6,756	295,213	4,232	0	114,550
전남	1,284,138	76,644	543,883	3	12,389	479,082	5,748	0	166,389
경북	1,163,599	65,966	664,394	35	13,531	205,953	7,781	0	205,939
경남	1,649,008	89,476	723,461	27	15,800	616,053	7,211	0	196,980
제주	244,753	16,889	112,712	25	1,214	84,847	1,491	0	27,575

형사민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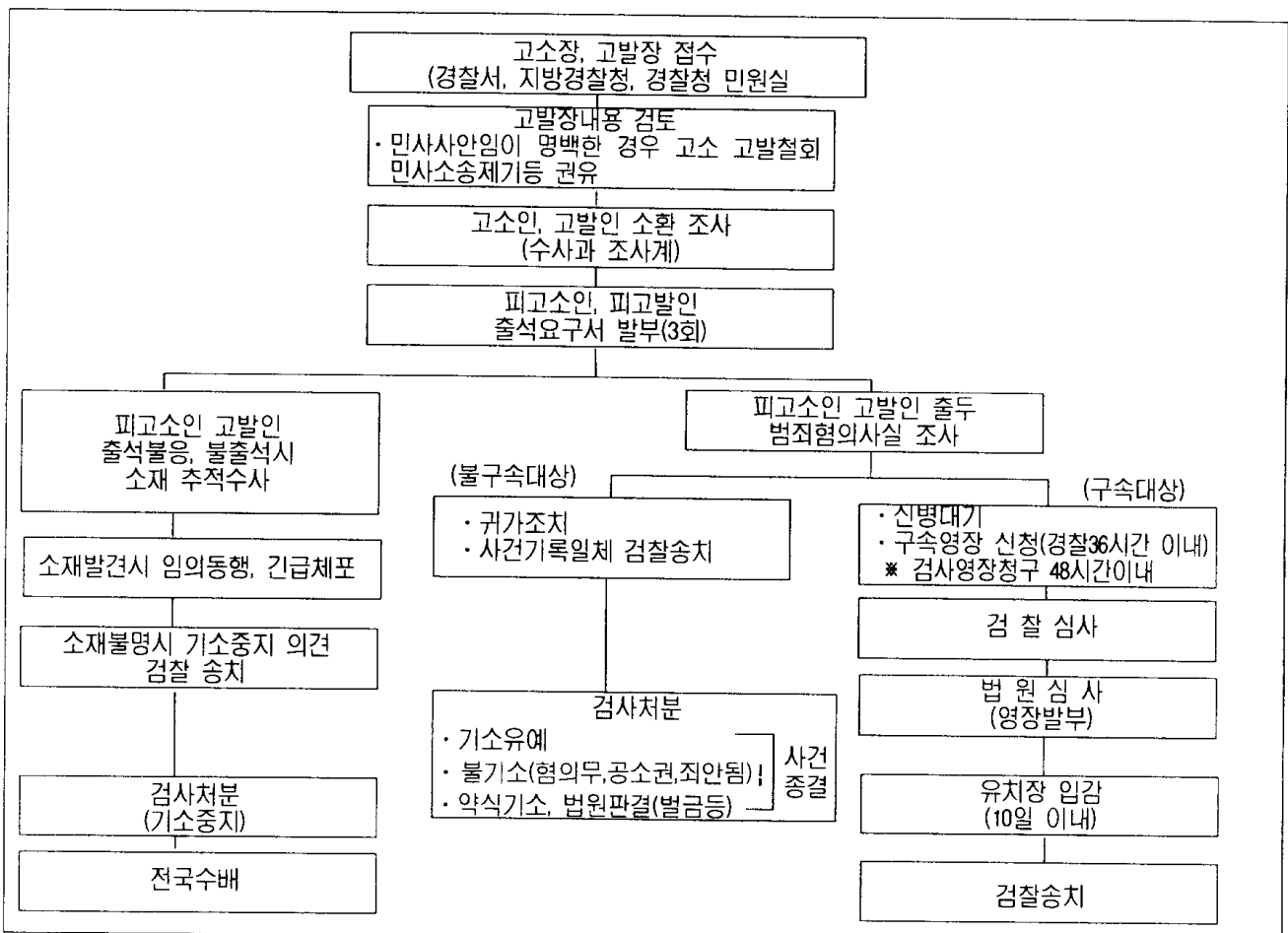
〈치안연구소 경감〉 이 돈 일

형사민원이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의 형식으로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총칭

1. 고소 고발사건처리 절차

□ 고소 고발사건 처리 흐름도



□ 고소란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가정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 고발이란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발하지 못함

- 고발은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음

□ 진정 및 탄원

- 진정이란 개인 및 주민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
- 탄원이란 개인 및 주민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
- 진정·탄원은 고소 고발과 달리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기관등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 고소 고발(진정 탄원)방법

- 고소·고발, 및 형사민원관련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 구두로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바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 경찰관서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서는 직접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

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

□ 처리방법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등 형사민원을 접수후에는 해당 주 무기능(수사, 형사, 방법, 교통과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
-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시는 당일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
-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고소 고발만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사건접수전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소 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입건처리
-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내사하게 되고 내

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수사에 착수

-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음
-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법령상 2개월이나 경찰에서는 1개월내 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가 지연될시 그 지연사유 등을 기재하여 1개월 경과시마다 민원인에게 중간통지를하고, 수사가 종결 되었을때에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부득이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고소 고발의 기간제한

- 고소는, 간통등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그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 고발 진정 탄원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음

□ 고소 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 고소 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란
 -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인의 동의하에 고소 고발장 내용

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 진정사건으로의 접수, 고소 고발장의 철회 등을 권유하는 제도

○ 적용대상

- 고소 고발사건수사에 적용
 - 단, 친고죄사건, 한미행정협정사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직무상 고발사건은 제외

○ 고소 고발장내용 검토

-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고소 고발인과 상담을하여 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 진정사건으로의 접수, 고소 고발장 제출의 철회 등을 권유
- 고소 고발인이 권유에 불응하거나 권유를 함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고소 고발장에 고소 고발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 이를 접수

○ 고소 고발부 사건수사

-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소 고발부 사건으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입건지휘를 받아야하고,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경우에는 불입건 지휘를 받아야 함
 - ※ 고소 고발부사건이란 : 고소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입

건되기 이전 사건

- 피고소 고발인을 입건할때는 입건서를 작성 입건하여야 함
- 종전에는 고소 고발만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는 접수후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소 고발인을 피의자로 입건
- 불입건 사유

- 입건유예 : 고소 고발사실이 인정되거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고소 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는 '97.10.10부터 시범운영되는 제도로 8개 지검(지청)관할 34개 경찰서에 시범 시행중

□ 입건후 조치

- 구속영장신청 또는 불구속 지휘건의
 -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할지검 또는 지청검사에게 36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검사의

구속영장청구는 48시간이내)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구속기간 10일 이내)하고 영장기각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

- 영장이 기각되었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시 피의자 가족등에게 신병보증을 받고 석방후 증거보장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 영장발부시 피의자 소환구속집행
-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구속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

□ **검찰송치**

- 피의자를 구속송치하는 경우
 - 피의자 신병과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 자료를 검찰에 송치
- 피의자 불구속 송치의 경우
 -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일체 및 증거자료등만 검찰에 송치
-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피고소인 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고소(고발)장 등 작성요령(예시)

고 소 (고 발) 장

- 고소(고발)인 주소 : ○○○도 ○○시 ○○동 ○○번지 ○통 ○반
성명 : 홍 길 동 연락처 : ○○○-○○○○
- 피고소(고발)인 주소 : ○○○도 ○○시 ○○동 ○○번지 ○통 ○반
성명 : ○ ○ ○ 연락처 : ○○○-○○○○
- 고소(고발)내용 (6하원칙)

'98. 2. 1. 20:00시경 고소인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도중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지하철 1호선 입구에서 피고소인 ○○○이 돈을 달라고 위협하므로 돈이 없다고 반항하자 피고소인 ○○○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구타하여 가슴늑골 골절상으로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가한자로 엄중처벌 바랍니다.

※ 진단서 첨부

'98. ○. ○.

고소인 홍 길 동 인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진정 탄원, 수사이의 신고서 작성요령도 동일함)

2. 이의신청(수사 교통)절차

□ 이의신청이란

일반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수사에 편파 부당 가혹행위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등

□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등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 이의신청접수 및 문의처

- 경찰청 수사과 이의반, 교통안전과 안전반

-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이의신고센터

3.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

□ 유치인 면회요령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용지를 작성 제출후 순서에 의하여 면회

□ 유치인 면회 시간

- 평일과 토요일 : 09:00~20:00까지
- 일요일과 공휴일
 - 하절기 : 09:00~18:00까지
 - 동절기 : 09:00~17:00까지

단 신정, 설날 추석연휴기간에는 20:00까지 연장

□ 유치인 면회 횟수

1회 면회 가능시간은 30분이내이며, 1일 면회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너무 잦은 면회신청

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제한하고 있음

차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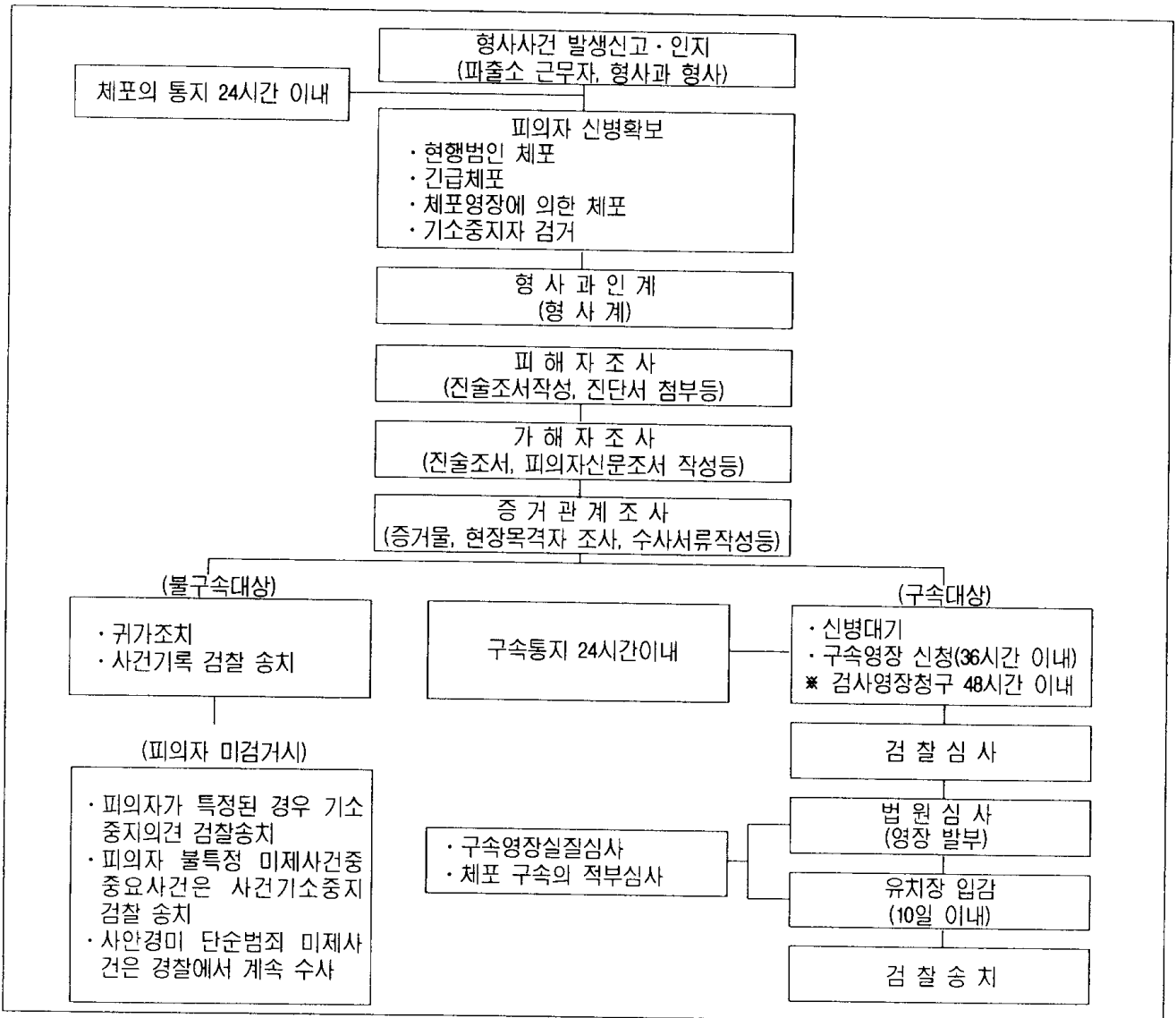
□ 유치인에게 필요한 물품차입 요령

-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시 유치장 근무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

-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양말과 약품류는 차입 금지
- 단,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약품

4.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

□ 일반 형사사건처리 흐름도



□ 수사기관 및 수사

○ 수사기관

-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함
-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음

·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

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 경무관(경찰청 근무 경무관은 제외)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자

○ 수사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의 개시

-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

-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다른사건수사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등 제한이 없음

□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함

○ 내사와 용의자에 대한 개념

- 내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하는 조사활동
- 용의자란 어떤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

□ 수사의 진행

- 현장출동

-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112순찰차, 파출소 근무자 또는 형사등이 신속히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청취 진술조서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등 초동수사를 실시
- 피의자 신병확보절차
 - 현행범인(준현행범인포함)체포
 -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함
 -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①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때 ③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때 ④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때를 현행범으로 간주
 - 긴급체포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기소중지자 검거
 -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는 긴급체포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
 - 지명수배자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자
 -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 지명통보자
 - 장기 3년미만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 불명인자

○ 체포의 통지

-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소중지자 검거시에는 24시간이내에 변호인에게 체포통지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등) 체포통지

○ 체포후의 조치

-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불필요시는 검사의 승인 등을 받아 피의자를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구속기간10일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자에게 24시간이내 구속통지

- 구속대상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불구속사유에 해당하거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절차

- 구속영장 실질심사

-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등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체포, 구속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등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 사건의 성질, 중대성등 사안에 따라 전담형사를 지정하거나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전개
- 사건수사는 피해자 중심수사, 감식수

사, 탐문수사, 전과자·우범자수사, 면식범수사, 장물수사, 타시도등 공조수사, 용의자수사, 참고인수사등 사건조기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

- 형사사건의 수사기간은 공소시효만료 전까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외도피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검거시까지 계속 기소중지 수배

○ 사건송치

- 피의자를 검거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및 관계수사기록과 증거자료등 일체를 검찰에 송치
-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함
- 피의자불구속,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는 사건 및 피의자 미검거사건은 관계수사기록과 증거물등만 송치
 - 피의자 미검거사건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중요미제사건은 사건기소중지 송치후 범인이 검거되면 사건을 재기 처리
 -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제사건

중 사안이 경미한 단순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여 피의자 검거시 사건 재기 처리

5. 소년형사사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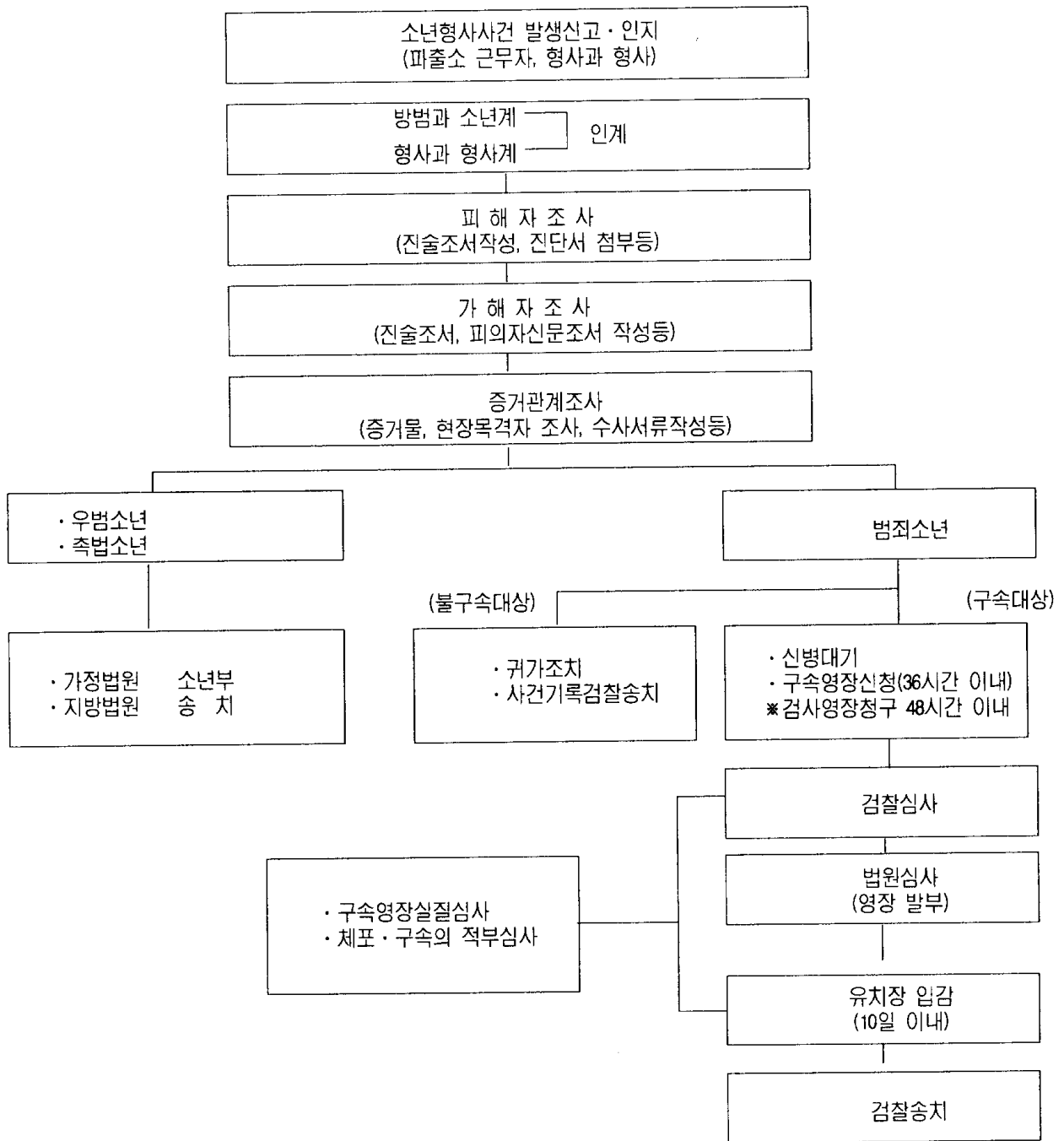
□ 소년형사사건처리 흐름도

다음 페이지에 흐름도 있음

□ 소년형사사건

- 소년이란 20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피의자 피고인이 20세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도록 되어 있음
- 소년형사사건(12세이상~20세미만)은 주로 경찰서 방법과 소년계에서 수사처리하고 있으나 소년사건중 강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건, 피의자 5명이상 대상 사건은 형사과(수사과)형사계에서 처리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해 처리
- 소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타자 특히 성인 피의자등으로부터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피의자와 분리 수용

□ 소년형사사건처리 흐름도



□ 소년보호사건 대상

- 범죄소년
 - 14세이상 20세미만자로 형벌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
- 우범소년
 - 소년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으로서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자
 -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
 -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

□ 소년사건 송치

- 소년사건중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계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
- 촉법소년의 행위가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때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
-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

6. 변사자 처리

□ 변사자 검시

- 변사자는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체를 말하며,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변사자의 검시라고 함
- 변사자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으로 수사단서의 하나이며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됨
-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행함

□ 행정검시

- 검시의 결과 수재, 낙뢰, 파선등 자연재해사 또는 행려병자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행정검시로 완결됨
 - 행정검시는 의사의 검안을 거쳐 파출소장이 검시조서를 작성

□ **검사의 참여인**

- 검사, 사법경찰관리, 의사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구 시 읍 면의 공무원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사체의 인도**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현존지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사체를 인도
-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함

□ **호적법에 의한 통보**

-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을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

-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 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구 시 읍면장에게 통보

7.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지급제도

□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제도란**

-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제도는 경찰이 시민과의 협력치안 기반구축을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생명 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신고자와 검거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비밀보장**

- 경찰은 범죄신고자가 피의자 기타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성명, 주소, 직업

등 인적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 다만, 범죄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각 소속 주무부서(수사과)에 통보

- 보상대상범죄신고를 접수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는 “범죄신고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신고자 또는 검거자에게 규정에 따라 보상 실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또는 보상금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보상금을 환수

□ 신고보상 주무부서

- 경찰청 형사국 수사과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

□ 신고자 보상절차

- 경찰공무원이 보상대상범죄 신고를 받게

□ 범인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500만원 이하	2인이상 살해, 화폐위조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
300만원 이하	살인, 약취, 유인사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두목·행동대장 및 이에 상당한 경우
200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연쇄방화사건, 위·변조 화폐소지 사용,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장물사건
100만원 이하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환경오염·해양오염 사건, 특정 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 사건, 피해액 5백만원 이하의 절도·장물사건,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건
50만원 이하	보상대상 사건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8. 피해배상 방법 및 절차

□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상

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치사상의죄, 절도와 강도의죄, 사기와공갈의죄, 횡령과배임의죄, 손괴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

○ 배상신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제기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대리인

-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에게 배상의 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 배상명령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게 됨

□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자를 구조하기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국가는 범죄 피해를 당한 자(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

한 사정이 있거나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 구조금을 지급

○ 구조금의 종류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 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지급
 -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

※ 장해구조금의 금액

1급 : 600만원, 2급 : 400만원, 3급 : 300만원

○ 구조금의 지급신청

- 구조금지급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됨

9. 범죄신고요령

- 범죄신고를 112로하면 경찰관이 3분이내에 출동 -

□ 112신고요령

- 무슨일이든 보거나 당하면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하였는지 침착하게 말해주어야함
 - 범인?(인원수, 인상, 휴대품, 특징)
 - 도주방향 및 이용수단?(도보, 오토바이, 차량)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등

접수하여 최대한 도와줌

- 112는 신고내용에 따라 파출소,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강력하게 범죄에 대응함
- 112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112가 편리하고 좋은점

- 112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이 없어도 할 수 있음
- 112는 범죄뿐만 아니라 여타 긴급신고도

□ 허위 장난전화 금지

- 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범죄자를 돕는 행위임

10. 범죄예방요령

○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자위방범체제를 강화하고자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형태와 대비요령을 소개함

□ 범인이 노리는 집

- 대문이 열려있는 집
- 자물쇠가 밖으로 채워져 있는 집
-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거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집
- 초저녁에 불이 꺼져있는 집
- 대문에 정기 배달물(우유, 신문등)이 쌓여 있는 집

□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강도는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기도 하지만, 도둑은 주로 침입한 주택의 부엌, 화장실을 이용하므로 흉기가 될만한 과도 등은 깊숙한 곳에 보관,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야간에 도둑이 침입한 경우는 가벼운 기침을 하거나, 선잠에서 깨는 것처럼 하

품을 하며 이불을 뒤척이면 도둑은 불안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가 많음

- 강도가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되 자극적인 말은 삼가고 인착착의를 자세하게 기억해야 함. 또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범죄현장을 절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신속히 112전화 신고를 해야 함
- 귀중품(귀금속 현금등)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좋고, 집안에 둘 때에는 적당한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안전함
- 온 가족이 한 방에서 TV를 볼 때에도 집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문단속을 확인해야 함
- 집을 비우지 않아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비울 때에는 이웃이나 경비원, 파출소에 부탁하고, 밤에는 형광등이나 라디오를 켜 놓는 것이 안전함. 또 집을 여러날 비울 때에는 배달물(우유, 신문등)을 중지하도록하여 빈집임을 모르게 해야 함
- 최근에는 검침원, 동직원 등을 가장하거나 전세방을 얻으러 다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는 경우도 많으니,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함

□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 방법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갖춘다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도어체인, 투시경, 경보기, 비상벨등)

- 범인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기도 하므로 창문에는 방범창을 설치하도록하고, 아파트와 주택단지에서는 집단방범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음
- 그리고 여름엔 열린 창문등으로 침입,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금품을 강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고한 방범창을 설치하도록하고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는 집단방범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음

11. 각종 범죄수법 및 대비책

□ 소매치기

- 수법
 - 소매치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리한 면도칼 따위로 몰래 찢거나 호주머니의 금품을 감쪽같이 꺼내가는 경우도 있고, 동전과 같은 물건을 떨어뜨려 시선을 돌리게 한후 목걸이 등을 따는 수법등이 있음
 -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상가 혼잡한 버스 지하철내에서 한눈을 팔거나 주위가 산만해지는 경우를 노리고 있음
- 대비책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닐 때에는 여러곳에 나누어 넣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음

- 소매치기는 공연히 시비나 싸움을 걸고 싸우는 순간, 공범이 말리는 체하면서 돈을 빼내어 가는 수가 있으니,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함
- 버스안에서 소매치기를 발견하였거나 당하였을 때에는 침착하게 기사에게 알려 승객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함

□ 들치기

○ 수법

-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또는 자신들끼리 싸움을하여 그곳에 시선을 집중시킨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들고가는 수법임

○ 대비책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핸드백이나 가방 등을 잘 챙기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음
- 피곤하여 졸거나, 신문 잡지 등을 보는 사이에 들고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

□ 날치기

○ 수법

- 핸드백 돈지갑 등을 들고 서 있거나 보행중일 때, 오토바이 등을 타고 뒤따라 가다가 낚아채는 수법이 있고
- 특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해 갈 때 뒤를 따라가다가 골목길, 곡각지점 등 한적한 곳이나 횡단보도, 정류장등 혼잡한 곳에서 핸드백 등을 낚아채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도주하는 2인조 날치기가 많음

○ 대비책

- 걸어갈 때에는 핸드백을 길안쪽으로 옮겨 잡거나 끈을 대각선으로 메어서 손을 잡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음
- 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외출할 때에는 값비싼 귀금속을 소지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맡길 때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다액 입출금시는 동료등과 함께 회사 등의 전용차로 가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청경이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함

□ 노상강도

○ 수법

- 으스스한 골목길등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거나, 정면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는 수법도 있음

○ 대비책

- 밤거리를 혼자서 다니는 것은 노상강도의 표적이 됨
- 술에 취했을 때에는 되도록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삼가야 함
- 대낮이라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도, 지하주차장등 한적한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 승용차, 택시운전자 상대 강도

○ 수법

-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을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강도행위를 하거나, 경찰관 복장을 하고 차를 정지시켜 단속하는체 하다가 강도로 돌변하기도 하며
- 범인들이 주차시켜 둔 차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운전자가 승차하자마자 흉기로 위협, 현금 등을 강탈하는 수법도 있음

○ 대비책

-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거절해야 함
- 운전중에는 차문을 항상 잠그고 밖에

서 열지못하도록 하는게 좋음

- 차를 세워 둘 때에는 차량열쇠를 뽑은 후 문을 잠그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을 이용함
- 차량을 발로 차서 시비를 거는 경우나 접촉사고일 때에는 상대를 파악한 후 안전이 확인되거나, 경찰관이 오면 나오는게 좋으며, 상대 차량번호를 확인해야 함

□ 어린이 유괴

○ 수법

- 어린이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 엄마 또는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임수를 쓰거나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기타 강제적인 납치방법등으로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복수단으로 삼는 수법

○ 대비책

- 평소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등은 받지 않도록 알려주며,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알려만주고 따라가지 않도록 알려줌
- 저녁 늦게까지 바깥에서 놀지 못하도록 하고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알려줌
- 외출할 때에는 집에 행선지를 알려주도록 하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 갈 때에

는 친구등 여럿이 안전한 큰길로 다니도록 하며 혼자서는 놀지 않도록 일러줌

- 낮선 사람이 자동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하도록 일러줌
- 어린이가 외출할 때에나 나가 놀 때에는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도록 함

□ 부녀자유인 납치

○ 수법

- 인신매매 80%이상이 허위 구인광고를 이용하거나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임
- 또 지나가는 숙녀에게 갑자기 뺨을 때려 부부행세를 하거나, 가출한 동생을 강압적으로 데려가는 오빠행세를 하거나, 가출한 정신병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가족행세를 하는 수법등이 있음

○ 대비책

- "고액보수보장" 운운에 속지 않도록 하고, 화려한 옷차림이나 지나친 노출은 삼가해야 함
- 길을 가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거나 오빠나 가족행세를 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위급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해 주도록 부탁함

- 주머니나 핸드백에 호각을 넣고 다니다가 긴급할 때 호각을 불어 구원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됨
- 택시를 혼자탈 경우에는 가급적 뒷자석을 이용하고 승차전 차량번호를 확인함

□ 학교주변 폭력배

○ 수법

- 학교·학원·독서실 주변, 골목길등에서 등·하교시의 학생들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는 폭력배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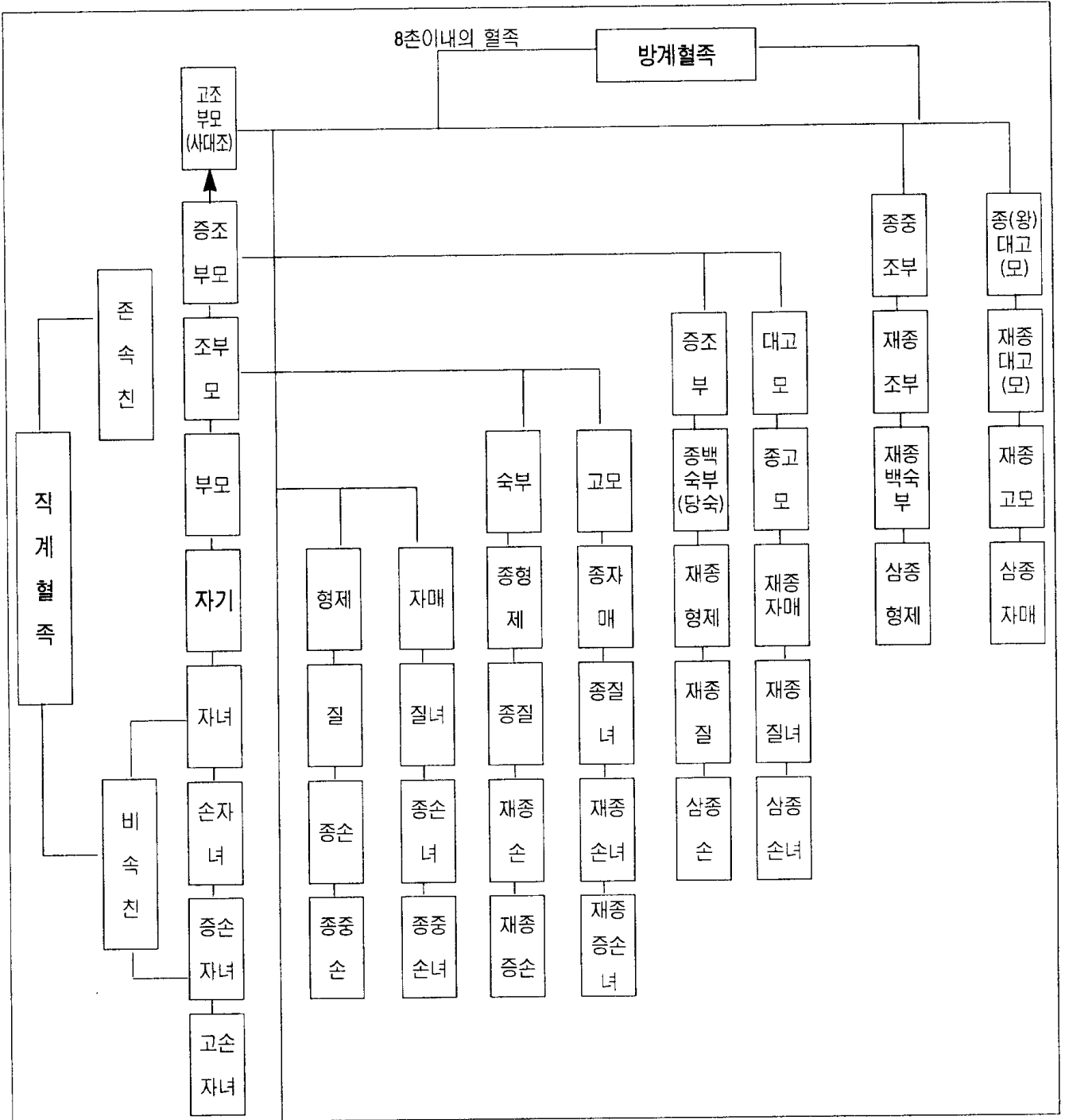
○ 대비책

- 한적한 시간에 으스스한 골목길을 혼자 다니지 않는게 좋음
 - ※ 학교주변 범죄는 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주택가 골목길등에서 방과 전후와 초저녁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함
- 골목길 등에서는 어른 또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지나가도록 함
-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필요이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함
- 폭력배들로부터 금품갈취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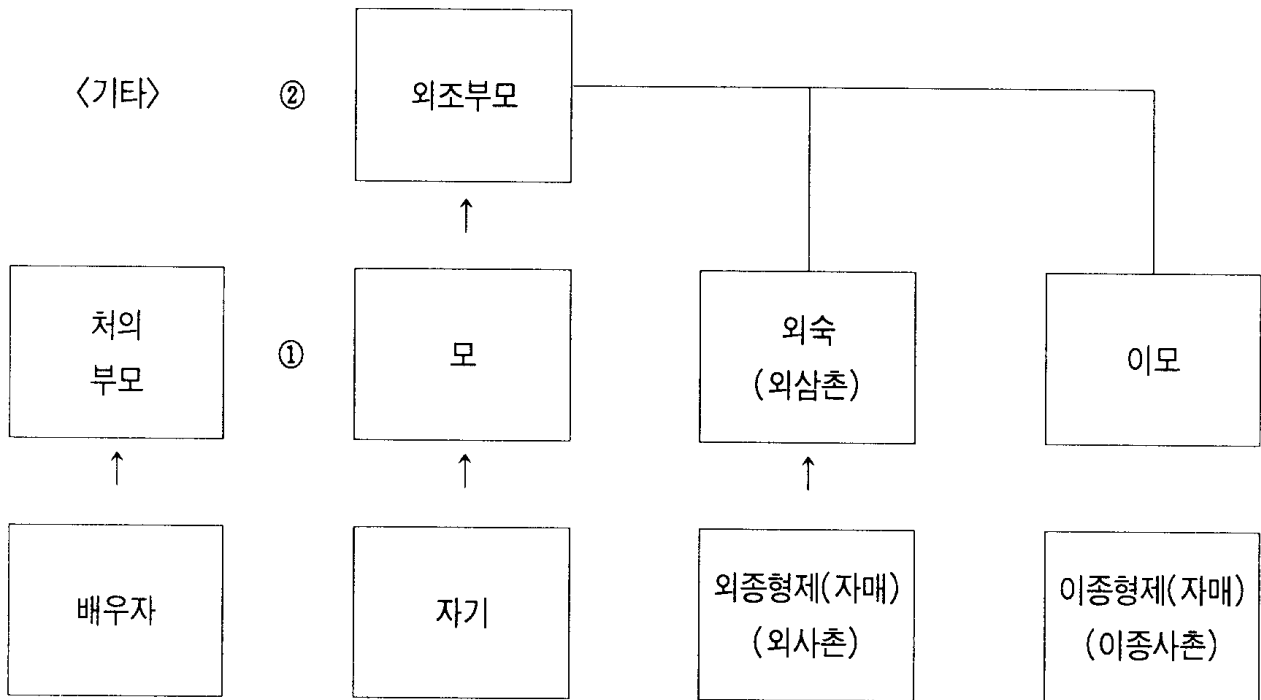
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해야 함

12. 민법상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계보) (민법 제777조)〉



<4촌이내의 인척>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치안논단

- 
- 경찰활동의 변천에 관한 소고/ 황택주
 -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허경미
 - 테러리즘과 자유민주주의/ 주수기

경찰활동의 변천에 관한 소고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 태 주

I. 서 론

이 세상에 고정불변이란 없다. 시간의 흐름은 자연적인 삼라만상의 변모 속에서 인간 삶을 변화시킨다. 또, 인간창조가 자연의 양태를 바꾸어 간다. 이렇듯, 외형도 내용도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요청일수도 있고 보다 나은「삶의 질」을 위한 도전적 창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작아진 지구촌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혁명의 세계시민으로서 IMF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global standard)속에서 우리의 대안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리였다. 이렇듯 우리의 생존은 물론 발전의 전략도 이제 세계적(globalization)이 되어야 한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그 모델은 어느 나라인가? 자유민주주

의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역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관은 사회적 문화에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그들의 집단적 공존을 통해서 삶을 향유하고 번영하게 되어있다. 사회의 발전도 그 속에서 협력과 결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나은 합의를 도출하고 유도하는 문화의 창출이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렵고도 모호한 일이다.

그러나 빈곤과 불운을 숙명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상태에 만족하고 살려는 우리와는 달리, 인간적 주체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민주 행정 속에서 과학적 사고로 물질적 풍요를 진작시켜온 서양인의 발전 지향적 사고는 한 수 위 일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본고는 중부대학교 논문집(1998)중 본인의 「지역사회와 경찰」의 일부를 발췌하고 보완한 것이다.

「제2의 건국」을 모토로 하는 「국민의 정부」는 바야흐로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자치경찰·지역경찰)의 근본이 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사회변동은 그와 비례적인 사회문제를 유발시켜 지역사회에까지 확대되기 마련이다. Leemans도 “지역사회의 발전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이 사회변동에 따라 그의 도전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A. F. Leemans, 1970).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전반적인 민주주의 의식은 고양될 것이며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제도의 변화는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며 이것은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제도가 먼저 흡수하고 유도하는 연결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민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분권의 장점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훌륭한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도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상의하달적 주입식 방법으로 이는 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하여 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체질 속에 내면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구화(口話) 민주주의 또는 교도(敎導)민주주의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Elite Democracy에서는 중앙의 집권세가 너무 강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구민상, 1998). 이렇듯 1961년 군

사정권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자치의회 선거를 거쳐 34년 만인 1995년 7월 1일에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했다. 경찰조직편성에 있어서도 국가경찰체제를 할 것인가 또는 자치경찰제를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재근과 이황우의 지적은 명료하다. 그는 이것의 기초조건의 첫째를 일반행정제도에 비중을 두고, 지방행정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인 대륙법계의 국가 경찰을 채택하여 할 것이며, 반대로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이루어질 때에는 당연히 지방분권적인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재근, 1976 ; 이황우, 1997)고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 등장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경찰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우선 한국경찰의 의의를 개관하고, 미국자치경찰의 역사적 성격을 고찰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어쨌든 현재 민주적 자치경찰의 본원인 미국의 지역사회공동체적 경찰활동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서기영의 「한국경찰의 역사, 1988」와 S. M. Cox의 「경찰, 1996」이 중요하게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II. 한국경찰의 의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전한 경우는 가장 훌륭한 사회존재이지만 법과 정의로부터 이탈되는 때는 최악의 동물이다.”라고 했다. 동양의 성선설(맹자)과 성악설(순자)을 한데 묶어 인간의 한 개체 안에 X·Y이론으로 인간형을 분류한 D.McGregor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Schein 또한 인간을 비합리적 감정과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쾌락추구의 존재로 인정했다(P. Hersey and K. Blanchard, 1977; E. H. Schein, 1980). 이같이 인간은 숙명적으로 개인적 육체에 의한 쾌락적 본능과 사회적 정신에 의한 이성적 의무 사이를 오가며 갈등하는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어차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기에 사회 안정적 질서유지가 필수 불가결한 기본조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참여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라는 현대행정의 본질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이며 창조적인 측면을 부각해야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Sams S. Souryal, 1981). 따라서 경찰의 기원은 사회범위의 확대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과 함께 스스로를 지키는 자구적·자위적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문화라는 조직체로 발전 된 것이다(Raymond J. Michalowski, 1985).

경찰이란 의미의 「Police」는 중세프랑스어로

서 라틴어 「Politia(polite(시민)+ia)」를 어원으로 하는 시민을 다스림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뜻을 내포한 것으로 사료된다. 「警」의 깨우침이란 선량한 대다수 시민을 위한 명령·강제적 법의 집행을 뜻하고 「察」살핌이란 보다 나은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계몽·봉사적 의미 있는 참여를 함축적으로 집약하고 있다하겠다.

근대이후의 경찰의 변천사를 개관하면 영국은 1829년 피일경에 의하여 근대적 경찰제도를 창안하였고, 미국은 1833년 필라델피아에서 유급경찰제도의 창설을 보았다. 한국은 포도청을 영속적이고 전문적인 경찰제도를 정비한 1835년 헌종왕시대 근대적 경찰기구형태의 맹아적인 발전을 보았다(서기영, 1988). 갑오년(1894) 7월30일 일본의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서울에 경무청을 창설했으며, 경찰고문으로 약간의 일본인이 파견되면서 대륙법계 경찰제도가 한국의 근대적 경찰의 효시다. 그후 광무10년(1906년)2월 22일 경무청관제를 공포함에 이르렀으나, 융희원년(1907년)7월 28일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인이 경시청관제의 경시통감에 임명되고 일본인 경찰보좌관들도 채용하기에 이른다.

갑오경장(1894년) 이후 우리도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혁명등의 사회혼란과 합병 속에서 국왕의 전제대권과 목적강화를 위한 역할을 강행하는 기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사실

일본경찰도 명치시대 초기에는 자유민주운동 탄압과 반전운동 단속을 했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대정기에는 사회주의 탄압과 정부 반대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선거간섭, 그리고 제2차대전에는 지배계급의 편에 서서 저항자의 탄압과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왔다(서기영, 1988). 8·15해방후 미군정의 시기로 1945년 9월9일 미군이 진주하고 9월10일 아놀드 소장이 군정장관에 취임하고, 10월 21일 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했다. 민주경찰체제 구현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여자 경찰관을 1946년 5월 15일 채용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현대적 요구인 영미법계 경찰체제의 시작은 미군정 경찰로서 한국의 독립과 민주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군사성을 띠고 있음은 물론 미점령군의 안전과 군사전력의 성공에 우선 임무가 부여된 것 또한 당연한 이치가 될 것이다. 8·15해방의 환희는 혼란과 무질서를 폭발했으며, 1946년 10월 1일 남한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하려는 북한의 공작은 대구를 비롯해 10·1폭동사건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경찰봉은 자연스럽게 칼빈소총으로 바뀌어 제주도 폭동사건, 여순 반란사건도 진압했다. 또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과 중공군 침입 후 후방작전 소탕으로 경찰은 중화기로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서기영, 1988.12).

오늘날 경찰의 본질은 봉사(service providers)와 집행(law enforcers)에 있다. 따라서 우선적

으로 민주적으로 만민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법위에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준법의 생활과 토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민주경찰은 움직이는 집행관이고, 자발적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무지와 관존민비사상, 가난, 그리고 사회 불안정 속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생활했던 우리네 일반인들에게 법은 멀리 있었으며, 경찰은 무서운「민중의 몽둥이」로 표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조선시대나 더 나아가 일제식민지 시대는 탄압경찰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찰이미지로서 그 잔영은 지금도 회피의 대상으로 각인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사상갈등과 6·25를 겪으면서 그후 1991년 5월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 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그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찰 자신은 피의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은 민중의 봉사자라는 본연을 떠나 호국치안을 담당하는 건국경찰, 전투경찰이었으며, 그후 취약한 전통성위에 전폭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정권의 연속은 시국치안을 담당하는 정보경찰, 정치경찰이란 오명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경찰관 자질의 문제였다기 보다는 법치국가로서 토질의 천박성에 기인함이고,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자

치시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욕구에 따른 자율적인 문제제기와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 창도로 심층적인 문제의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경찰과 지역사회는 공생관계다. 그러나 경찰과 지역사회관계는 언제나 어떤 갈등과 긴장이 형성되는 애증관계가 존재되어 왔다(Alvin W. Cohn and E. C. Viano, 1979). 그러나 Johnson(Thomas A. Johnson, 1981)의 지적대로 경찰의 활동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지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새로운 경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제 국민의식과 법제정도 세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경찰의 업무수행도 민생치안이란 본연의 자세로, 「민중의 지팡이」인 봉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경찰권 발동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이를 위협하는 위협”은 예방 및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그리고 추상적 위협까지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충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경찰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초하여 계몽, 지도하고 국민에게 봉사, 강제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충남, 1989).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 집행은 점차 일부의 업무로 축소될 것으로(김경준, 1996), 경찰관 자신들도 「러시아 기병대원(cossack : Samuel Walker, 1977)」과 같은 완력의 표상이나, 자기들만에 「파란제복의 폐쇄된 단체」를 벗어나(blue fraternity: J. A.

Inciardi, 1990), 경찰과 다른 시민들 사이에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meaningful partnership: S. M.Cox, 1996」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정립해야 한다. 사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사건의 단순한 집행보다는 원천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는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경찰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Ⅲ. 미국경찰의 의의

미국의 총면적은 9385천km²이고 인구는 246백만명 정도이다. 행정제도는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로서, 지방정부는 도시·군·읍의 정부단위로 구분된다. 경찰도 도시경찰(City Police), 군 보안관(Country Sheriff), 읍치안관(Town, Township Constable)과 주정부의 주경찰(The State Police)그리고 연방정부의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 - Enforcement Agency)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약 70만 명이 공기관에 근무하는데 한 명에서부터 25백명의 크기로 다양하다. 9만명 이상의 선서한 경찰관(정규경찰)과 일반시민이 10개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가 하면 만개 이상의 경찰서는 10명이나 더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도 있다(Dunham and Alpert, 1993).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19세기 이전까지는 매우 한정된 경찰활동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사실 Texas(1823)와 Massachusetts(1865)만이 약간의 주경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Pennsylvania주에서 1905년 가치체계의 분쟁과 노동자저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주경찰대(State Constabulary)를 창설하여 20년 넘게 많은 주들이 그와 유사한 모델을 채택했다. 지금은 Hawaii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어떤 형태로든 주경찰을 갖고 있으며, 약 11만 명으로 미국경찰의 15%정도이다.

1789년에 창설된 U. S. Marshals가 첫번째 연방경찰로 연방법원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서였다. 1908년까지 연방정부는 극히 제한된 수사권과 법집행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T. Roosevelt대통령은 의회에 연방법집행기관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중에 행정명령으로 수사국(Bureau of Investigation : 1934년 정식으로 연방수사국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 개칭됨)을 창설하여 초기 25년간 험난한 역사를 기록하였던 것이다(정진환, 1996). 현재 60개 이상의 연방기관이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65천명(미국경찰의 약8%)이 근무한다. 그들의 주임무는 연방범죄의 수사과 통제로서, 주경계를 횡단하는 은행강도나 범인은 물론 연방의 자산과 공무를 보호하고, 경찰을 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방경찰활동(municipal policing)은 최근의 현상으로, 영국에서 1829년 내무부장관이던 Robert Peel경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경

찰은 정부의 통제아래 군대식 계선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품위가 있어야하고 이웃에게 친숙해야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범죄를 예방하고 취급하기 위해서 경찰이 정해진 관할구역을 순찰하는 지역전략을 지원했다. 1870년 Peel의 지역전략은 미국의 중요한 도시에 퍼졌다(Lane, 1992). 그러나 미국의 지방경찰은 중앙집권적이지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조직되었으며 매우 광범위한 형태의 봉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초기에 90%의 미국의 영국정착민은 그들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건장한 남성이 그들 시간을 봉사해서 야간경비 체계를 도입했다. 이것은 개척지에서 자기자신의 보호는 물론 그들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오직 자기들의 힘에 의지한 자위의식의 발동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소요와 무질서는 그들의 자발적참여의 효율성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749년 Philadelphia주민들은 감시자(warden)를 둘 법을 통과하도록 입법자를 설득했다. 각 감시자는 필요한 만큼의 많은 경비원(watchmen)을 둘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었으며, 경비원들의 임금은 세금으로 지불되었으며 그들의 힘은 증가했다. 그들은 1833년 주간 경비체제(day watch system)를 수립하였으며, 1850년대 주야간 경비체제가 통합되어 24시간 주민을 보호했다(Berg, 1992).

이렇듯 미국의 경찰은 영국Peel경의 정부의 통제나 한국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아니었

다. 그들은 분권적이며 자치적인 자위권의 민주적 자구의식으로부터 경찰이 생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찾아온 자유 민주적 이주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거대한 권력 집단을 기피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경찰력의 집중화란 사고자체를 기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체제보다도 힘있는 지방정당을 대표하는 모순에 빠진다(Roberg and Kuykendall, 1993). 질서유지란 것이 현존하는 불평등의 계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불평과 갈등을 순화시키는 형식적 노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Louis A. Rudelet, 1986). 미국의 자유 민주적 정치이념은 누구나 공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자기 선거인단의 수에 따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경찰권의 장악은 그 하나의 전리품이었다. 경찰행정의 정당적 영향은 보안관과 치안관과 같은 선거직은 물론, 경찰위원회에 의한 도시경찰도 경찰의 인사나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뉴욕시 경찰국(New York City Police)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총감은 시장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재임기간은 모두 3년 미만이였다(정진환, 1997). 사실 고위직 경찰은 정치적 지원이나 많은 돈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경찰의 부정과 직권남용은 전통이 되었으며, 규율과 전문직의 자긍심은 대체로 실종되었다(S. M. Cox, 1996). 이렇듯 경찰의 생성초기부

터 타성화된 엽관주의적(Spoils System)체제는 Pendleton Act(1883년)의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행으로 관례화 됨으로서 20세기초까지 주민의 많은 신망을 잃었다. 경찰전문화 운동의 선봉은 A. Vollmer으로서, 그때까지 경찰전문화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되었음에도 효과적인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근대 경찰관리체계의 창시자로서(the father of modern police management system) 1905년부터 1932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Berkeley의 경찰장으로서 경찰관 교육을 위한 이상도 실현하였다. 그러나 1940년과 1950년대의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은 유능한 경찰모집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그리고 1960년과 1970년대 초기의 혼돈과 시민무질서는 경찰직에 대한 매력을 줄였다.

1967년 대통령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의 보고서로 해서 급속한 발전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것은 국회에서 총괄적 범죄통제와 안전한 거래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의 통과를 유도했고, 매년 10억불을 형사기관의 개선과 강화에 지원했다. 이와 같은 지원은 경찰훈련과 함께 급여와 편익 그리고 장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문적 이미지를 크게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경찰 내에서 집단협상과 조화화하는 경찰행정가와 일반경찰사이에 큰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근원적인 경찰행정가의 양태나 부적절한 정치참여는 중요한 경찰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Ⅳ. 지역사회의 성격

인간은 자활을 위한 양육기간을 거침은 물론 홀로 생활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상호의존과 상호유대의 필요조건에서 무리지어 살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근거적 본능 속에서 생활양태가 수렵과 채취로부터 목축과 재배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혈연적 유랑의 무리가, 군집적 정주형태로 변환되고 농업위주의 마을집단을 형성했다. 이것이 지리적 근린관계를 이루어 공존적 상호작용과정에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갖는 지역사회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란 영어의 (Community)감옥, 종교조직, 전문인협회등 소수집단에서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작은 마을, 읍, 시와 같은 사회적·지역적 조직을 뜻하고, 또 오늘날 전세계 인류는 “공동체를 추구 (Search for community)한다”고 할 때 이는 일체감과 연대성의 도덕적·정신적 현상의 「공동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라틴어 (Communis)라는 어원으로 볼 때 「공동참여」의 뜻도 내포한다. R.Malver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치밀하고 함축적으로, 그는 광범위한 사회로부터 한정된 지역 내에서 함

께 살아감으로써 상부상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유대의식이 생성되고 이것이 공통의 관습과 전통 및 사회적 관념을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이다(R.M.Malver, 1942). T.Parsons의 주장으로 재정립될 수 있는 바, 지역사회란 주민의 일상적 활동이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토대로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방식과 강한 유대의식으로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T.Parsons, 1961). 따라서 지역사회는 어느 정도 특정한 지역에서 집단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 그들이 준수하는 규범, 그리고 그들이 창조하는 물질적 재화로 구성되는 문화를 통해 사회적 상호관계를 갖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첫째,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인간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삶의 근거지로서의 소단위의 지역적인 단위사회이다. 둘째, 인간은 한정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체면유지와 자아실현의 무한한 욕망을 위해, 상호의존과 협력 그리고 상호보완을 통하여 공존공영을 위한 확장되는 상호작용이 형성된다. 셋째, 일정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물적 상호작용은 은연중 관습으로 고착되어 종속적 규범을 형성하며 이를 토대로 응집적 우리의식을 견지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감으로서, 지연적 결연인 공동체 의식의 문화가 정착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

의 체제 내에서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단위사회를 존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이들 구성요소를 토대로한 인위적인 변화와 자극이 동기유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같은 구성요소가 세계적 맥락(Community Development in Global context)으로 지역사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8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Arthur Dunham, 1970). 사실 이같은 문제들은 언제, 어느 곳에나 있는 것으로 전술적 변화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인간의 소외된 갈등의 기본적 특성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불균형, 불평등 문제나 환경문제, 청소년 문제 등 현대사회 문제는 물론 지역특유의 문제 등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개연성이 크다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의식의 강화로 상호작용을 확대할 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지역사회 개발이란 일정한 소단위의 주민으로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적인 노력으로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이다(A. Danham, 1985). I. Sanderson도 지역사회 개발을 인간관계의 끊임없는 형성과 변천으로서 주민들의 참여와 행태개선이라는 사회발전의 과정과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지역사회는 중요한 소단위 사회로서 성원들을 발전적으로 결속시키는 공동체의식을 위한 개발의 핵심적 전략은 참여 개발(N. Keough, 1998.6)이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

V. 자치 경찰활동의 본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경찰의 절도와 연루, 마약판매 그리고 잔인성 등의 부패와 비능률은 경찰의 시작에서부터 경찰이미지의 오염에까지 지속되는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경찰의 고독과 소외 그리고 이탈의 결과를 생성한다. 만약 그들 내에 추문이 퍼질 때는 일반대중은 물론 경찰조차도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충격으로 받아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범죄의 포악성과 무질서는 경찰자신의 한계로 다가섰다.

이제 우리도 개방화된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의 물결을 거부할 방파제를 만들 힘도, 또 가려진 율타리 속에서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함께 더불어 모습을 바꾸면서도 우리 것을 찾아야 하는 지방의 세계화(globalization)하는 방법론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일 뿐이다. 이 같은 정보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집중된 권력이나 제도로 사회변혁을 시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천차만별의 개인

적 개성과 지역사회의 문화는 그들 나름대로 다양한 욕구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요, 수요자 중심의 경영철학이며 또한 상향적 개발전략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미국경찰의 역사를 일괄할 때 경찰의 지역 사회통제는 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경찰행정가들이 순찰차의 사용을 통하여 속도와 이동성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안, 도보순찰과는 다르게 경찰과 주민의 불화적 사회적 거리가 생겼음은 물론, 범죄에도 긍정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늘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경찰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범죄통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오직 그 지역의 주민과 협력해야함을 인지하고, 그들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으로서 지역 사회 지향적이며, 지역사회에 근거한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or Community-based Policing)으로 전환하기에 이른 것이다. 동시에 몇몇 지역사회에서는 사건의 근본을 향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 oriented Policing)이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경찰활동에 있어 이 두가지 접근 책은 경찰이 지역사회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경찰의 업무는 지역주민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동반자관계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 새로운 지역 사회 경찰활동의 의의이다.

미국의 자치경찰(municipal police)이 우월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완력, 경

찰의 부정 그리고 비효율의 상징이기도 했다. 경찰은 늘어나는 대부분 범죄를 막고, 범법자 대부분을 체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히 봉사하지도 못했다. 경찰과 지역사회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 : PCR)역시 경찰이 주체가 되어 업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일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Howard H. Earle, 1980).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COP)을 경찰의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police-community relations programs : PCR)의 진부한 요소를 단순히 철폐하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은 일시적인 시끄러운 유행(buzzword), 그리고 유사한 종전의 전략처럼 곧 사라질 것으로 믿었다. 이 같은 믿음은 전통적인 경찰에게는 아마도 특별히 퍼졌다.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준 군사적 구조와, 시민규제 그리고 노조화에 견지로선 큰 저항이었다(Skolnick and Bayley, 1986).

Skolnick와 Bayley는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P)으로 다음요소를 지적했다(1986 : 212-220).

첫째, 경찰지역사회 호혜성(police-community reciprocity)으로, 경찰의 진정한 감성적 대중봉사는 경찰활동에 무엇인가 기여하게 된다. 더욱이 이처럼 감성적 의사소통은 대중에게 그 중심을 두는 활동으로서, 경찰과 대중은 범죄 예방의 공동생산자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명령의 지역분산화(areal decentralization of command)로서, 작은 범위의 지·파출소를 세우고 그들이 봉사하는 특별지역내의 경찰과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늘려가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순찰의 재조직화(reorientation of patrol)로서, 경찰과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시 차를 세우거나 내릴 수 있고, 차량순찰로부터 도보순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찰의 순찰할당제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일반시민화(civilianization)로서, 일반인을 경찰관서의 어떤 지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채택은 지역사회의 이동성이나 범죄예방의 프로그램이나 정책까지도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사실상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P)은 철학적 발상의 전환과 실천적 운영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전통적 경찰활동의 실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Trojanowicz와 Bucequerox(1990 : xiii-xv)는 이같은 기본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특별한 문제에 적용될 기술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경찰역할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철학(philosophy)으로서 참여의지나 봉사노력의 실천이다. 경찰의 공적관계는 인간적으로 긴밀한 연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사회활동

은 부산물로서, 주민과 대부분 취약자(빈곤, 노약, 무주택자)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과 경험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Overman(1994 : 20)도 전통적인 관행인 주민을 도외시한 경찰의 독단적 법집행을 떠나,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그들의 삶의 질에 근거하는 우선 순위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우선하여 그들의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두려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으로 신고함은 물론 증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직·간접으로 그들과 대처하는 조직적 대응도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1990년부터 시작한 뉴욕경찰이다. 시민신고 체제인 911로 주민과 경찰은 동반자 관계로 활동하면서 1991년에는 36년만에 처음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시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범죄에 대한 대응이나 검거보다도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를 하나의 건전한 삶의 공동체로 육성 발전하겠다는 철학이 우선한다. S.M. Cox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지역사회관계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제시한 분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지역사회관계에 대한 비교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지역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문제해결로서 주민과의 관계개선은 환영할 부산물 ▶개선기능: 주민과 경찰은 정규적 접촉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의 의재 설정에 협조 ▶경찰의 책임은 주민들이 받은 서비스에 의해 보장 ▶의미있는 조직변화와 부서 조정은 경찰 선발에서부터 교육, 평가 그리고 승진에까지 미쳐 부서 전체의 철학으로 받아들임 ▶영향력은 상향구조로서 주민이 받은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찰정책에 영향을 미침 ▶경찰의 지속적 접촉은 분권화된 사무실에서 개인적 혹은 전화로 이루어짐 ▶경찰은 주민들이 많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자원봉사자가 이웃사람을 돕도록 고무 ▶성공은 주민의 두려움, 이웃의 무질서 그리고 범죄의 축소에 의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태도와 프로젝트의 긍정적 이미지 변화로 주민과의 관계개선이 중요사안 ▶막료기능 : 주민과 경찰은 불규칙적 접촉 ▶특정위원회가 문제를 관여하고 경찰에 건의 ▶경찰의 책임은 주민평정위원과 경찰상관에 의해 보장 ▶전통적인 조직은 근본적 조직변화는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첨가하며 원상보존 ▶분리수용하고 자기 담당 부서만으로 지엽화, 영향력은 하향구조로서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투입되고 결정 ▶경찰의 간헐적 접촉은 시민전체에 대한 책임 때문으로 중앙본부를 통해 이루어짐 ▶주민들에게 자원하도록 고무되어지지만 더 큰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기대하도록 말해지지 않는 ▶성공은 전통적 조치인 범죄율, 시민의 경찰과의 만족에 의해 결정

출처 : S.M.Cox, 1996 Police, p.20

Ⅵ. 결 론

이상에서 경찰활동변천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경찰활동의 기본이 지역사회가 중심임을 규명하였다. 사실 과거역사에 대한 확실한 평가 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누구」보다 「무엇」을 위한다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한정된 대상임은 물론, 시·공의 환경적 영향과 인위적 조작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의 창도(創導)는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인간은 무한한 탐욕을 가진 영악한 존재이다.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킴은 물론 같은 종족간에도 야릇한 이유로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래서 함께 살아남을 법이란 규제를 필요로 하고, 이를 직접 집행할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법의 제정권도 완전한 사법처리권도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화의 원인이 된 사회토양과 범죄의 방지와 예방도 경찰 자체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관도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직업인일 뿐이다. 그들의 직업선택이 자극적 흥미에서 시작하여 매력적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이치이다(Samuel Walker, 1983). 그렇지만 계속 급증하는 범죄율과 흉포화 그리고 조령화 현상은 물론 사회변동 속도와 비

례하여 해체되는 인간성은 새로운 대안을 강요하고 있다. 새롭게 모색되어지는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COP)로서의 지역사회의 경찰활동(CP)은 세계화의 요청과 각양각색의 지역사회수요에 부응해서 발전하여야 한다. 이렇듯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사회변동에 따른 그간의 경찰의 모순점을 시정할 수 있음은 물론, 한계있는 경찰자체활동을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치안의 전략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인간공동체를 추구하는 철학이지 구체적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풍요한 산업사회와 정보화의 육체적 편익은 인간사회의 윤리와 철학이라는 정신적 거리를 비례적으로 멀게하고 있다. 개인은 소외와 갈등으로 안정감이 결여되고, 사회는 상호불신과 경쟁으로 질서가 파괴되며, 범죄의 공포는 극성을 더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본연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고양하며 보다 큰 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찰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함에 있어서 우선 겸손한 태도로 주민의 지혜와 잠재력을 인지하고, 다양한 지식을 이해해서 민주적인 실행을 통해 실천적인 비전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스스로 고양할 수 있도록 이론에 앞서 사실에 치중함은 물론

장래 지향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되도록 고무해야 한다.

지역사회경찰은 어쨌든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이 “주민의 두려움이나 무질서 그리고 범죄의 축소에 의해 결정”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는 준 군사적인 조직과 무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도입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충분한 인식부족으로 변화성에 대한 무조건적 반발의식 속에서 혼돈의 두려움, 기득권 상실,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목표갈등 등이 장애요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경찰본연의 민생치안이란 책무를 지역사회주민의 책임으로 완전히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뿐이다. 경찰관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자연법」과 사회가 공중복리상 악이라고 규제하는 실정법을 약간의 임의 재량을 갖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은 필수이고 또한 건장한 체력과 깊은 인간미를 겸비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봉사와 비굴, 정중과 연약을 구별하여야 하며 의연하면서도 동시에 정중하고 단정한 용모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규제와 단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연공평해야 한다. 경찰관이 선천적으로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의혹심을 품는 것은 허물이 안 될지 모르나 그것을 대민 관계에서 표시하는 것은 커다란 허물이 된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일적으로 국가경찰체제를 자치경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완전한 대륙법계의 국가경찰 체제인 프랑스, 독일과 자치경찰체제인 영국 등에 있어서도 양대 체제가 서로 보완, 융합되어 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문강수, 1996). 특히 동부의 New England지방과 같이 자치단체의 수가 많고 지역내 군소 경찰이 비효율적으로 상호협력체도 구축되지 않은 채, 복잡하고 미묘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법집행기관의 강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간다(정진환, 1996). 우리도 유일한 국가경찰체제를 민주적 경찰로 전환하여 확실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정착해야 한다. 사실 현대는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자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도 한나라의 국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며 자치권도 국가주권 아래서의 권리로서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김용래, 1987). 따라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국가의 감독권 사이에 기능적 연계로 조화하는 동반자(Partner)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미래의 디지털화한 정보화 사회는 지역사회의 경계를 초월한 개방화체제로 작은 동질적지역성의 공간개념에서 가상의 사회구성체인 관심집단들의 네트워크인 사이버 공동체의 출현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民間警備産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교관〉 허 경 미

I.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 및 주요시설의 대도시 집중, 사회조직과 기능의 급속한 변화,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세계화 등의 물결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다양한 범죄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치안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사회만의 특수현상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겪고 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이들은 이미 이러한 특수한 치안수요에 경찰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民間警備(Privacy security)제도를 정착시켜 관련산업에 대한 집

중적인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최초의 民間警備회사인 “핀커톤 방호순찰대(Pinkerton Protection Patrol)”가 1857년에 등장하여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民間警備産業을 성장시켰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民間警備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국가중요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치안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 왔으나 한국의 民間警備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民間警備産業의 실태 및 관련법규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民間警備産業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예방활동이라는 民間警備産業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民間警

備産業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이를 위한 입법과 民間警備産業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려고 한다.

II. 公警備와 民間警備와의 비교

1. 公警備와 民間警備의 구분

(1) 公警備의 概念

公警備(public law enforcement)란 국가의 공 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교정, 소방과 같은 국가기관 특히 주로 경찰에 의하여 제공되는 치안서비스를 의미한다.

경찰의 개념은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므로 그 개념을 확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견해는 전통적 입장의 경찰개념과 현대적 입장의 경찰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전통적 입장에서는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경찰의 목적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보고, 이를 위하여 「명령·강제적 작용」을 수단이라고 함으로써 라고 경찰의 소극적 기능을 강조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적 입장에서는 질서유지차원의 소극적인 권력작용 보다는 지역사회에의 서비스적 측면을 중시하여 “경찰이란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공공 서비스 또는 公共財”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행정학자 및 경찰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데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몽·지도·봉사·응원 등의 비권력적 서비스 즉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의 행사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헌신하는 일꾼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경찰의 소극적인 질서유지 기능과 적극적인 서비스기능을 조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모두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民間警備의 概念 및 沿革

民間警備는 自治制경찰국가에서 소위 “외부의 침입에 대한 국민들의 自衛權의 行使”라

1)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 대한문화사, 1995), p. 3.

는 전통적 경찰개념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왔다.

民間警備란 “여러 가지 侵害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의뢰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²⁾

즉, 民間警備란 民間警備員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이나 재산 및 신체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民間警備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연간 10만명의 이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19세기 중반부터이다. 이때 핀커티이라는 영국인이 1850년 직원 9명으로 사설탐정업을 시작하였다가 7년 뒤에 업체명을 「핀커티 防護巡察隊」라고 이름 짓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지역의 철도경비를 담당하는 경비회사를 운영한 것이 오늘날 民間警備産業의 모태가 되었다.

民間警備의 성장배경과 역할이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나 그 중 가장 적합한 이론은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이다.³⁾

수익자부담이론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⁴⁾

경찰의 역할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반적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여러 공조직중 한 조직일 뿐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결국 경찰은 국가와 사회 단위의 치안과 범집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개인이나 단체 또는 조직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부담을 하여야 하며 국가로부터는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이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치안행정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 경찰행정에 民間警備 개념의 도입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며 사회적인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 Standards and Good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urver Resul,'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oct, 1977), p. 4 民間警備는 民間警備, 용역경비, 임대경비, 사경찰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民間警備 관련 사업을 통상 「民間警備産業」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민간경비」와 「민간경비제도」는 통상 혼용되고 있다.

3) 이에 대해서는 空洞化이론, 경제환원이론, 이익집단이론, 수익자부담이론이 등이 있다.

4) 윤창수, 경찰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民間警備 역할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1996, p. 11.

(3) 경찰과 民間警備의 비교

경찰과 民間警備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양자간에는 使用者(The Employer), 公權力作用의 限界(Degree of statutory power possessed), 業務遂行의 性格(The specific functions performed)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⁵⁾

첫째, 사용자적 입장에서 보면 경찰은 그 임무가 일반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용임에 비해, 民間警備는 특정한 의뢰자(고객)을 위한 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공권력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과 강

제권을 가진 반면에 民間警備員은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제약을 받고 있다.⁶⁾

셋째, 업무수행 성격에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은 양 기관의 공통된 목적이지만, 경찰이 공공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 집행을 주로 하는데 비해 民間警備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만큼 의뢰인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民間警備와 경찰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民間警備와 경찰과의 비교

구 분	민간경비	경 찰
수요자	고 객	시 민
역할 및 기능	범죄예방	범죄예방 및 진압
수혜자	특정대상	일반시민
운용자	영리기업	정 부
목 적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	법집행 및 범인체포

5) Standards and Goods, "American Societyfor Industrial Survivor Result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oct, 197), p. 6.

6) 이에 대해 A. J. Bilek은 미국의 民間警備員의 법적 지위를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일반시민과 같은 권한(Security officers with citizen powers)을 가진 자로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서에 의해 임명되거나, 경찰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民間警備員과 둘째 유형은 정부기관, 자치체, 보안관 등으로부터 특별한 경찰임무를 위임 받은 경비원(Security officers with special powers), 셋째 유형은 경찰관 신분으로 民間警備 분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民間警備員으로 분류하고 있다(치안본부, 미국경찰, 1988, p. 646).

이와 같이 民間警備와 경찰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으나 사회의 변화와 범죄의 증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였고 정부도 경찰력만 가지고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평온하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점차 경찰업무에 民間警備를 도입하는 경향이 선진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2. 民間警備의 활동영역

民間警備의 활동은 한정된 분야라고 할 수 없으며 점점 그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미국의 Halkrest 보고서는 民間警備의 활동영역을 ①자체경비업, ②경호 및 순찰서비스, ③경보서비스(Alarm service), ④사설탐정업, ⑤무장차량 서비스업, ⑥경비장비 제조 및 유통업, ⑦자물쇠 제조업, ⑧경비 자문업, ⑨기타업무(경비견, 마약검사, 법의학적 분석, 거짓말탐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⁷⁾

그러나 民間警備産業의 활동영역을 기능별로 재산의 보호, 개인의 안전확보, 정보의 수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의 보호

개인이나 기업의 시설, 설비, 기타 재산을 범죄나 화재 또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에의 접근을 규제하고 차단하

기 위한 출입감시, 억제, 고객이나 내부직원의 통제, 사고방지, 시설 내의 안전확보,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말한다. 이 업무는 주로 제복차림의 “경비원”에 의해 수행되며, 民間警備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 개인의 안전확보

의뢰자(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로 기업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대중과 많은 접촉을 하거나 대중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로서 「보디가드」, 「에스코트」로 불리운다.

(3) 정보의 수집

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행방불명자의 수색, 보험회사의 지급업무를 위한 조사, 배우자의 탈선행위 발견, 직원의 비행조사 등도 民間警備업의 업무영역이며 최근에는 시장조사, 기업의 회계감사, 문서감정,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는 감식활동을 대행해 주는 경비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7) Halkrest Report I, 1990, p. 173.

Ⅲ. 미국 및 일본의 民間警備 産業의 實態 및 展望

1. 미국 民間警備産業의 실태 및 경찰의 민영화정책

(1) 民間警備産業의 실태

미국에서 民間警備業體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1850년대이다. 당시에는 民間警備員의 역할이나 公警備인 보안관과의 역할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전직경찰관들에 의하여 民間警備業體가 주로 조직되었다. 이후 미국이 제 1,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자 국가 중요산업과 주요 군수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시설, 인원, 장비, 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民間警備員을 앞다퉈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民間警備産業은 괄목할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노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950년에 이미 미국의 民間警備員(私경찰, 탐정, 경비원)은 공식적인 법집행 공무원(각 地域경찰, 州경찰, 聯邦경찰)의 수를 1.42: 1의 비율로 앞서고 있고, 1960년대에는 1.52:1의 비율로 앞서고 있다.

또한 연방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1)의 보고에 따르면 1980년 民間警備業體에 대한 연간 지출액은 217억 \$로서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139억 \$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Hallcrest 보고서는 民間警備업체의 성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2000년대에는 民間警備관련업체가 152,300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표3-1〉에서와 같이 民間警備회사는 그간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기존 회사의 승계나 합병, 도산 등의 감소 요인으로 향후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표 3-1〉 民間警備業體의 현황 및 전망

연 도	용역경비 서비스및 제조업체	연평균 성장률	자체경비사	연평균 성장률	총회사수	총연평균 성장률
1980	29,600	N/A	40,000	N/A	69,600	N /A
1990	57,000	6.8%	50,000	2.3%	107,000	4.4%
2000	92,300	4.9%	60,000	1.8%	152,300	3.6%

〈표3-2〉는 民間警備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자체경비원들의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專門 民間警備業體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民間警備분야의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3-3〉은 民間警備産業의 총 매출액(예산)과 경찰의 예산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1980년대부터 民間警備 관련 예산이 경찰의 예산을 앞지르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民間警備産業이 경찰예산을 약 3배이상 앞지를 것으로 추정되어 民間警備産業의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표 3-2〉 民間警備員의 현황 및 전망

연 도	民間警備서비스 및 제조업체 종사자	연평균 성장률	자체경비고용원	연평균 성장률	총民間警備종사자	총연평균 성장률
1980	556,000	N/A	420,000	N/A	69,600	N/A
1990	965,000	6%	528,000	2%	107,000	4%
2000	1,473,300	4%	410,000	-2%	152,3000	2%

〈표 3-3〉 民間警備産業의 규모와 경찰예산의 비교와 전망

(단위 : 억 달러)

연도	民間警備	경찰	총 예산
1970	35	60	95
1980	200	140	340
1990	520	300	820
2000	1030	440	1470

앞서 언급한 대로 Hallcrest 보고서는 民間警備의 업무를 자체경비업 등 9가지로 대별하고 있는데 첫째, 자체경비업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시설보호나 재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경비기능 부서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둘째, 경호 및 순찰서비스는 가장 일반적 형태의 民間警備 분야이다.

셋째, 경보서비스업은 기계경비의 일환으로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분야로 경보기의 판매자, 설치(기술)자, 통제또는 감시자, 경보작동시 출동요원 등의 사람들이 종사한다. 미국내 경보서비스업체는 1990년의 13,000개에서 2000년 경에는 24,000개사로 성장할 것으로 보며 매출액도 1990년대

의 45억\$에서 2000년경에는 140억\$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

넷째, 사설탐정업은 법률이나 보험관련 회사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 비밀 마약조사나 도난물품의 유통등의 확인, 민·형사재판의 증거수집 등의 업무를 말한다.

다섯째, 무장운송 서비스는 고액의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등의 품목을 수송하는데 중무장한 차량과 무장경호원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며,

여섯째, 경비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은 출입통제기, 폐쇄회로 TV, 폭발물탐지기, 전자식 물품탐지기, 컴퓨터 보안장치나 전화보안, 경비용 담장, 보안용자물쇠 등 각종 방범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말하며

일곱째, 자물쇠 제조업은 주거용자물쇠를 제조·판매·설치·보수하는 업무와 경보장치나 전자출입 통제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덟째, 경비자문서서비스업에는 기술관련 서비스 및 경비관리, 위기관리, 컴퓨터 보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경비견순찰, 마약검사, 법의학적 분석, 거짓말탐지기조사 등이 민간警備業體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다.⁹⁾

(2) 경찰업무의 민營化 政策

경찰업무의 민영화란 非犯罪的이고 경찰보조적인 성격을 띠는 경찰직무분야를 民間警備에 이관시키는 작업으로 미국경찰은 경찰업무 중 약 20%만이 범죄와 관련된 업무이고, 나머지 80%는 비범죄적·비강제적 업무라는 인식하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지방정부기관이 경찰보조적 성격의 업무를 民間警備業體에게 위탁하고 지출한 금액은 1975년 270억 달러에서 1982년에는 810억 달러, 1988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작업은 급증하는 경찰서비스에의 요구를 경찰력으로 충족시킬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民間警備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民間警備業體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찰보조적 업무는 엄격한 법집행을 요하지 않는 정신장애자, 가출아, 장례행렬의 에스코트, 공공시설의 주차경비, 습득물처리, 재판정의 경비, 연방도서관 경비, 시립병원이나 공항경비, 죄인호송, 병원에 수용된 수형자의 계호(戒護) 등으로 民間警備業體에 이관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Halkrest 보고서는 경찰업무의 민영화 작업

8) Halkrest Report, 1990, p.197.

9) 이백철 외, 민간방범역량강화를 위한 民間警備제도발전방안,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치안논총제11집, 1995, pp. 148-150.

을 ① 소멸된 공공기능의 이행, ② 민간기업에 의한 업무의 청구(請負), ③ 공공안전 서비스의 보완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메사추세츠, 뉴욕, 펜실니아 등이다.

(3) 民間警備員의 법적 지위 등 관련법규

미국의 民間警備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5개 州 이상이 民間警備와 관련한 각종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民間警備員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국적은 미국시민이어야 하고 18세 또는 21세에서 25세까지로 제한하여 모집하며, 모집시 필기시험(17개주)을 거치거나 전과기록을 (29개주)확인하고 있다.

한편 民間警備員의 법적 지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州法에 의해서 체포나 혹은 경찰권이 民間警備員에게 부여되지는 않지만, 州의 위임입법이나 지방 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허가된 경비원에게는 특별한 조건하에서 경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¹⁰⁾ 따라서 특

별한 권한을 갖지 못한 民間警備員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력을 행사할 경우 위법이며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用役人警備業(guard and patrol)에 관한 認許可規程을 두고 있는 주는 37개주인데 이들 주중 31개주가 신청자들의 民間警備분야에서의 근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民間警備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경비업관련법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계경비업분야에 관한 법규의 강화로 훈련과 교육에 대한 강조, 면허증제도 실시, 인허가의 기준강화 등으로 경비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다는 점이다.¹¹⁾

(3) 경찰과의 상호관계

미국의 民間警備와 경찰은 초기에는 상호 인식의 부족, 정보교환의 부재, 경쟁의식 및 상호역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업무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상호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이 활발해져 현재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그러나 경찰관이 民間警備業體에서 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 경찰제복이나 차량, 권총 등의 公用武器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

10) 이윤근, 民間警備론, 공안행정연구소, 1996. p. 121.

11) 이백철 외, 전계서, p. 153.

공예산으로 지급된 경찰장비를 특정시민(고객)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2. 일본 民間警備産業의 실태 및 전망

(1) 民間警備産業의 실태

일본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民間警備회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2년으로 비교적 출발은 늦었으나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의 오사카엑스포를 계기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아래<표3-4>는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수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도입시기에 비해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안전서비스는<표3-5>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 공항, 초고층 빌딩 등 각종 시설의 시설경비, 공사현장 등의 교통유도경비, 각종 이벤트 등에서의 혼잡 경비, 현금 및 핵연료물질 등의 수송경비, 개인의 보디가드와 같은 경호 업무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각종 전자기술 및 통신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기계경비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출입통제시스템이나 주차장 무인감시시스템, 차량소재추적시스템 등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 3-4> 경비업체와 경비원 현황

연도	1972	1982	1990	1991	1992	1993
경비업자체	775	3,546	5,633	6,045	6,578	7,062
경비원	41,146	133,946	246,970	270,041	291,320	321,721

<표 3-5> 일본의 경비업종별 경비업체 및 경비원수 현황(1993년도 기준)

		경비업자수	구성비(%)	경비원수	구성비(%)
총 수		7,062	100	321,721	100
시설	상주	3,769	53.4	169,869	52.8
	순회	723	10.2		
	기계	682	9.7		
교통유도		3,396	48.1	122,777	38.2
귀중 품운 반	현금운송	281	4.0	1,2307	3.8
	핵연료운반	17	0.2	491	0.2
	기타	73	1.0	1,276	0.4
경 호		41	0.6	262	0.1

(2) 民間警備員의 法的 地位 등 관련법규

일본의 경비업법은 民間警備에 관하여 제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일본의 民間警備員의 법적 지위는 私人으로서의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즉 형사소송법상 “현재 범행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인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民間警備員의 현행범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도 私人と 같은 지위에서 보장된다. 따라서 民間警備員의 법 집행 권한은 私人の 재산관리권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私인과 동일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표3-6〉은 民間警備員의 법적 지위를 도표화 한 것으로 총기류를 비롯한 각종 무기휴대

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호신용구를 제한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니폼은 경찰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양자의 활동영역은 경찰이 행정구역 즉 관할구역단위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民間警備는 고객의 私的영역인 빌딩, 가옥,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경찰과의 상호관계

일본은 1972년에 이미 경비업법을 제정, 民間警備産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생산시설과 각종 행사장의 혼잡경비를 사업주나 행사 주최자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경비원이 경찰권을 행사하거나 범법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경찰의 꾸준한 지도단속으로

〈표 3-6〉 일본의 民間警備員의 법적 지위

구 분	경 찰	민 간 경 비
이 념	공공적 이익	개인적 이익
권 한	심문, 보호, 피난조치, 수색, 무기의 사용,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일반시민과 동일
장 비	유니폼 착용, 무기소지	경찰과 다른 유니폼 착용, 무기소지는 금지 하나 호신용구 제한적으로 허용
임 용	엄격한 기준과 고도의 훈련	부적격자 배제, 단기교육
활 동 수 준	사법적 처리	정당방위,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고객의 권리권 범위내
활 동 영 역	公共영역	私的영역

일본의 民間警備産業은 부족한 경찰행정을 훌륭히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찰도 民間警備産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Ⅳ. 한국의 民間警備産業의 현황과 문제점

1. 民間警備産業의 현황

한국에 民間警備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60년대 초 美8軍 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부터이나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0년대 중반(1976. 12. 31. 법률 제2496호)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民間警備産業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기술과 장비도

관목할 만큼 발전하였다.

특히 지난 1994년 한국경비협회 주관으로 열린 『'94 防犯器機展示會』는 일반시민들에게 民間警備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民間警備業體의 TV광고는 그 효과를 배가시켜 주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수익자부담원칙의식의 확산도 民間警備産業을 발전시킨 요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전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 각종 이벤트 행사, 국제회의 등의 개최도 民間警備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1997년 2월에 최초로 치루어진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으로 약 2,398명의 경비지도사를 배출함으로써 民間警備産業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¹²⁾

다음 <표 4-1>은 한국 民間警備業體 및 경비원 수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 民間警備業體 및 경비원의 현황

연 도	'76	'80	'85	'90	'91	'92	'93	'94	'95	'96
경비원수	5,022	5,632	8,631	25,559	29,000	31,341	37,607	40,223	44,720	69,500
업 체 수	9	18	71	294	320	420	539	690	785	931

자료 : 한국경비협회, 「업무보고 1996」, p. 31.

12) 경비지도사제도는 한국용역경비업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변보호요원, 시설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등의 지도·감독·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지도사라고 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시설 대처요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1976년에 9개 업체에 5,022명이던 경비원수가 1996년에는 931개 업체에 인원도 69,500여 명으로 늘어나 놀랄만한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국가기관, 외국기관, 국영기업체, 산업시설, 금융기관, 언론기관, 학교, 공항, 항만, 빌딩, 백화점상가, 정유 및 석유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상의 성장과는 달리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담보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전체 931개의 용역경비업체 중 180여개 업체만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겸하고 있다. 이 중 2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전문적인 기계경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2. 民間警備産業 발전의 장애요소

(1) 民間警備 외의 유사제도의 중복 시행

한국의 民間警備의 가장 큰 특징은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二元的 運用체제를¹⁴⁾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범죄예방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활동영역에 있어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따라 공공적 또는 준공공적 분야에서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용역경비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적인 분야에서 방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

청원경찰제도는 한국에서 民間警備에 대한 인식이 별로 형성되지 못하고 경찰력이 부족하였을 때 이를 보완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청원경찰법의 제정은 1973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언론사, 방송사, 항공사, 은행, 그리고 방위산업체와 같은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경찰을 대신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용

13)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총 매출액은 1996년 말 기준으로 약 8,800억 정도로 관련 업계

14) ①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할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長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청원경찰법 제2조)을 말하며 1996년 말 현재 약 5,200여개 시설에 3만여 명이 배치되어 있다.

② 용역경비란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용역경비업법 제2조)

1.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선박, 차량,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경비업무는 제외한다.

2.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 화재 등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와 같은 업무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을 용역경비업이라 한다.

역경비에 의한 경비업무의 민영화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民間警備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경찰서비스 수준을 벗어난 특수한 안전이나 보호서비스는 용역경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81년 10월 15일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시행되면서 공

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단지 내 경비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비업무가 이원화 되었다. 이는 용역경비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업무를 두고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용역경비업자간의 분쟁의 빌미가 되었으며, 용역경비업법의 취지를 살려 공동주택관리령의 경비업무를 용역경비업법에 환원하여 주택경비업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표 4-5〉 경찰·청원경찰·용역경비의비교

구 분	경 찰	청 원 경 찰	용 역 경 비
이념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공공이익 우선)	準공익추구(기관장 및 시설주의 요구범위 내)	개인이익보호 (계약의 범위 내)
직무(권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범위 내	근무지 경비구역 내에서만 경찰 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	특별권한 없음 ①정당방위 ②긴급피난 ③자구행위 적용
교육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76시간), 매월 4시간 직무교육	경비협회에서 임용전 10일간 (68시간), 매월4시간 보수교육
신분	국가공무원	민간인(18세-50세)	민간인(18세-55세)
보수	경찰공무원보수규정	경찰청장 매월 1월 중 최저임금고시	고용주 자유
복장 및 장비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 등	청원경찰법 규정	용역경비업법 규정
직무범위	廣域, (公共영역, 중요지점 설정 활동)	지정된 공공영역 (시설주가 요구한 시설 및 지역)	일정한 私的 영역(운송 및 혼잡 경비포함)
무기휴대	무기휴대 가능	근무지역내에서만 무기휴대 가능	무기휴대 불가
손해배상	국가책임 (국가배상법)	시설주책임 (원칙적 민사책임)	용역경비업자책임 (민사책임)

기되고 있다.¹⁵⁾

(2) 교육·훈련의 전문성 부족

용역경비업법은 <표4-5>에서 보는 것처럼 용역경비원의 경우 15시간의 신입교육과 매일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입교육은 경찰교육기관이나 협회 또는 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시행 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용역경비업관계법, 헌법 및 형사법, 시설보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기본훈련 및 호신술등이다.

이와는 달리 청원경찰은 2주 동안 76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학과목은 정신교육, 형사법,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방법, 경범죄처벌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불심검문, 민방공, 화생방, 기본훈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체포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목 구성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이 없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어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어렵고 체계있는 민간警備員으로서의 자질과 덕성함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민간警備전담기구의 부재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한 한국의 민간警備業體는 785개로 엄청난 증

가를 하였으나 경찰청 방법과에서 극히 수수의 인력이 경비업체의 허가 및 지도, 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각 주마다 규제위원회(Regulatory Board)를 두어 민간警備業體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미국과 민간警備관련 중요정책을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민간警備産業에 대한 정책부서의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경찰과 상호지원체제 미흡

민간警備員들에 대하여 경찰관 대부분은 경비원들의 자질이 좋지 않고 경찰에 비해 훈련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警備員들도 경찰이 방법활동의 동반자라는 인식보다는 그들에 예속되어 있다는 열등감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은 타 부처의 각종 주요시설경비,¹⁶⁾ 중요물품에 대한 각종 호송업무(한국은행의 현금수송, 문화부의 문화재 수송, 교육부의 시험지 수송, 내무부의 투표용지 및 투표함 수송 등), 수익성 행사의 혼잡경비(대형공연,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종교행사 경비 등) 등을 민간警備업체에 이관해

15)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 : 대영사, 1998), p. 294.

16)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종합청사, 국회, 외국공관, 공항 등

야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¹⁷⁾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民間警備와 경찰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民間警備는 경찰력과 사회방범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캠퍼스폴리스, 호텔폴리스, 마운틴폴리스, بانک시큐리티, 공원경찰 등의 민간경찰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권을 부여 받고 충실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V 民間警備産業의 발전방안

1. 民間警備체제의 일원화

앞서 설명한 청원경찰제도와 용역경비제도를 통합하는 것을 일원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가 주장하였다.¹⁸⁾

(1) 청원경찰제와 용역경비제의 통합

청원경찰제도는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그동안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으로 民間警備業體가 등

장하여 民間警備를 담당하고 있고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시설주 등이 구태여 행정기관의 감독과 임용승인, 비용부담 등을 수인하는 번거로움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청원경찰과 용역경비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 방안은 청원경찰법으로 일원화하거나 또는 용역경비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방법,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제3의 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경찰청은 지난 1995년 9월부터 청원경찰업무는 경비과에서 용역경비관련 업무는 방법과로 이관시켜 관장케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원경찰의 도입배경이나 시설주 등의 청원경찰사용 기피경향, 民間警備業體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정책근거를 제시하여 일원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전담기구설치

民間警備員의 수가 1996년 말을 기준으로 6만 9천여명에 이르고 업체수도 93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 방법과에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적어도 경찰청 방법국내에 民間警備

17) 한국은행 현금수송업무는 76년 이후 경찰⇒헌병⇒경찰⇒청원경찰⇒경찰·청원경찰합동⇒경찰⇒93년 8월 이후 현재 청원경찰등으로 역할이 바뀌어 왔다.

18) 동국대학교의 이 윤근교수, 인천대학교의 정 진환 교수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의 필요성을 역설한 논문을 수회 발표하였다.

분야만을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가 民間警備의 중요정책에 관여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경찰위원회가 民間警備의 전반적인 규율을 관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으로 승격시켜야 보다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¹⁹⁾

2. 전문 교육기관 및 인력의 확보

우수한 民間警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民間警備員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절한 보수체계, 적절한 선발과정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이 1986년 7월부터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중요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자격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선발된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와 용역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 내용과 시간의 조정은 전

문 民間警備 인력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매월 4시간씩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등도 그 내용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용역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전문기관이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民間警備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다양한 民間警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찰과의 방범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나가려면 수시로 전문교육을 받아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직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民間警備産業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에 民間警備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곳이 약 210개에 이르고 전문경영인을 위한 단기과정이 거의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어 역량 있는 民間警備員을 양성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도 전문대학, 대학 등에 民間警備관련 학과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는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대학에서 民間警備관련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입학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경비원이나 신입경비원들의 교육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19) 정진환, 한국民間警備産業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p. 60.

따라서 대학의 民間警備 관련학과의 설치
는 고급 경비인력의 생산과 사회의 범죄예방
역군으로서 경찰과 보조를 같이 할 새로운 전
문인력의 확보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
다.²⁰⁾

3. 법률 및 제도의 정비

民間警備업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
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임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민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인권침해, 권한의 남용, 용역경비업 이외
의 업무 종사, 비윤리적 기업행위 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률적·제도적인 예
방 및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1) 허가 및 감독의 강화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용
역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와 자격요건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하

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사전적 개선책으로 경비업체를 설립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경비관련 학력과 경력
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고, 사후적으로는 허
가갱신제도를 통하여 허가 후에도 국가가 지
속적으로 허가요건의 구비 또는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경비산업이 육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비지급 기준의 개선

현행법은 용역경비원의 복장과 휴대할 수
있는 장구로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제한하
고, 근무지 성격에 따라 무기휴대허가를 취득
한 경우에 한하여 가스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범활동의 대상이 흉기를
소지할 경우나 침단장비를 이용하여 신변을
위협하거나 안전을 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장구의
지급 -예를 들어 가스분사기나 신속한 연락체
계를 위한 무전기 등의 통신장구-이 검토되어
야 한다.²¹⁾

20) 이윤근, 전계서, p. 369.

21) 미국의 경우 경비업자로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① 경력 및 학력 요건은 고졸이하-10년, 전문대졸 - 8년, 학사학위소지자-5년, 석사학위 소지자- 4년의 경비경력을 각각 요구하고 있으며, 경비경력의 낮은 경비분야 책임자로서의 경력이어야만 한다. ② 직업윤리준수서약 및 전문면허위원회 또는 民間警備업자로서 허가를 가진 자의 보증 ③ 필기시험의 합격 - 필수과목은 비상계획, 수사, 법률상식, 개인경비, 신변보호, 중요정보관리, 경비관리, 재산보호 등과 선택과목이 있다.

22) 미국의 경우 “무기를 소지하는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헌법의 자위권정신에 따라 시민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私人的 소지·휴대를 금하고 있는 州를 제외하고는 경비원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무기사용의 권한은 사인이 갖는 자위권발동의 범위 내로 한정되나 일부 주에서는 私인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치안본부, 전계서, p. 659.)

(3) 손해배상제도의 보완

현재 경비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이행보증보험제도와 공제조합운영제도인데²³⁾ 이 두 제도는 고객에 대한 사후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 경비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장보험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세 경비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民間警備업의 건전한 육성과 방법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民間警備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나 관련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 民間警備産業에 대한 인식의 전환

民間警備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民間警備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民間警備업측과 정부 그리고 경찰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1) 홍보활동의 강화

民間警備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民間警備業의 활동영역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民間警備員의 활동을 소재로 삼을 만큼 국민들에게 가깝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民間警備의 공공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자격검정제도의 도입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비업자에게 방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경비원들의 전문기술과 자격을 검정하는 저격 검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공항보안 및 검색업무, 교통유도업무, 핵연료호송업무, 현금 및 귀중품 운송업무 등과 같은 중요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중요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고 있으며 전체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民間警備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23) 이행보증보험제도는 경비원들의 업무 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고 경비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으로서 고객이 안심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맡기게 하는 효과가 있고, 공제조합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받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적정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5. 경찰과의 상호 협조체제 유지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공동목적으로 하는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民間警備와 경찰의 역할의 명확한 한계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 되어 현재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방범활동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모델로 삼아 상호 책임자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동순찰활동, 비상연락망체제를 갖춰 범죄예방활동 등의 치안수요에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Ⅵ. 맺으며

이상에서 전통적인 公警備 기관인 경찰의 역할을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民間警備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미국에서 1850년대부터 발전된 이 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화와 도시화, 전통적 윤리규범의 상실로 인한 각종 범죄등의 급격한 증가 및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를 보

완하여 공권력을 요하지 않는 경찰업무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이원적인 형태의 民間警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 게임 그리고 1993년의 대전엑스포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관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의 괄목할만한 성장과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제도의 불합리와 국민들의 民間警備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즉, 民間警備産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라 할 수 있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이원화와 자질 있는 용역경비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능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용역경비가 주로 人경비에 의존하고 있어 첨단과학방범장비를 이용한 기계경비분야의 발전이 일천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民間警備産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청원경찰제도와 용역경비제도를 단일화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전담기관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인접학문과 연계하여 이론과 기술을 연구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관련업자에게 안심하고 경비서비

스를 의뢰할 수 있도록 현행 손해보상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로 경비원들의 자격을 검정하는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하여 소정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만 핵연료·현금 운반 및 교통정리 등의 특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民間警備의 방범활동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民間警備員을 아직도 “영화속의 보디가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民間警備産業의 발전을 위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과 국민의 인식전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民間警備업자나 종사자들 각자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4.

이윤근, “한국민間警備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民間警備론,公安행정연구원, 1997.

이백철외, “민간방범역량강화를위한民間警備제도 발전방안”, 치안논총 제11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정진환, “한국민間警備産業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5.

-비교경찰제도, 아카데미아, 1993.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7.

윤창수, “경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民間警備 역할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경찰청, 미국경찰, 1988.

-일본경찰, 1988.

-경찰백서 1995년, 1996년, 1997년

-경찰통계연보 제39호, 40호.

한국용역경비협회, 「용역경비업체 및 경비원 실태 현황」, 1995.

Cunningham, William C. and Van Meter, Clifford W., The Hallcrest Report II :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Boston, MA : Butterworth-Heinemann, 1990.

Arther J. Bilek, Legal Aspects of Private Security. 1981.

Walker, S. The Police In America : An Introduction. ny : McGraw-Hill, Inc. 1992.

Fennely, L.J. "Security Surveys." Handbook of Loss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L.J. Fennely(ed.). Boston : Butterworths. 1989.

테러리즘과 자유민주주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 수 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폭력이 하나의 수단으로 채택될 때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폭력은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성적 또는 비인간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다. 우리는 20세기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러 보았으며 그리고 지구의 전역에 걸쳐 다양한 명분으로 인하여 생성하는 폭력적인 분쟁과 갈등을 보아 왔다. 따라서 우리들은 20세기는 폭력이 공통분모를 이루는 ‘폭력의 세기’라는 Hannah Arendt의 표현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수준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통용되고 있는 수많은 폭력적 수단들 가운데 폭력테러(terror)와 테러리즘(terrorism)은 가장 비인간적이며, ‘인간성 자체에 대한 인간 스스로에 의한 非人間化’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현실화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의 저항

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폭력테러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라는 마키아벨리(Machiavelli)적인 사고는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테러리즘의 개념을 위한 체계적 관념화를 시도하고, 둘째는 테러리즘이란 사회적 현상이 지니고 있는 죄악을 논의하고, 셋째는 그러한 죄악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떠한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I. 테러리즘이란?

비록 오늘날 빈번한 테러행위의 발생과 광범위한 폭력사태의 출현으로 마치 ‘테러리즘의 시대’처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및 테러행위의 개념적 정의와 효율적인 대응책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점들이 합

의된다는 기대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사건이나 비슷한 행위를 두고 관점과 입장에 따라 테러행위로 규정하여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정통성을 가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일반적인 폭력범죄행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¹⁾

체계적인 테러리즘의 개념구성을 위해 몇 가지 시각에 따라서 기존하고 있는 정의와 개념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① 테러리즘이란 두려움을 주입시키기 위한 폭력의 위협, 개별적인 폭력행위, 또는 폭력에 의한 조직적인 운동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은 효과를 노리는 폭력사용이며, 의도하고 있는 효과는 테러분자들에 의한 실제적인 희생자들에게 국한되는 경우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흔히 보다 넓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희생자들은 테러분자들의 동기와 명분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테러

리즘은 테러행위를 주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려움은 테러리즘의 의도한 효과이며 결코 부산물이 아니다.²⁾

② 테러리즘이란 폭력의 실제적 사용 또는 그러한 위협을 수반하여 몰정상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가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불안,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다.³⁾

③ 테러리즘은 공포와 순종의 상태를 유발시키기 위한 명백한 또는 함축적인 폭력의 사용과 사용협박을 의미한다. 테러리즘의 목적은 의도된 희생자의 행동에 수정이나 변화를 부과하거나 또는 희생대상자보다 더 많고 광범위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이용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의 폭력은, 실제로 표출되거나 단지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강제의 궁극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⁴⁾

④ 테러리즘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목

1)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Michael S. Stohl, ed., *The Politics of Terrorism*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88); Paul Wilkinson,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New York: Macmillan, 1977); Walter Laqueur, *Terrorism* (Boston: Little Brown, 1977); Walter Laqueur and Yonah Alexander, eds. *The Terrorism Reader: A Historical Anthology* (New York: Penguin, 1987); Paul Gilbert, *Terrorism, Security & Nationality: An Intorductory Study in Applied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1994); Andrian Guelke, *The Age of Terrorism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임희섭 역, Frederick J. Hacker 저,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중앙신서 16 (서울: 중앙일보사, 1979); 안동립 역, 「테러 네트워크: 국제테러리즘의 비밀조직」, Frederick J. Hacker 저, *The Terror Network* (서울: 현암사, 1982); 구광모, 「테러와 국제사회」 (서울: 고려원, 1982) 등을 참고.

2) Brian Jenkins, "International Terrorism: A New Mode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World Security*, eds. by D. Carlton and C. Schaerf (London: Croom Helm, 1975), p. 12.

3) Thomas P. Thornton, "Terror As a Weapon of Political Agitation," in *Internal War*, ed. by Harry Eckstein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p. 73.

4) Saleem Qureshi, "Political Violence in the South Asian Subcontinent," in *International Terrorism: National, Regional and Grobal Perspectives*, ed. by Yonah Alexander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6), p. 151.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집단에 작용하는 일정한 폭력의 사용을 통한 하나의 전략을 의미한다.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집단에게 그 어떤 효과를 낳게 한다. 테러리즘에 있어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은 폭력만이 세계를 보다 낳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정치사상이다. 폭력이 그 중심개념이 되며 동시에 실천개념이 되는 것이다.⁵⁾

⑤ 테러리즘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불안·초조를 조성하는 몰정상적인 폭력의 실제적 사용 또는 위협을 지칭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하고 있는 정치(또는 정부)權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또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인 희생자 보다 더 광범위한 함축적인 목표집단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⁶⁾

이상과 같은 여러 주장과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테러리즘은 결코 무목적적이고 무심한 것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수단이다. 테러의 연속과정으로서 테러리즘은 ① 폭력의 실제적 사용 또는

그러한 사용협박, ② 직접적인 희생자들과 광범위한 간접적인 희생자들의 정서적·심리적 반응, ③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생성하는 사회적 효과와 사회에 잔류하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테러리즘의 기본적인 정의는 “테러 대상의 물리적 패배보다는 정치적 태도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음모 또는 모반집단에 의한 이단적인 폭력의 체계적 사용”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게 된다. 정치적 힘을 획득하려는 투쟁으로, 폭력테러의 의도는 구체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상징적이며, 고의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띠운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불안감의 상승으로 정치적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⁷⁾

현대 테러리즘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의사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석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의 하나가 바로 인정과 주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Brian Jenkins는 ‘테러리즘 무대(terrorism-as-theatre)’라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테러리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경청하기를 바라지만, 많

5) 李基澤, 「한반도의 政治와 軍事: 理論과 實際」 (서울: 가남사, 1984), pp. 532-533.

6) Edward F. Mickdus, “An Event Data Base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Terrorism,” in *Quantitative Approaches to Political Intelligence: The CIA Experience*, ed. by Richard Heuer, Jr. (Boulder: Westview Press, 1978), pp. 127-128과 “Transnational Terrorism”, in *The Politics of Terrorism*, ed. by Michael Stohl, p. 148 참조.

7) Martha Crenshaw, “Introduction: Reflections on the Effects of Terrorism,” in *Terrorism, Legitimacy, and Power: The Consequences of Political Violence*, ed. by Martha Crenshaw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3), pp. 2-3.

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한다.⁸⁾

실제로 테러리즘은 눈에 띄는 잔인한 폭력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테러리즘은 군사적 이유에서보다 심리적 이유에서 존재하는 폭력적인 행위이다. Paul Wilkinson은 테러리즘을 두려움을 현실화하고 기존하는 정권이나 테러 목표물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비정규적 心理戰’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면, 테러리즘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⁹⁾ 테러리즘은 폭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전으로서도 정의되어야 한다. 양자는 함께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선전과 폭력은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宣傳의 일부인 것이다.”¹⁰⁾

일부 테러리즘 학자들은 테러리즘의 폭력적 측면보다 의사전달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근대 테러리즘에서 ‘모범적 행동’, ‘영웅적 행위’, ‘행동에 의한 선전’, 등과 같은 용어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대중과의 의사전달을 위해 도구로 고안된 것이다. 상징적 행위

로서, 테러리즘은 다른 의사소통의 도구와 같이 ① 의사전달자 (테러리스트), ② 의도된 의사수령자 (테러의 대상), ③ 의사 내용 (테러 폭력의 유형), ④ 반응 및 환류 (테러행위의 사회적 후유증) 등 4가지 구성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¹¹⁾

테러리즘에 대한 다양한 관념화와 논의들을 검토하여, 본 논문은 테러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테러리즘이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폭력과 위협을 몰정상적인 방법·수단·과정에 의해서 사용하여, 인간심리의 공포 및 두려움과 불안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의 행동·태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도하는 상징적 행위로서, 직접적인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더 포괄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를 목표로 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전개되는 행위를 지칭한다.¹²⁾

테러리즘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용이하게 테러리즘은 「위로 부터의 테러」와 「아래로 부터의 테러」로 구분할 수

8) Jenkins, op. cit., p. 15.

9) Wilkinson, op. cit., p. 110.

10) Francis M. Watson, *Political Terrorism: The Threat and the Response* (Washington, D.C.: Robert B. Luce Co., 1976), p. 15와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 341 참조.

11) Philip A. Karber, "Urban Terrorism: Baseline Data and a Conceptual Framework,"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52 (December, 1971), pp. 527-533.

12) 본 논문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에서 ‘몰정상적’이란 ‘정상적·비정상적’의 양분화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의미한다.

있다.¹³⁾ 전자는 정치권력의 작동으로 국가가 하부체제나 구조에 대하여 강제적·폭력적 수단을 발동시키는 국가테러리즘(state terrorism)을 의미하며, 후자는 그와 반대 현상인 하부체제가 정치권력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 부터의 테러는 권력을 행사하는 측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저항을 탄압하는 것이므로 「집행적 테러(enforcement terror)」이며 아래로 부터의 테러는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파괴하면서 정치권력을 대상으로 전개되므로 「선동적 테러(agitational terror)」라고 볼 수 있다.¹⁴⁾ 본 논문의 주된 관심대상은 「아래로 부터의 테러」로서 「선동적 테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테러리즘이다.

II. 테러리즘의 7大罪惡

현대사회에서 테러리즘은 ① 행위의 성격에서 계획적·고의적이면서 냉혈적 잔인성을 띠우는 폭력을 예찬하며, ② 인간의 도덕적 본능을 고의로 탄압하여 와해시키며, ③ 인간들에 의한 공동구성체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정상적인 수단으로서의 정치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④ 폭정을 초래하므로 필연적

으로 전체주의를 확산시키며, ⑤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몰락시키며, ⑥ 인간의 자유를 착취하며 악용하고 있으며, ⑦ 문명사회의 기반과 의지를 약화시켜 인류문명의 混亂을惹起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리즘의 7大罪惡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입장이 아닌 현대사회 및 인간성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비인간적 폭력의 찬양

현대 테러리즘의 첫 번째 죄악은 테러리즘이 많은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에 대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폭력 그 자체를 찬양하는 측면에서, 사회적·도덕적 정당화를 부르짖는데 있다. 현대에 있어서 테러리스트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必要惡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행동의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물결에는 뚜렷한 사상적 배경을 볼 수 있다. 테러이론(terror theory)은 레닌(Lenin)주의자와 트로츠키(Trotsky)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에 대한

13) 임희섭 역, 「앞의 책」, pp. 10-17. 테러리즘의 類型에 대해 朱秀基, “테러와 테러리즘의 體系的 概念化,” 「論文集」(檀國大學校, 1987), p. 13과 楊在仁, “解放政局에 있어서의 政治테러: 宋鎮禹, 張德秀, 金九事件을 中心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2호 (1986), p. 171,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박영사, 1997), pp. 433-438 참조.

14) Thornton, *op. cit.*, p. 72. 이와 유사한 Regime of Terror와 Siege of Terror의 구분·설명을 위해 W. F. May, “Terrorism as Strategy and Ecstasy,” *Social Research*, Vol. 14 (1974), pp. 277-298 참고.

변명논리에서 뿐만 아니라, Nietzsche로부터 Heidegger에 걸쳐서 영향을 받아서 Sartre와 그의 동조자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폭력철학의 논리'에서 유래하고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Sartre 보다 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없을 것이며, Sartre 보다 더 좌익진영에게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을 제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Fanon이 저술하여 Sartre로부터 서문을 부여받은 「대지 위의 저주받은 자」는 폭력의 정당화 과정과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저술보다도 큰 영향을 주었다.¹⁵⁾ 서문에서 Sartre는, “흑인에게 있어서 백인을 살해한다는 것은 一石二鳥의 效果가 있어서, 억압자라는 인간(즉 植民者로서 백인의 존재)과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인간(즉 被植民者로서 자신의 존재)을 동시에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폭력은 해방 그 자체로 투영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폭력논리는 ‘식민자→피식민자’의 관계 설정을 몰락시키고 나아가서 억압받던 인간을 자주적인 인간으로 환원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생성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만이 억압받는 인간을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고이다.

바로 이러한 사고체계가 폭력을 긍정적이

고 생산적인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며, 테러리스트들이 끔찍한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같이 테러행위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폭력수단이 가장 효율적이며 정당한 수단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폭력은 테러리즘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가 되며, 폭력지상주의의 색채가 테러리즘에는 더욱 짙게 나타난다.

2. 도덕적 본능의 탄압

두 번째 죄악은 테러리즘이 인간의 도덕적 본능을 고의로 탄압한다는 점이다. 테러집단들은 그들의 조직구성원들에게 인명살해를 위한 정당화 구실을 주입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상적 인간의 직각과 사고가 체계적으로 무디어지지 않으면 테러리즘의 궤변적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1870-80년대의 러시아에서 활약했던 「인민의 의지」라는 의미를 지닌 *Narodnaya Volya* (Peoples' Will) 테러집단은 소위 ‘동기없는 테러’를 옹호하였으며 이에 의한 인명살해는 ‘진보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Narodnaya Volya*는 ‘중심부 강타(blow at the centre)’라는 논리로 주요 정치

15)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5); David Cauter, *Frantz Fan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0), p. 88; 최종섭 역, 김종철, 레나테 자하르 저, 「프란츠파농 研究: 파농 이데올로기의 批判」(서울: 도서출판 한마당, 1984), pp. 43-51 참조.

적 인물에 대한 암살을 테러전략으로 적용하였으며, 대표적인 테러가 「Alexander 2세 암살(1881. 3)」 사건이다.¹⁷⁾

일단 무분별한 테러가 성행하게 되면 인간 집단은 도덕적 와해와 후유증을 겪게 된다. 실제로 모든 도덕적 기준의 가치체계에 대한 자포자기가 테러리스트들의 훈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폭력집단은 오직 공포 내지는 두려움과 도덕성의 결핍으로만 응집될 수 있다는 점은 Dostoevski의 「악령(The Possessed)」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다. 4명의 폭력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5번째의 구성원을 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밀고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며, 그렇게 하면 전체 집단을 즉각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통일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체 구성원들을 마치 노예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교는 남녀를 불문하고, 테러리스트들이란 인성에 대한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가정에 입각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테러집단들에 의해서 전체 인간성에 대한 도전으로 일

부 인간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조작·악용하고 있다. 1940년대 한 테러지휘자는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의 행동에 의해 그가 역사의 행로를 바꾼다’는 철저한 믿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 저술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믿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테러이론이며, 테러이론은 인간의 도덕적 본능을 철저하게 탄압시킨다는 전제조건을 지닌다. 따라서 Hacker는 테러리즘을 ‘인간정신에 대한 강간’이라고 규탄하고 있다.¹⁹⁾

3. 정치과정의 거부

세 번째 죄악은 테러리즘이 인간들에 의한 공동구성체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정상적 수단으로써 정치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대정치에서는 “사회를 여러 집단의 다원적 이익의 경합상황의 복합체로 보는 사회관에 입각하여 정치과정을 여러 정치적 집단 사이의 경합 내지 균형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과정이란 政治權力과 社會意思의 媒介, 환언하면 社會意思의 政治化를 의

16) Feliks Gross, "Political Violence and Terror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Russia and Eastern Europe," in *Assassination and Political Violence*, eds. by James F. Kirkham, Sheldon G. Levy and William J. Crotty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 421-476 참조.

17) Zeev Ivianski, "The Blow at the Centre: The Concept and Its History," in *On Terrorism and Combating Terrorism*, ed. by Ariel Merari (Frederich,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5), pp. 53-62.

18) E. Hyams, *Terrorists and Terrorism*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p. 143에서 재인용.

19) 임희섭 역, 「앞의 책」, pp. 136-138.

미한다.²⁰⁾ 따라서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조화되고 동시에 갈등이 해소되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상충되는 주장과 이념 및 정치적 입장들이 대립과 충돌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과정을 인정하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란 야만주의(barbarianism)에서 벗어나고 인간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정치가 존재하면 폭력은 개화된 인간에게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분자들은 그 사회의 정치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여러 테러단체들을 비롯하여 독일 바더-마인호프단, 일본 적군파, 아일랜드 공화군, 이태리 붉은 여단 등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보인 적이 전혀 없다. 폭력이란 다른 모든 수단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라는 관념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초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폭력은 최악의 궁지를 모면하는 정치적 무기와 수단이 아니라, 전체 정치과정에 優先하는 성격을 지닌다.

테러리즘은 광범위한 무질서를 야기시키고, 사회규범을 붕괴시키고, 기존 사회질서와 과

정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사회의 일반대중들을 현존하는 권위체계와 정규적인 정치과정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조종하는 것이며, 이는 '隔離의 過程(process of disorient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존 권위체계와 정치과정에 대한 현실적 지지가 낮고, 격리의 과정에 대한 지지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생산적이지만,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반생산적(counter productive)인 것이다.²¹⁾

4. 전체주의의 확산

테러리즘은 정치적 투쟁에서 중립적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없다. 테러의 성행은 우선적으로 무정부 상태보다는 暴政의 등장을 초래할 경우가 더욱 흔하다. 이처럼 네 번째 최악으로는 테러리즘이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들이 확산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리즘의 독특한 측면은 테러행위 그 자체로서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테러행위에 대한 반응 속에서도 목적을 이룬다는 점이다. 테러에 대한 과도하고 지나친 과잉반응을 유발케 함으로써, 기존 권위의 입장과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안정과 총화를 균열시키

20) 이극찬, 「정치학」 제5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3), p. 365; 이동희, 「정치학원론」 (서울: 일신사, 1988), p. 125.

21) Thornton, op. cit., p. 74-75.

며, 취약한 정부는 분쇄시키고 강력한 정부는 취약화시키려고 한다.²²⁾ 테러리즘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대응 테러리즘(counter-terrorism)」, 政治權威에 의한 탄압 또는 보복 등을 유인하여 국가들이 전체주의 성격을 띠우게 만들면서 정상적 민주주의 정치과정이 부분적으로나마 말살되게 만들고자 한다.

동시에 국가정책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피신처, 훈련장소, 활동기지, 자금 및 무기 그리고 외교적 옹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테러리즘의 하부구조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국가들은 예외없이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우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정부는 거의 모두가 군대 또는 「비밀」경찰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테러리즘이 사회내에서 억압세력에 대한 반항이라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이며, 국제 테러리즘과 여러 테러집단의 활동은 전체주의 국가 또는 경찰국가로부터 폭넓은 지원과 계속적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²³⁾

5. 민주주의의 몰락

테러리즘은 비민주적 국가 또는 독재적 성격의 정부에게는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다.

비민주적 국가나 정부는 항상 불법적 인신구속과 인명살해, 구속자·구금자와 혐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탄압,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보도관제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방위하고 있다. 그들은 법의 지배 또는 인간성이나 도덕적 윤리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죄악으로 테러리즘은 민주주의를 파괴·몰락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테러리즘의 결과는 항상 발전과 법치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彈壓과 暴政의 惡夢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테러리즘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를 크게 위협한다.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명분과 구실에 비판적 언론인들을 살해 또는 유괴하면서 다른 언론인들을 위협하여 언론이 민주주의의 지침목으로서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기 보다 역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동시에 테러리스트들은 현대 사회에서 대량정보전달체제의 사회적 효과와 유용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어 언론매개체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행위와 명분을 널리 선전하는데 이용하려고 한다.²⁴⁾

또한 테러리즘은 기존 민주정부의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순종함에서 오는 혜택을 말할

22) David Fromkin, "The Strategy of Terrorism," *Foreign Affairs*, Vol. 53, No. 4 (July, 1975), p. 692.

23) Ray S. Cline and Yonah Alexander, *Terrorism: The Soviet Connection* (New York: Crane, Russak & Co., 1984), p. 9.

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미 실패했다는 사고를 갖게끔 하고자 노력한다. 기존 민주적 법치주의는 무능하여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테러리즘의 對象으로 희생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유추되는 분위기와 사회적 分列속에서 민주주의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상호 분리·대립되는 심각한 현실을 유도하려고 한다.

6. 인간자유 의 착취적 악용

지금까지의 테러리즘에 대한 고찰로부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일반화될 수 있다. 테러리즘의 궁극적 토대는 전체주의적 내지는 독재주의적 세계와 사상체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직 민주적 사회내에서와 진보적 문명의 풍부한 인간 자유내에서만 테러리즘이 성행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의 여섯 번째 죄악은 진보적 사회와 국가의 인간자유 체계를 착취하면서 악용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리즘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개화된 사회는 요청되는 필요조처와

대비를 준비함으로써 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절차와 준비과정은 그 사회를 문명사회로 규정지어 주는 자유의 폭과 수준 또는 자유시민으로서의 인간적 존엄성 등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이 테러리즘은 사회의 개방성을 저해하여 폐쇄성을 증가시키며, 인간사회의 평화로운 지속을 단절시켜서 인간자유 체계속에서 인간자유 그 자체를 파괴하는 '殺母蛇'와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

나아가서 테러리즘은 제한받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신문이나 텔레비존의 자유를 잠식하며, 「비밀」경찰이나 정보수집기관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의 주체들을 지나치게 강화시킴으로써 해서 자유스러운 사회의 방어적 장치에 직접적이고 지속적 위협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테러리즘은 대량정보 전달체제를 악용하면서 인간의 관심과 사회적 주목을 끌기 위해 극적 성격(dramatic and news-making nature)을 띠우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1993년 리비아의 Qaddafi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리즘」들은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인식된 不義(injustice)로부터 기인한다. 미국에 대한 테러리즘 행위가 해결책이며, 그러한 행위들은 전세계에 걸쳐서 'TV를 위해 보다 폭력적

24) Paul Wilkinson, "Terrorism, the Mass Media and Democracy," *Contemporary*, Vol. 239, No. 1386 (July, 1981), pp. 35-44; Melvin F. Lasky, "Terrorism & the Press," *Encounter*, Vol. LX, No. 4 (April, 1983), pp. 90-91; Herb Greer, "Terrorism & the Media: Myths, Illusions, Abstractions," *Encounter*, Vol. LIX, No. 2 (August, 1982), pp. 67-74 참조.

장관'을 이룰 것이다"라고 경고했었다.²⁵⁾

7. 인류문명의 혼란

자유세계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간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자유세계 그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 지나치게 권위적 조치를 회피하고자 하여 테러집단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사회들은 결과적으로 문명사회의 초석인 법치주의, 인간성의 고수, 도덕적 윤리성 등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활동이 「탄압을 수반하는 권위적 반응」을 유발시킬 때 일시적으로 성공하며, 사회 또는 정부로부터 「유화적 양보」를 받아 낼 때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하게 된다.

일곱 번째 최악은, 인류문명이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이는 반응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하여, 테러리즘이 문명사회의 자신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오늘날 여러 정부들이 테러집단들과 협상하여 요구사항을 수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불된 인질의 몸값은 테러활동의 자금이 되며, 다음

인질테러사건의 발생을 위한 기반이 된다. 그리고 석방된 테러분자들은 테러단체의 조직과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다른 구속된 테러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테러사건의 유발에 일조한다.

실제로 초국적 테러리즘중에서 납치·유괴 사건(kidnappings)의 61.4%와 공중납치 사건(aerial hijackings)의 65.1%가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요구하거나, 몸값(ransom)의 금전적 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합하는 요구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²⁶⁾ 나아가서 언론매체를 통한 테러리스트들의 주장에 대한 선전과 홍보는 인류문명의 기본 질서에 커다란 혼란을 부가한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은 자유스런 사회의 구성과 문명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해서 인류문명을 자살적 혼란의 길로 유인되게 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흔히 '가장 퇴화된 인간 언어의 형태'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테러리스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주장되어도, 그들의 행위는 항상 범죄적이고 항상 파괴적이어서 인류를 무법과 혼돈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하며, 인류 평화와 진보라는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고 있다.²⁷⁾

25)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464에서 재인용.

26) Mickdus, *op. cit.*, p. 143.

III.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나, 법의 지배와 통치라는 틀 속에서 분명히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생명과 자유의 존엄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서 인간들을 하나의 도구인 소모품으로 간주한다.

테러리즘과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상충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들의 운용방법과 전술적 목표에 대한 이해와 테러리즘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으로 파괴하느냐에 대한 이해이다. 본 논문은 테러리즘에 의해서 저해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기본 조건들을 검토한다.

1. 민주주의에 대한 윤리적 신념

어떠한 민주주의도 구성원 대다수에 의한 기본 원칙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인간 개인들이 서로

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그러한 권리들을 성공리에 보호할 때에만 기능할 수 있다. 만약 대다수의 인간들이 민주주의적인 가치·제도·과정에 반대하는 집단을 지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협에 봉착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전체주의적 조직과 집단에 대한 대중 지지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서 극좌 또는 극우 전체주의 정부들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간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침해하고, 두려움과 붕괴 징후를 유포하여 민주적 정부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킨다. 테러리즘은 극소수의 인간들에 의한 행동으로서 민주주의적 다수를 폭력과 파괴의 위협으로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이다. 레닌이 지적하는 것처럼 테러리즘의 목표는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공포속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인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윤리적 신념을 약화시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은 민주주의라는 몸체에 기생하는 癩의 존재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감을 조성하려 한다.

2. 법의 통치와 지배

독립된 사법기능과 입법기능은 법 '아래'

27) 안동립 역, 「앞의 책」, pp. 342-343.

28) William Nester, *International Relation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onflict and Cooperation*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5), p. 277에서 재인용.

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민주주의에서 법의 개념과 과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의 존재가 법 '위'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들은 그들의 명분과 구실이 법이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한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아무런 외부적 내지는 상황적 제한을 받지 않고, 테러를 결정·집행한다. 테러리즘은 일반적으로 '혁명적正義'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나, 전체 테러전략의 수행과정은, 테러폭력이 사회 전체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목적으로 하기에, 법과 양립할 수 없다. 마치 전쟁에서 비인간적인 잔학행위를 저지른 자를 '戰爭犯'이라고 지칭하듯이, 혁명이라는 구실과 명분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들은 '革命犯'이며 동시에 '暴力犯'인 것이다.²⁹⁾ 따라서 법의 절차와 심판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면서도 효과적인 테러리즘 억제정책은 가능한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체포·심판·투옥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어떠한 이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한 행위의 違法的 수단과 결과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테러리즘이 아무리 사악하고 극렬할지라도 자유민주

주의는 테러리즘에 대한 복수 내지는 보복 욕망을 자제해야 하며, 철저한 法治에 의해서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가해야 한다. 만약에 테러리즘이 자유민주주의에서 法治를 정지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통치와 지배'는 공권력에 의한 탄압인 국가테러리즘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는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 된다. 정치권력과 기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것은 부도덕적(immoral)이며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인 것이다.

3. 자유스러운 언론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표현과 출판의 자유로 인하여 다양하고 상반되는 정치사상, 정치철학, 정책 등이 알려지고 평가받게 된다. 자유스러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과 정당에게 중요한 봉사, 민주적 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회교육 제공,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의 공급, 여론의 형성과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스러운 언론이 민주주의의 민감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적 자각을 봉기시키며, 민주적 개혁의 지속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이다.

29) Wilkinson, *op. cit.*, pp. 36-37.

테러리즘으로 인한 자유스러운 언론의 저해는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³⁰⁾ 첫째는 테러리즘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살해·납치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는 방법이며, 이의 사회적 표출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테러리즘이 자유스러운 언론을 착취하는 방법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항상 언론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론, 명분 또는 구실을 널리 전파시키고자 한다. 특히 '혁명의 선구자들은 「언어가 아닌」 직접적 행동을 통해서 혁명에 대해 말한다'는 논리로 '행동에 의한 선전(propaganda of the deed)'을 최대한으로 공표하려고 한다. 테러리즘은 물론 조직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여 선전효과를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동조자들에 대한 교육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테러리스트들은 사회적 선전효과를 위해서는 언론을 이용(내지는 악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TV의 효과는 그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선전의 확실한 매개체인 것이다. "테러리즘은 TV가 없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며, TV는 가장 극적이고 인기있는 대상을 상실한다"라는 표현과 "만일에 테러리즘이 발생한 후 유발된 테러리즘에

대한 대중전달만 차단할 수 있다면, 모든 테러리즘 발생의 75%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란 지적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입증하고 있다.³¹⁾ 특히 TV는 인간의 눈과 귀를 독점하는 일방적(쌍방적이 아닌) 의사소통이라서 어떠한 토론의 절차도 개입하지 못하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아무도 TV와 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민주적 집단이 집권한다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분명히 언론통제일 것이다. 만약 테러리즘이 성공하여 집권하게 된다면, 누구도 테러리스트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여 자기들의 선전에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 능력

오늘날 민주주의의 안전보장에는 두 가지 위협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군사전쟁을 통한 침략이다. 이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과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테러리즘과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내부 혼란 및 內戰이라고 할

30) Brigitte L. Nacos, *Terrorism & the Med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와 Yonah Alexander & Richard Latter, eds, *Terrorism & the Media* (New York: Brassey's, Inc., 1990) 참조.

31) Yonah Alexander, "Terrorism, the Media and the Polic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 1 (Spring/Summer, 1978), pp. 101-114; Frederick J. Hacker의 주장으로 R. H. Kupperman and Darell M. Trent, *Terrorism*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9), p. 42에서 재인용.

수 있다. 低強度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하는 테러리즘과 같은 현상들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가 외적 위협이라면, 두 번째는 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비용·효과의 계산에서 유리하고 행동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술로 지속되고 있다. “테러리즘은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폭력사용의 형태이다” 또는 “테러리즘은 도발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대처(예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비정규전의 형태를 띠운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³²⁾ “테러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 되었으며, 보다 값이 싸고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위력에 있어서 전쟁에 뒤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처럼 테러리즘은 저강도 갈등의 정치분쟁 형태로서 개방사회인 문명국에 있어서 사회혼란을 조장시킬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 된다.³³⁾ ‘저강도 갈등(low-intensity conflict)’이란 무제한적이며 총력적인 무력의 적용이 계획적으로 자제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군사전쟁에 미치지 않는 투쟁을 의미한다.³⁴⁾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방에게 가능

한 큰 피해를 주려는 무력충돌의 한 형태이다. 저강도 갈등은 결코 적은 사상자와 작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저강도 갈등에서 사상자와 파괴의 수준이 전쟁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5.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제적 능력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정치적인 면과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성취해야 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양체제의 혼합체로 이해된다. 테러리즘의 논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고질적인 테러리즘으로 인하여 입는 경제적 능력에서의 손실은 경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와의 경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경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지속적 테러와 위협, 산업시설의 파괴, 경제활동 인구에 유발시키는 두려움과 공포 등은 경제활동 인구의 사기를 격하시키게 된다. 테러리즘은 경제의 低生産性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게다가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과 법을

32) Cline and Alexander, *Terrorism: The Soviet Connection*, p. 3; John Collins, “Definitional Aspects,” in *Political Terrorism and Energy*, eds. by Yonah Alexander and Charles Ebinger (New York: Praeger Publishers, Inc., 1982), p. 11.

33) 안동립 역, 「앞의 책」, p. 9에서 재인용.

34) Michael T. Klare, “Low Intensity Conflict,” *Christianity and Crisis*, Vol. 48 (1988), pp. 11-14.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가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정치적·군사적 경쟁에 비하여 경제적 경쟁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감안되어야 한다. 흔히 국가들은 銃聲없는 그러나 뜨거운 경제 전쟁에 돌입해 있다고 서술된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테러리즘으로부터 시련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테러리즘은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외 안보를 위해서 충분하지 못한 자원들을 소모시키므로 다른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의 국가발전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이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체제인 전체주의에서 테러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위로부터의 테러'는 존재하지만, '아래로부터의 테러'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능하며, 體制 자체를 몰락시키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IV. 맺는 말

Malraux의 지적처럼 테러리스트들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집행하고 있어서, 테러리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목표가 되어 "당신도 테러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귀납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³⁵⁾

현대 테러리즘이 인류문명의 敵으로 인간성의 말살 기도이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하게 테러리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치적·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테러리즘 행위에 대하여 공통적 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³⁶⁾ 현실세계에서 테러리즘의 연속적인 발생이 국제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UN 토의에서는 테러리즘의 원인에 대한 문제와 민족자결주의 및 민족해방전쟁의 문제가 혼동되어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는 자주 반복되었다.³⁷⁾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볼 때, 테러리즘을 불법화하고 규탄하면서 집단적 대응책(counter-measures)을 강구한다는 것은 법률적이고 규범적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적 문제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35) Brian Crozier, *The Rebels: A Study of Post-War Insurrections* (London: Chatto & Windus, Ltd., 1960), p. 159와 구광모, 「앞의 책」, pp. 20-21에서 재인용.

36) Meir Rosenne, "Terrorism: Who is Responsible? What Can be Done?," *World Affairs*, Vol. 148, No. 3 (Winter, 1985-86), pp. 169-172.

37) Abraham D. Sofaer, "Terrorism and Law," *Foreign Affairs*, Vol. 64, No. 5 (Summer, 1986), pp. 901-922. 특히 UN 토의에서 상반된 입장과 주장의 대립에 대해서 pp. 903-906 참조.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비난의 수준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테러 자행에 대한 보복이나 책임 추궁이 강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테러리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例로서, 미국은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리비아(Libya)를 '테러 국가'로 지정하고 경제제재(1986. 1)에 추가하여 테러지원 시설들을 공중폭격(1986. 4)하는 대테러 강경책을 실천했다. 현실적으로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빈도는 1984-88년기간 년평균 760회를 능가하다가 1991-96년기간 년평균 403회로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⁸⁾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동서 정치적 냉전체제가 몰락되면서 강대국들이 테러리즘에 대한 비난적인 공통분모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국제테러리즘은 더 이상 양대 정치이념의 대립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³⁹⁾

테러리즘은 분명하게 현실세계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문제는 존재 그 자체를 제거하는 궁극적 노력에 앞서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관리·대처문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테러리즘이 지니는 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테러리즘은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 그 위협은 통제·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기생할 수 있다. 만약에 테러리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불해야 하는 하나의 對價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개방 민주, 정의 등과 같은 거대하고도 중요한 가치체계를 위하여 작은 對價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들의 가장 퇴화된 言語'인 테러리즘은 인류문명(human civilization)의 지속과 인간성(humanity)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규탄되고 규제되어야 할 인류 공통의 과제인 것이다.

38)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Terroristic Incidents, 1968-1992," *Dispatch* (May 18, 1992), p. 392; 김순규, 「앞의 책」, p. 439;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1996, p. 1.

39) Nikki R. Keddi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Middle East," in *The End of Col War: Its Meaning and Implications*, ed. by Michael J. Hog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157.

Terrorism and the Liberal Democracy

< Dankook University > Soo-Ki Cho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nature of modern terrorism and its social political impacts. Terrorism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forms of violence, agitation, intimidation, and coercion by virtue of its extreme and ruthlessly destructive methods in highly inhumane modes. Thus, we need to understand that terrorism is a means to an end--not an end in itself. The conceptual notion of terrorism may be defined in the following manner:

Terrorism is the actual use, threat of use, of extra-normal form of violence by an individual or a group (including the state) for the sake of political purpose, whether acting for or against to the established authority, when such action is designed to create extreme anxiety and fear--including effects in a target group larger than the immediate victims with the purpose of coercing that group into acceding to the political demands of the perpetrators.

After an attempt to conceptualize the notion of terrorism, the study moves onto a discussion of the terrorism's seven deadly sins. First, terrorism is the deliberate and cold-blooded exaltation of violence over all forms of political activities. The second is the deliberate suppression of the moral instinct in man. The third is the rejection of politics as the normal means by which communities resolve conflict. The fourth deadly sin is that it actively, systematically and necessarily assists the spread of the totalitarian state. The fifth is that terrorism can destroy a democracy, while it poses no threat to the totalitarianism. The sixth sin is that terrorism exploits the apparatus of freedom in liberal societies, and thereby endangers it. Finally, terrorism saps the will of a civilized society to defend itself, and, furthermore, it attempts to induce human

civilization to commit suicide.

There is a fundamental antagonism between terrorism and liberal democracy, but it is rather less obvious to people who have not themselves suffered the effects of violence that in extremis terrorism is capable of totally undermining the basic conditions for a viable liberal democracy. There are five powerful reasons why we should recognize that protracted campaigns of terrorism present a direct and serious challenge to the very survival of democracy: i) It is an attack on the moral will, values and institutions of democracy, and indeed on our whole way of life; ii) It makes war on the rule of law and attempts to blacken and intimidate the judiciary and police; iii) It is a savage threat to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innocent; iv) Terrorist movements are used by hostile powers to

weaken and undermine democracies from within; and v) Terrorism causes grave economic damage and disruption and diverts scarce resources away from other vital areas of social welfare in an effort to enhance physical security.

Terrorism may be a reality which is here to stay. Sometimes it is a real threat, but mostly it is not. Some of the reporting practices of news media tend to make it a greater threat than it is. Often it is our reactions to terrorism which may constitute the primary danger, not the terrorism itself. In conclusion, if terrorism is an expense which the liberal democracy has to pa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iberal democracy pays a small price for the sake of protecting so large values of importance, such as fairness, openness, and human freedom.

법 제 동 향



- 고소·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및 각하제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폭력범죄 선별 입건제도
- 캠퍼스 이용규범(서울대학교)

고소·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및 각하제도

〈치안연구소 경감〉 이 돈 일

고소 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고소 고발사건 각하제도
<p>□ 목 적 민사상 채권변동등 목적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 고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수사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p> <p>□ 근 거 ○ 고소 고발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예규 제471호)</p> <p>□ 적용대상 ○ 고소 고발사건수사에적용 - 단, 친고죄사건, 한미행정협정사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직무상 고발사건은 제외</p> <p>□ 내 용 ○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인의 동의하에 고소 고발장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p>	<p>□ 목 적 고소 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고소 고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p> <p>□ 근 거 ○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 고소 고발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예규 제471호)</p> <p>□ 적용대상 ○ 고소 고발사건수사에 적용</p> <p>□ 내 용 ○ 고소 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고소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p>

고소 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고소 고발사건 각하제도
<p>민사소송의 제기, 진정사건으로의 접수, 고소 고발장의 철회 등을 권유하는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고소 고발만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는 접수후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소 고발인을 피의자로 입건 - 고소 고발인이 동권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죄가되지 않거나, 민사사안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소 고발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입건으로 사건 종결 ○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소 고발부사건으로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 고발부사건 ; 고소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입건되기 이전 사건 -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소 고발부 사건으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입건 지휘를 받아야하고, 혐의 없음 공소권없음 등의 경우에는 불입건 지휘를 받아야 함 ○ 피고소 고발인을 입건할때는 입건서를 작성 입건하여야 함 ○ 불입건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건유예 : 고소 고발사실이 인정되나 범 	<p>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처리하는 중국처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2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 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의제2항,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소법 제224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소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소법 제232조의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형소법 제235조 :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도 준용한다.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형소법 제223조, 제225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 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고소 고발사건 각하제도
<p>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소 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는 '97.10.10 부터 시범운영되는 제도로 8개 지검(지청)관할 34개 경찰서에서 시범 시행중 	<p>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 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고발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경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 종료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고소 고발장, 고소 고발인 진술조서 등 현재까지 수사된 자료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 각하의견으로 송치 * 고소 고발 각하제도는 '95. 7. 10이후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부터 적용 시행중

고소 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 시범시행관서

- 8개지검(청) 34개 경찰서 -

지 방 검 찰 청 (지청)	경 찰 서
서울지검 서부지청	서대문, 마포, 서부, 은평(4개서)
" 북부지청	청량리, 북부, 중랑, 노원, 도봉(5개서)
춘 천 지 검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5개서)
대전지검 홍성지청	홍성, 예산, 보령, 서천(4개서)
청 주 지 검	청주동부, 청주서부, 진천, 괴산, 보은(5개서)
광주지검 순창지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6개서)
대구지검 안동지청	안동, 영주, 봉화(3개서)
제 주 지 검	제주, 서귀포(2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치안연구소 경감〉 이 돈 일

□ 목 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

□ 용어의 정의

○ “가정폭력의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 가족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자

○ 가정폭력범죄대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족구성원인 공범

○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

○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 보호처분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처분

□ 주요골자

○ 직무 또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등의 장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

○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 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함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보호기간 ; 사회봉사 수감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기타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등을 명할 수 있음

○ 보호처분중 접근행위제한과 친권행사제

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신설하여 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법률제정 및 시행

○ 제정 : '97.12.13(법률제5436호)

○ 시행 : '98. 7. 1

폭력범죄 선별 입건제도

〈치안연구소 경감〉 이 돈 일

□ 목 적

○ 지금까지 폭력범죄는 타법규 위반사범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여 온 경향이 있었고 범행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을 깊이 따져보기 보다는 진단서상의 치료기간과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처리해옴으로써 형벌의 실효성과 범죄억제력도 현저히 저하된 실정으로

○ 폭력범죄에 대한 그간의 처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정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사로 폭력사범을 근절함은 물론 폭력습성까지 쇠신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

□ 근 거

○ 폭력범죄 수사 및 처리지침(대검 98.4.20)

□ 기본방침

○ 죄질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재범자에 대한 처벌후퇴 금지(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직전의 처벌보다 중하게 처벌)

- 상습범 등 죄질불량자의 기소유예사건 적극 재기 수사

○ 선량한 국민이 우발적으로 또는 폭력에 대항하거나 정의감의 발로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그 동기·경위 등을 살펴 과감히 선처

□ 대상폭력범죄

○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수사요령

○ 초동수사 철저

초동수사단계부터 범행동기, 수법, 경위, 상해정도, 죄질, 상습성, 현장상태 등을 명확하게 조사

○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철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폭력범죄사건수사 시에 가급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

특히, 상해진단서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경우와 사건발생 동기, 경위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

- 폭력범죄사건 발생현장이 사건처리에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현장상태를 사진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
- 상해부위와 정도 및 현장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
- 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해 가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

여 수사기록에 편철

□ 처 리

○ 인지사건

- 원칙적으로 모든 폭력사건을 입건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가능

- 폭력행위가 불법부당한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감 또는 의협심에 기인하였다고 평가될만한 뚜렷한 정상이 있을 때

- 쌍방 폭력범죄사건의 경우 어느 일방의 폭력행위가 상대방의 도발에 대항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현저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을 때

- 다수인이 가담한 폭력범죄사건의 경우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 폭력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 고소사건

-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사건 전담지

회검사의 지휘를 받되, 불입건 지휘 대상에 대하여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 인지사건의 불입건 지휘에 불복하여 경찰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요령으로 지휘받아 처리
- 일부 인지 일부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사건 전담지휘검사의 일괄 지휘를 받아 처리

○ 송 치

- 일부 불입건한 사건을 송치시 비고란

에 “000검사 불입건 지휘사건”이라고 주인(朱印)

- 불입건 지휘사건의 처리

- 피의자 전부 불입건시, 내사사건에 준하여 종결처리하되 불입건 피의자에 대한 관련기록 모두 송치

□ 시 행

- 1998. 6. 1부터 시행

캠퍼스 이용규범(서울대학교)

우리학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이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학문 공동체로서의 학구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인 교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캠퍼스 이용규범을 둔다.

1. 집회 및 행사

○ 모든 집회 및 행사는 학문공동체로서의 자유로운 학구적 분위기 유지와 구성원의 안전과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도서관이나 강의실 부근의 집회 및 행사에서는 고성능 스피커 사용 등 소음발생을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에 한해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

○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거나 외부 단체주도의 비학술적인 행사는 자유로운 학문 공동체발전을 위해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장소 사용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잔디밭과 수목지역은 보호되어야 하며

무절제한 출입을 자제한다.

2. 취사, 음주 및 장터개설

○ 학구적 분위기 유지와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캠퍼스의 옥외장소에서는 취사, 음주, 장터의 개설 및 주류의 판매를 금지한다.

○ 단, 학생축제(대동제)기간에 한해 해당 대학 또는 학생처의 협조를 얻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취사, 음주, 장터의 개설 또는 주류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학내 시설물 심야 사용

○ 심야의 시설물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단, 연구 및 학생행사 등으로 부득이 심야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플래카드 설치 및 대자보 등 부착

○ 지정된 장소(플래카드 걸이대 및 게시판)에 설명으로 된 것에 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나무 및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대학 또는 학생처의 협조를 얻어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 플래카드나 대자보 및 기타 부착물은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부착된지 2주가 경과된 경우 부착 당사자 책임하에 철거하도록 한다.

5. 불법주차 및 과속 운행 등

○ 모든 차량의 불법주차 및 과속운행은 금지되며, 운행시 과도한 소음 및 매연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학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는 순환도로 이내의 지역에 진입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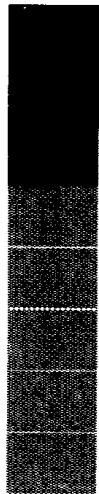
○ 집회 및 행사 등의 캠퍼스 사용 이후에는 사용자 책임하에 정리·청소하여 사용이전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 기타 캠퍼스이용은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학구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구성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7. 시행일

○ 이 규범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외국치안의 이모저모



- **세계의 치안사정/ 황수정**
 - 치안일반
 - 총기
 - 치안어록
 - 프랑스 월드컵 치안
- **하이테크범죄대책/ 최선우**
 - 하이테크범죄대책 추진 프로그램(일본)
 - 새로운 위험성을 나타내는 음모의 WEB(미국)
 - 가상공간을 위요한 범죄의 현상과 보안대책-

세계의 치안사정

〈청장보좌관실〉 황 수 정

I. 治安一般

미국, 안정과 번영누려 사회에 만족감

○ 공전의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은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론 이혼율이나 범죄율도 낮아져 사회의 「불행지수」도 최근 수년 극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어 1950년과 같은 황금시대를 구가

- 「불행지수」는 “사회적 불안정레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당초에는 경제적 만족도를 중시하여 실업율과 소비자물가지수를 환산하여 산출하였던 것

- 그러나 '60년대 이후 경제지수이외에 미국사회의 혼미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10대 출산율, 이혼율, 흉악범죄건수, 절도죄율을 더하여 문자 그대로 다면적인 불행지수를 산출하였고 기준통계는 미 연방통계국, 재무성등이 공표한 자료

○ 이 불행지수에 의하면 마약의 만연과 교육의 황폐를 배경으로 사회문제화된 10대의 출산, 가정의 붕괴가 초래하는 이혼율이 '9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범죄건수도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심각한 미국병이라고도 일컬어졌던 대도시의 살인·부녀자 폭행등 흉악범죄도 격감한 것이 특징

- 전문가들은 사회가 윤리관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특히 범죄도시 뉴욕의 살인사건이 '93년 2,245건에서 최근에는 980건 전후까지 격감한 것은 단순히 경찰의 단속강화나 경제의 호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사회전체의 안정회귀 분위기가 견인차라고 분석

미 방문 요인들, 백악관 경호 사절

○ 연방법원 노마 할러웨이 존슨판사는 '98

〈FBI, '97강력범죄 4%줄었다고〉

- 경찰에 신고되는 강력범죄가 '97년에 4%줄어 연속 6년간 감소추세를 시현
- 살인과 강도의 발생율은 9%로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전체적으로도 '96년에 비해 살인·강간·강도·폭행을 5%, 주택침입 강·절도등 재산범죄는 4%가 각각 감소
- 살인의 경우 인구 250,000명이상 500,000명미만의 도시에서는 14%, 1,000,000명이 넘는 도시와 인근 교외지역에서는 11%가 각각 감소

년 5월 21일 케네스 스타특별검사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 백악관 수습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서는 백악관 경호원들의 법정증언이 필요하다는 청구에 대하여

- 백악관과 법무부측의 “VIP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경호상 취득한 비밀의 보호권」을 주장하며 증언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 “경호상 취득한 비밀의 보호권은 헌법에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케네스 스타검사의 청구를 인용

○ 경호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하자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총리는 “경호원은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까지도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게 되는데 이들이 법정에서 나가 무슨 말을 할지 곤란하다”며 미국측의 경호를 점잖게 거절했다 하며 '97년의 경우 미국을 방문한 1,481명의 정상급 인사들을 경호한 백악관 경호실은 이와 같은 사태가 속출하지 않을까 대책마련에 부심

홍콩경찰 「Women In Black」 경호팀 운영

○ 검은 색 무전기를 들고 검은 색 양장에 검은 색 선글라스를 낀, Women In Black이라 불리우는 이 미모의 여성들은 지난 '98년 6월 1일 새롭게 출발한 홍콩경찰의 여성 무술경호원들

○ 권총과 자동소총을 옷안에 숨기고 있으며 6월 30일과 7월 2일 오후 각각 홍콩에 도착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의 퍼스트레이디 24시간 밀착경호라는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해적(海賊)사회, 해상민주주의 실현했다고

○ 애꾸눈에 의수나 의족을 하고 럽주를 마시면서 포로들을 상어밥으로 던지면서 함성을 지르는 악당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범죄자들인 해적의 모습 - 그러나 해적연구 전문가인 데이비드 코딩리 또는 케네스 킨

코는 「해적생활의 낭만과 실체」와 「검은 깃발 아래」라는 저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채

○ 이들 연구가들은 1984년에 해적선으로는 처음으로 인양된 「와이다」호의 유품이나 법정 기록,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해적들이 모두 악당은 아니었으며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면서 17~18세기에 대서양을 주름잡았던 해적사회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민주사회였으며 그 예로서는 선장을 선거로 뽑았고 다른 배의 공격 여부나 항해목적지등 중요한 사항은 투표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거론

- 구체적으로는 카리브해 해적들의 전성기는 1680~1725년으로서 전리품 분배의 경우 당시 일반상선은 선장 대 선원의 몫이 15:1이었으나 해적은 2:1이었고

-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은 해적들을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제도,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에게 전리품을 주는 유족보상제도가 있었으며

- 해적의 1/3이 흑인노예출신이었으나 이들은 투표나 전리품배당에 있어서 백인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었고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해적선에서 흑인이 선장으로 출세되기도 하여 「18세기의 흑인들이 출세할 수 있었던 곳은 해적선」이었다는 것으로서 「육지사회의 불의·불평등·야만성에 저항해 해적들은 해상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

○ 아울러 해적의 호전성이나 잔악성도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었다면서

- 해적들은 사냥감인 상선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포로들을 잘 대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 유명한 해골무늬의 검은 깃발도 상선이 공포감을 느끼고 항복하도록 하기 위한 항복 권고용이었지 죽음이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 저항하는 상선에 대하여는 붉은 깃발을 걸어 선전포고를 알렸다는 것

명화(名畵)도둑은 돈 이외에 다른 목적도?

○ '98년 5월 3일 루블박물관(1793년에 개관)에서 유명화가의 유화작품이 도난당하여 95년에 최첨단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더 이상 도난은 없다”고 호언한 박물관측이 곤혹스런 상태

- 더구나 이번 사건은 수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풍경화가중의 한 사람인 카미유 코로(1796~1875)의 「세브르의 길」을 도난방지용 강화유리판과 액자만 남겨 놓고 34cm×49cm크기의 캔버스만 통째로 오려 연기처럼 사라져 더 충격

- 1,300,000달러를 호가하는 이 그림이 없어진 사실을 통보받고 15:00경 출동한 경찰은 출입문을 봉쇄하고 30,000여명의 관람객들을

〈동남아해상은 현대해적의 마당〉

○ '98년 4월 17일 싱가포르를 떠나 베트남으로 가던 말레이시아선적 유조선 페트로 레 인저호(선원 21명)는 12명의 인도네시아해적에게 납치되어 굴뚝을 다른 색깔의 페인트로 다시 칠하고 선명도 바꿔 쓴 다음 혼두라스국기를 단 전혀 다른 유조선으로 탈바꿈하여 '98년 4월 26일 10,000t(1,500,000달러 상당)의 원유를 중국 하이난(海南)섬 인근해상에서 중국선적 유조선에 옮겨 실은 다음 잠적하여 종적이 모연한 상태

○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적들은 해골무늬의 검은 깃발을 휘날리지도 않고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고전적 카리브해형이 아니라 위장전투복에 기관총과 총류탄 발사기로 무장하고 고성능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야간에 급습하는 초현대적 특공대형이 특징으로서

- 말라카해협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해역을 누비고 있어 그 피해도 '91년의 107건에서 '97년의 252건으로 급증한 해적사건의 절반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하였고

-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인근해상이 가장 위험하며 배를 통째로 탈취하는 수법은 물론 화물을 강탈하거나 또는 선원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등 다양

○ 설비자동화로 선원수가 크게 준 해적들의 먹이감은 고압 소방호스가 유일한 자위수단이어서 무력하기 그지 없으나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해적들은 조직범죄집단의 자금지원으로 첨단 장비와 무기를 갖추고 있어 해적들의 약탈은 더욱 늘어날 전망

대상으로 몸수색을 하였으나 헛탕

- 루블박물관측은 도난을 막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이중삼중의 도난방지장치를 가동하는 외에 1,000여명의 경비원을 채용하여 순찰시키고 있으나 도난방지장치의 인공눈은 물론 경비원의 산 눈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훔쳐가 예술인과 애호가들의 성토세례만 받고 있는 실정

○ '98년 5월 7일 과거에 소피아 로렌, 엘리자베스 테일러등 유명스타들의 물건만을 전

문적으로 훔쳐 악명을 날렸던 영국의 대도 피터 스코트(71)가 1,000,000달러상당의 도난당한 피카소의 그림을 처분하려다 덜미

○ '98년 5월12일 프랑스황제 나폴레옹3세가 살았던 파리북부 콩피에뉴성에 도둑이 들어 화병, 시계, 소형 대리석 조각상등 20여점의 예술품을 훔쳐 도주

○ '98년 5월 19일 밤 이탈리아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장강도가 들어와 빈센트 반 고흐와 폴 세잔느의 작품 3점을 훔쳐 도주

〈피카소도 「모나리자」 절도범으로 몰려〉

○ 루블소장품 가운데 도난당했던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사건

- 당시 유명한 시인 아포리엘이 혐의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이전에 아포리엘을 통하여 루블의 도난품을 산 적이 있는 피카소도 혐의선상에 올라 아포리엘과 대질했을 때 절친한 친구사이이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겨대어 혐의를 벗은 얘기는 유명

- 범인은 루블의 내부도장공사인부 페르자로서 그는 하숙집 침대밑에 숨겨두었다가 2년 후에 이탈리아인 화상에게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이 페르자의 하숙집은 「모나리자의 집」이라 하여 지금도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어 성업중

- 루블은 '94년에도 17세기 초상화 한 점을, '95년에는 화가 튀르펜그 크리스세의 작품 한 점을 도난당하는 수모를 경험

○ 명화들의 수난은 루블만 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 '85년에는 파리 마르모탕박물관에서 일요일 아침 박물관문을 열자마자 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닥쳐 인상파 창시자 모네의 작품 「인상-해돋이」등 10여점을 털어 달아나는 최대규모 명화절도사건을 기록

- '94년 놀웨이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동계올림픽 개막 몇 시간 전에 국보급인 현대미술가 에드바르크 몽크의 작품 「절규」가 단 50초만에 도난당해 동계올림픽을 능가하는 관심을 집중(놀웨이경찰은 미술품절도사건 전문수사대가 있는 런던경시청과의 공조로 범인을 세달후에 검거하여 회수)

○ 명화도둑의 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카소의 작품도 절도범들이 즐기는 메뉴로서 '94년 스위스 취리히의 막스 블라크 갤러리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카소의 작품 7점(당시 싯가 42,000,000달러)이 도난당했고 이 가운데 「의자에 앉은 여인」과 「몽마르트의 예수」는 이 갤러리에서 '91년에도 도난당했다가 '92년에 회수된 것이어서 불운이 겹쳤던 셈

- 도난당한 작품은 고희의 말기작 「정원사」 및 「아를르의 여인」, 세잔느가 숨지던 해의 작품인 미완성품 유화 「주르당의 오두막」(1906)이었으며

- 이탈리아경찰은 7월6일 조직절도단 8명을 검거하고 작품 3점을 로마, 트리노 등지에서 모두 회수

美경찰, “흑인·소수민족은 막 다루어도 된다”고?

○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은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당국의 묵인하에 전국 주요도시에 만연해 있다고 최근 폭로 — 경찰의 인권침해사례는 부당한 발포, 심한구타, 인명을 앗아가는 목조르기 등 가혹행위, 거친 신체적 접촉 등이었다 하며 — 휴먼 라이트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국장은 “경찰의 가혹행위 대상은 주로 흑인과 중남미 및 소수민족 출신이며, 경찰간부 등의 묵인하에 이같은 행위가 계속돼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다.”고 지적

- 뉴욕시민 앤서니 바에즈는 경찰관으로부터 목이 졸려 사망했는데 문제의 경찰관은 이전에도 거친 행동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것으로 밝혀졌으며 '93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뉴욕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96년에는 8,869건으로 늘어났고

-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발포한 데 따른 민사소송으로 수십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 또 시카고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도 '72년부터 '91년 사이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으나 처벌받은 경찰관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 '98년 7월 7일 발표된 440쪽 짜리 이 보고서는 미 전역 14개 도시의 경찰행태를 분석한 것으로서 경찰단체들은 “보고서가 매우 국지적 사례만을 든 불공정한 것”이라고 항의

LA경찰,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영어를 못하는 80대 한인 노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로스앤젤레스(LA) 경찰의 다중언어 서비스가 탄생

- LA경찰위원회는 5월 6일 정동식(당시 81세) 노인의 지난 '96년 사망사건으로 발족된 LAPD 언어정책 특별팀이 2년간 준비해온 다중언어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승인,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 정노인은 당시 경찰의 무성의로 길에 방치돼 강도에게 봉변을 당한 끝에 절명

○ 영어를 못하는 주민이 경찰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해당언어를 구사하는 경찰이나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이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는 영어를 못하는 주민들도 영어사용 주민과 동등하게 경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911 신고전화로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주민들이 이중언어 사용 경관을 원할 경우 신속히 연결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

뉴욕,범죄 40% 줄여 재선

○ '98년 1월부터 두 번째 임기(4년에 1회 연임 가능)에 들어간 루돌프 줄리아니(54) 뉴욕시장은 '94년 첫 취임 이래 성공한 범죄와의 소탕작전을 계속할 계획

○ 첫 번째 임기중 그가 매달린 「안전한 거리 만들기」은 뉴욕시의 전체범죄 건수를 40% 줄였고, 살인은 4년만에 48% 감소

- 신호대기중인 차의 유리창에 갑자기 비눗물을 붓고 돈을 요구하던, 이른바 「걸레 부대」도 사라진 지 오래며 지하철의 걸인도 거의 찾아 볼수 없게 된 상황이고

- 「교양있고, 예절바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초(超)강성 드라이브는 뉴욕의 애칭인 「빅 애플」을 과거 「썩은 사과」로 비꼬던 야유를 잠잠케 했고 시민들의 그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여 '97년 11월 4일 시장선거에서 거뜬히 당선

미국, 女子경찰출신 콜걸 “호텔개조 박물관 설립”

○ 경찰직을 내던지고 콜걸로 나섰던 한 여성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매춘호텔을 예술박물관으로 바꿀 예정

- 몬태나주(州) 버트 소재 「듀마 호텔」이 바로 그것으로 서부개척시대 말기인 1890년에 문을 열어 지난 '82년 세금채납으로 폐업한 이 매춘굴의 간판을 갈아달겠다는 노마 앨모도는 전직 여자경찰관

- '72년 경찰공채시험에 합격,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할리우드 담당요원이 되었으나 경찰의 부패와 타락에 환멸만 느끼고 10년만에 제복을 벗었던 것

○ 남성 동료들이 10대 걸스카우트 소녀들과 거리낌없이 성관계를 맺는것을 보고 혐오감마저 느꼈고 “그러면서 창녀는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라고 소감을 밝히는 그녀는 동료들이 매춘부 살인사건을 「NHI」로 부르는 것을 보며 격분, 자신의 몸을 매춘굴에 내던졌다고 토로

- 「NHI」는 「사람과 관련없는 사건(No Human Involved)」이라는 뜻 이라 하며

- '83년엔 매춘단속에 걸려 3년간 징역을 살았고, 「콜걸이 된 여경」이란 제목으로 자전적 소설을 펴내기도

○ 지난 해 「세계섹스산업 종사자 예술-문화-교육재단(ISWFACE)」을 설립한 그녀는 올들어 듀마호텔 개조를 주도

뉴욕시, 긴급재해용 ‘침단방탄벙커’ 건설

○ 뉴욕시 고층빌딩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최첨단 비상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될 예정

-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98년 6월 14일 도시를 강타한 허리케인이나 홍수 그리고 생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등 모든 잠재적인 위협상황에서도 도시를 지휘통제

할 수 있도록 「방탄벙커」을 만들겠다고 언급
- 투입될 예산은 1천5백10만 달러(약 2백10 억원)이고 「방탄벙커」은 필요시 경찰청 긴급 재해센터 임무를 수행할 계획

○ 세계무역센터(WTC) 앞 건물 23층에 들어설 이 벙커에는 최첨단 컴퓨터망과 통신시설을 갖춰, 물난리나 지하철테러 등 비상사태 때 재난을 한치 오차없이 해결한다는 것이며

- 벙커 설치계획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줄리아니 시장의 기행을 비난

- 그러나 제롬 하우스 시 재해대책본부장은 “세계 금융중심지 뉴욕의 긴급재해는 빨리 해결될수록 시민들과 비즈니스에 유익하다”고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이 벙커는 예정대로라면 '99년 1월 개관할 예정

뉴욕경찰, 19명이 근무중 상습매춘

○ 미국 뉴욕시를 범죄없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경찰의 부패스캔들로 곤욕

- 줄리아니 시장과 호워드 사피어 경찰국장은 '98년 7월 17일 뉴욕경찰국 소속 19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매춘부들과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들을 보호해온 것으로 밝혀져 근무제한 및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무려 15년간이나 매춘업자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드나들며

휴식을 취하거나 매춘부들과 놀아났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 대대적인 흥동이 단속이 벌어졌음에도 경찰에게 '쉽터'를 제공해준 업소는 안전하게 영업을 계속해왔고 게다가 이들이 애용한 곳이 범죄의 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뉴욕시가 심혈을 기울여 재단장하고 있는 중심가라는데 뉴욕시민들이 격분

○ 문제의 경찰관들이 담당했던 지역은 미드타운 사우스구의 타임스스퀘어, 매디슨 스퀘어가든이 자리잡은 곳으로 한때 섹스숍 등이 많았던 지역이나 최근 월트디즈니사 등이 재단장 프로젝트를 시작, 아이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가족명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

○ 뉴욕 시민들은 경찰의 스캔들이 강력한 부패척결을 공약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재당선된 줄리아니 시장 아래서 발생하는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도박과 매춘은 20여년 전까지 경찰스캔들의 단골메뉴로 지탄받아 왔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줄리아니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범죄소탕에 상당한 실적을 보여온 경찰이 이제는 자체 정화작업에 나설 때라고 강조

英정부 '노숙자와 전쟁' 선포

○ 토니 블레어 총리는 '98년 7월 8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숙자 문제를 담당할 '거리의 차르'(Street Czar)라는 전담관을 선임하고 노

숙자 전담기구를발족기로 했다고 발표

-블레어 총리는 이날 “노숙자문제는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의 실패이자 분열된 사회의 상징이다. 국민들은 보다 공정한 사회와 하나 된 국가를 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우선 수도 런던을 시범도시로 선정, 향후 3년간 5천만 파운드(1천1백30억원)를 투입해 노숙자 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고 또 내년 3월 노숙자대책기구 발족과 함께 선임될 ‘거리의 차르’를 런던뿐 아니라 옥스퍼드·맨체스터 등 대도시로 확대할 방침

○ 현재 영국에서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주거부정자는 약 35만명이며 이 중 런던에서는 매일 밤 2천여명이 길거리에서 노숙

영국, ‘이웃 감시단’으로 5명중 1명꼴 1천만명 활동

○ 영국에서는 유사시 민간의 협조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웃감시단」이 몇년새 범죄율 감소에 한몫을 담당, 주목

-80년대 전반에 ‘숨은 경찰’이란 별칭으로 태어난 이웃감시단의 회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1천만명. 영국국민 5명중 한사람꼴이며

-이들의 활동은 아주 간단하여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화·컴퓨터를 통해 다른 이웃감시단원에게

연락, 빠른 시간내에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것이고

-젊은 회원들은 조를 짜서 주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나이든 회원들은 각자 집에 머물면서 바깥의 움직임을 주시

○ 이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중부 잉글랜드 스톤리 지방의 경우 몇년 전만 해도 이 지역 가정의 85% 정도가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으나 이웃감시단의 활동으로 범죄율이 75%나 떨어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의 수고를 덜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

○ 회원들은 물론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어 이 조직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각종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지역사회에 여러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해 활동 실적이 많은 회원에게는 ‘우수 탐정’상이 주어지기도

○ 이번 주를 홍보주간으로 설정한 이웃감시단은 ‘영국최대의 단체’에 가입해 자부심과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라고 선전하고 있는 중

英, ‘위장결혼과의 전쟁’

○ 『의심스런 부부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영국 내무부가 위장결혼을 단속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영국 BBC방

송이 '98년 5월 14일 보도

- 영국에선 국외 추방을 피하려는 불법체류자 등의 위장결혼이 런던에서만 연간 1만건에 이를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며

- 위장결혼조사반은 「신혼부부」집에 밤늦게 전화를 걸어 각종 질문을 퍼부어 양쪽의 대답이 어긋나면 심중팔구 위장결혼으로 판정

○ 결혼사진도 조사대상으로서 한 조사관은 “웨딩드레스 위로 털이 무성한 가슴이 드러난 신부를 발견한 적도 있다”고 하며 이는 불법체류자가 궁여지책으로 동원한 남성이었고 “결혼식 후 주차장에서 돈을 주고받고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고가는 커플도 보았다”고 한 조사원은 설명

런던경시청, 사상최대 부패 자체사정

○ '98년 7월 24일 런던경시청은 180명의 대규모 감찰반을 투입, 조직범죄단과 연계된 200여명의 경찰관을 조사중이라고 발표

○ 런던경시청 감찰반은 이미 현직 고위간부는 물론 퇴직한 총경급 간부중에서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부패혐의를 포착

英, 범죄상업화 논란

○ 범죄자에게 인터뷰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취재의 필요악인가 아니면 범죄의 상업화를 부추키는 잘못된 일인가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전개

- 영국 언론중재위원회(PCC)는 '98년 7월 23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범죄자에게 인터뷰대가 지불할수 있다”며 더 타임스등 4개 신문에 대한 고발을 기각

- 사건은 올해 초 아동 연쇄살인범 메리 벨(41)에 대한 시리즈를 기획·출판하는 과정에서 벨에게 5만파운드(약1억원)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롯된 것이고

- 벨은 지난 '63년 11세때 3~4세 소년 2명을 살해하여 종신형 선고를 받고 '80년까지 복역하다가 석방되어 가명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 왔으며 결혼해서 딸까지 낳았으나 언론의 추적에 노출되어 돈을 받고 자신의 인생유전을 술회

○ 더 타임스가 이 벨 시리즈를 보도하자 벨에게 살해된 두 소년의 유족이 항의 하였고 여론도 “살인행각을 떠벌려 돈을 벌도록 부추켰다”고 비난

- 토니 블레어 총리도 “대단히 불쾌한 일”이라고 비판하였고

- 이 과정에서 벨의 딸(14)이 어머니가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모녀는 경찰에 신분보호를 요청

○ 웨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더 타임스 편을 들었으나 양심은 편치 못하다”면서 여론의 지적을 회피

독, 비단뱀에 마약단속경관 기겁

○ 독일의 마약단속 경찰관들은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는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가 대형 비단뱀이 기어나오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해 도망쳤다고 경찰이 '98년 5월 13일 발표

○ 경찰관들은 뮌헨 부근 에르딩의 한 아파트에서 비밀리에 마리화나가 재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습했으나 길이 3~4m의 뱀 두 마리가 대마 사이를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물러나왔다고

독, 어린이 유괴살인범 DNA검사로 체포

○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찰이 어린이 유괴살인범을 잡기 위해 성인남자 1만6,400명의 DNA를 채취한 끝에 결국 살해범을 체포해 화제

- 11살짜리 소녀를 유괴한 뒤 강간살해한 참혹한 사건은 지난 '98년 3월 덴마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슈트뤼클링겐에서 발생

-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했고, 이 샘플에서 나온 DNA가 2년전 비슷한 사건의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같음을 확인

-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신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2년전 사고를 당한 소녀가 목숨을 건져 피의자의 외모를 어슴프레

기억하고 있어서 경찰은 피의자의 연령대를 18~30살로 추정

- 경찰은 신문과 방송을 이용해 유괴범인을 찾기 위한 「자진 타액 검사」을 선전했고, 5월 31일 체포된 로니 리켄이라는 피의자도 이 대열에 참여

- 리켄은 주변마을 사람 등 1만6,400명이 참여한 침검사를 3,889번째로 받았고 경찰은 리켄의 침의 DNA가 2년전 크리스티나의 주검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달간 리켄의 뒤를 추적해 증거를 보강해 그를 체포

○ 놀라운 사실은 그가 크리스티나의 집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는 점으로서 그의 체포는 2달간의 과학수사가 거둔 결실

佛경찰, 소매치기검거 태업

○ 일부 프랑스 경찰관들은 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데 대한 항의로 최근 3개월간 소매치기 검거를 기피하고 있는 중

○ 그러나 '98년 5월 29일 화동한 경찰노조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분쟁이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축구팬들이 몰려오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다짐.

프랑스경찰, 탈옥수로 체면 구긴 경험 있어

○ 프랑스의 경찰과 교도당국은 아직도 자크 메슬린이라면 치를떠는데 이는 10여년간 경찰·교도당국을 마음껏 우롱하면서 살인강도와 탈옥을 일삼았던 인물이기 때문

- 25세 때인 지난 '62년 은행강도 미수죄로 1년을 복역하고 나온 메슬린은 '67년 캐나다로 건너가 백만장자 납치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탈옥의 명수'로 불리기 시작

- 복역 1년후 탈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유명한 생 뱅상 포르 교도소를 감쪽같이 탈출했고 탈옥후에는 동료를 탈옥시키려 다시 그 교도소를 찾아가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 그후 몇 년간 중남미를 무대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이던 메슬린은 '70년대초 활동무대를 모국인 프랑스로 옮겨 잠깐 사이 수백만 프랑을 벌어들이고 「현대의 로빈후드」을 자처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기도 하던 그가 체포된 것은 '74년 3월 8일

- 그러나 재판 도중 판사를 인질로 삼아 탈출에 성공했고, '77년 다시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아 역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라 상태 교도소에서 복역중 1년만에 탈옥

- 경찰에 최대의 망신살이 뺀 것은 탈옥 직후 메슬린이 자신에게 20년형을 선고한 판사의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서 판사의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메슬린은 “메슬린은 위층에 있으니 빨리 잡으라”면서 유유히 현관을 빠져나간 것

- 평소 “산 채로 체포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메슬린은 '79년 11월 2일 경찰의 총격을 받고 마침내 사망

○ 메슬린 한 사람 때문에 프랑스 경찰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이는 경찰력이 총동원돼 체포에 혈안이 돼 있는 중에도 그는 경찰관 행세를 하며 곳곳에 출몰하는가 하면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해 “교도소의 인권부재를 고발한다”는 등 우롱을 일삼았기 때문

中國, '司正 칼바람'

○ 중국당국이 부패 판사와 세무공무원 등에게 철퇴를 내려 주룽지(朱鎔基)정부의 개혁을 향한 「사정 돌풍」을 지원하고 있으며 '98년 7월 16일 에는 현직 법원간부의 신분으로 특정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 기업 관련 재판 과정에서 그 기업에 유리한 의견을 내거나 정보를 알려준 광시(廣西) 장족(壯族)자치구 인민법원 부원장에 대해 15년의 중형을 선고

- 이 법원부원장은 지난 '96년 광시성 베이하이(北海)시에서 하이칭타이푸(海城泰富)란 경매회사로부터 25만 위안(元·약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하이칭과 함께 타이윈(泰雲)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부사장」직함도 가졌다는 것

- 그는 이에 앞서 이 경매회사의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의견을 내놓거나, 재판 관련 법

원내부의 검토사항을 회사측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까지 자행

○ 또 중국 텐진(天津)법원은 최근 시(市)의 세수(稅收)에서 62만 위안을 횡령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빌미로 기업들로부터 40만 위안을 받은 시 세무국 고위간부에 대해 횡령 및 부정부패죄를 적용, 추징금 5만 위안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고 또 저장(浙江)성의 한 공무원은 직원 채용 조건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탄로나 13년형을 선고

○ 중국 정부가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중국의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안정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공무원 부패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돼 저소득층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최근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을 우선적으로 진행

中國경찰, 강도칼에 23곳 찢리고 여성구출

○ 중국청년보는 '98년 7월 9일 1면 '10만 백성 눈물로 영웅을 보내다.' 제하의 머릿기사로 “4인조 강도로부터 23군데나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출한 용감한 경관의 죽음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

- 시민들의 애도속에 7일 치러진 장례식의 주인공은 하얼빈시 타이핑(太平)공안분국 형

사경찰대대 소속 경찰관 루안권(魯安權 · 39)

- 지난 달 28일 오후 5시경 일요일임에도 거리순찰에 나선 루안권이 송화(松化)강변에 이르렀을 때 강변 숲속에서 젊은 여성의 비명이 들렸으며 이 지역은 평소 데이트 남녀를 상대로 한 강도행위가 잦은 곳

- 루안이 현장으로 뛰어가면서 “누구나”고 소리치는 순간 숲속에서 4명의 괴한이 뛰쳐나와 예리한 칼을 휘둘렀고 루안은 이들과 격투를 벌이면서 한 손으로 권총을 뽑아들었으나 순식간에 괴한들의 칼에 23곳을 찢렸던 것.

- 심장, 간, 비장 등 치명적 부위에만 8군데나 찢려 쓰러지면서도 루안은 사력을 다해 권총 3발을 발사해 괴한 1명의 왼쪽다리를 명중시켰고 다리에 총알을 맞은 괴한은 현장에서, 나머지 3명은 다음 날 모두 체포

○ 목격자들은 “루안이 권총을 손에 쥔 채 눈을 부릅뜬 모습으로 죽어갔다”고 전했으며

루안의 장례식에는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10만여명의 시민이 몰려들었고 루안의 영구차가 묘지로 향하는 길에는 모든 차량들이 멈춰 애도를 표했으며 그가 11년간 근무했던 신러지에(新樂街)파출소 관할지역 주민중에는 울부짖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 헤이룽장(黑龍江)성 공안청으로부터 「사건해결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여러 차례 상을 받은 모범경관 루안에 대하여 시민들은 “특히 노인을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

中, 핵폭탄·항공모함 빼곤 총동원해 밀수와 전쟁

○ 중국은 지난 '98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강력한 밀수근절 대책을 펴기로 결정

- 장 주석은 회의에서 당중앙지도부 및 국무원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등의 고위관계자들에게 “밀수 범죄활동 근절은 중대한 사회과제일 뿐 아니라 엄숙한 정치투쟁”이라고 전제하고 “밀수에 관련된 곳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 “일부 지방에선 당과 정부, 군대등 범집행기관까지 밀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밀수 정도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지적

○ 이에 앞서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도 최근 “핵폭탄과 항공모함을 빼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밀수를 뿌리뽑으라”고 지시했으며 중국당국이 이처럼 밀수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국가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

- 중국당국은 지난 해 밀수로 인한 세수감소가 약5백억위안(한화 약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지난 해 중앙정부 총재정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

- 중국의 밀수행위는 주로 선박을 이용해 해외에서 각종 원자재나 제품을 들여오는 형

태이며 광둥성 삼각주를 비롯한 해안지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 주요 밀수품목은 화공원료, 정유제품, 자동차, 컴퓨터, 철강재, 식용유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물건이 망라돼 있으며

○ 장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밀수수사 전담공안부대를 창설, 세관에 배치할 것이라고 언명

벨기에, 연쇄강간 살인범 탈주로 범무·내무 사임

○ 유럽사상 최악의 「페도필」(소년-소녀 성폭행자) 연쇄살인범 마크 뒤트루(41·벨기에)가 '98년 4월 23일(현지시각) 벨기에 남부 뇌프샤토 법원에서 경비경찰로부터 권총을 빼앗은 뒤 지나가던 차량을 강탈해 도주했으나 탈주 3시간반만에 다시 체포

○ 이 사건으로 벨기에의 스테판 드 클레르크 법무장관과 요한 반드 라노트 내무장관이 즉각 사임했으며 5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중 지난 '92년 가출옥한 뒤트루는 '96년 8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6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성추행과 학대를 가하고 4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1급살인)를 받고 재판계류중

이스라엘, '拷問유용성' 적극 변호

○ 이스라엘 정부당국은 팔레스타인의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문은 비정상적이지만 성공적인 수단」이라면서 고문의 유용성을 적극 변호하고 나서 이채

- 회교 무장단체 하마스 조직원 2명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가 신문 과정에서 고문했다고 주장했고, 고문관련 혐의자에게 「적당한 물리적 압력」을 허용한 결정을 폐지하라고 이스라엘 법원에 요구

- 이스라엘 인권단체도 '98년 5월 19일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법원앞에 모여 “정보기관이 해마다 팔레스타인 포로 1천명이상을 신문하고, 이중 85%에게 고문을 가했다”며 시위

○ 이스라엘정부는 5월 18일 대법원에 서한을 보내 “정당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고문을 가해 (그들의) 목숨을 살리고 최소한의 상처만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유엔 반(反)고문위원회는 “이스라엘은 고문 금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

○ 더우기 이스라엘 보안국 아미 아알론 국장은 “죄수들을 격렬하게 혼드는 심문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정보를 케낼 수 있다”며 「흔들기」 심문법의 불가피성을 대법원에 설명하고 허용해 줄 것을 요청

인도, 10달러 뇌물받은 경관 징역4년

○ '98년 7월 5일 인도의 한 경찰관에게 “12년전 뇌물 10달러를 받은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

○ 뉴델리의 경찰관인 프라카시 싱 티아기는 지난 '86년 7월 당시 재산 싸움에 연루된 아르준 다스라는 사람에게 뇌물로 10달러를 바치지 않으면 무고(誣告)하겠다고 위협,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며 부패방지부 관리들은 티아기를 수뢰혐의로 체포했으며 델리법원은 그에게 4년형을 선고

인도네시아, 「약탈자에 발포」명령

○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98년 7월 22일 극심한 경제난으로 급증하는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약탈자에 대해 발포할 것을 산하 경찰에 명령

○ 경찰청장 퇴스만하디 중장은 “불가피할 경우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약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시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수하르토대통령이 사임한 뒤 약탈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발포명령은 이에 대처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

마카오, 갱들 利權다툼 극성 등 '治安' 이 없다

○ 주권 반환 1년 8개월을 남긴 포르투갈령

(領) 마카오의 치안부재(不在) 상황이 갈수록 심각

-작년 이맘때는 마카오-홍콩-중국 갱들간에 카지노 이권을 둘러싼 영역확보 전쟁으로 시끄럽더니 올해는 더욱 악화된 양상이며

-갱들이 아예 공권력을 상대로 방아쇠를 당겨 '98년 3월 24일 마카오 카지노업계를 관장하는 도박검사국 서열 3위 프란시스코 아말랄 검사관이, 3월 26일에는 해상세관담당 경찰 추 이온카오가 별건 대낮에 마카오 시내 보안사령부 근처에서 단독범에 저격, 피살되는등 지난 1개월간 3명이 희생

-포르투갈 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공식방문하기 2일전인 지난 4월 15일에는 마카오 보안사령부 차장(서열 2위)의 운전기사 왕 캄생이 아침 출근길에 살해당했는데 그 자신이 마카오사격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속사권총의 명수지만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당했으며 그의 지갑속 수천달러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신분증은 오리무중

○ 갱들이 정부관리들을 상대로 대담한 살인극을 벌이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한 것으로서 이미 마카오 현 정부를 「공권력」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는 선포이며, 내년 12월 22일 마카오 주권이 중국으로 공식반환될 때까지 자신(갱)들의 이권문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라는 것이 마카오인들의 추측

스리랑카경찰, 장관 신용카드 포르노사이트 접속 수사

○ 만갈라 사마라위라 스리랑카 언론우편통신장관의 신용카드가 인터넷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도용됐다고 국영 데일리 뉴스가 '98년 6월 23일 보도

○ 사마라위라장관은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신용카드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2차례나 이용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범인색출을 위해 미 연방수사국(FBI)에 협조를 요청

필리핀 대통령, 경찰관에게「살배라」고 엄명

○ 「국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취임기념으로 전 국민의 가정에 칫솔 한 개씩을 선물한 조셉 에스트라다(61) 필리핀 대통령이 '98년 6월 30일 취임후에도 갖가지 기행으로 화제

○ 에스트라다는 8일 필리핀 경찰에게 체중을 감량하도록 엄명해 경찰이 긴장

-에스트라다는 “우리나라 경찰은 너무 뚱뚱하고 둔하다. 이제 이들도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체중을 줄이든지 경찰을 그만 두든지 택일하라”고 지시

-아베리오 라존 마닐라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춤을 배우면 체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을 민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경찰관들에게 재강조

남아공, 범죄소탕 위해 전 CIA국장 초빙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

- 남아공 정부는 '98년 5월 31일 조직범죄소탕을 위해 노르브 가렛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의회담당관 및 톰 캐시 전 미국 마약퇴치국장 등이 속해 있는 영국의 안전관리회사 크롤과 1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 크롤은 남아공 고위 경찰관과 첩보요원, 법무부 관리를 훈련시킬 예정

○ 시드니 무파마디 남아공 안전보안 장관은 “범죄소탕 전문인을 고용기로 한 것은 최근 190개에 달하는 범죄조직이 남아공 안팎에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이들 범죄조직 때문에 빚어지는 경제 손실액은 연간 25억달러에 달하는 경찰예산 보다 훨씬 많은 33억달러로 추정되고

- 이렇듯 기승을 떠는 조직범죄는 육군 무기고를 털 정도로서 브롬폰테인 육군 무기고에서 무전기와 자동소총 등 120정의 무기를 감쪽같이 탈취해간 범인들은 무기고의 벽을 잘라내 침범한 뒤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만델라 만세, 백인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남겨놓고 달아날 정도로 여유만만

아르헨티나 경찰관, 도둑으로 착각해 아들에 총격

○ 아르헨티나의 치안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정원에서 놀던 어린아들을 도둑으로 오인, 총격을 가해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

○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구스타보 아리엘 가글리아르디(27)라는 경찰관은 지난 '98년 7월 14일 근무를 끝내고 오후 8시쯤 귀가하면서 정원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 도둑인 줄 알고 권총 4발을 발사한 뒤 달려가 보니 자신의 네 살배기 아들이었다는 것.

브라질, 한달에 1천명꼴 범죄로 사망

○ 「21세기 브라질 사회 최대의 적은 범죄다.」

- 부패와 함께 치안불안은 브라질 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브라질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95년에만 3만 7,128명이 각종 범죄로 사망

- 브라질 전 지역에서 한달에 1천명꼴로 죽어나가는 상황이며 '91~'95년에 모두 15만 9,526명이 죽어 해마다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돼 목숨을 잃었고

- 살인사건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상파울루 등 브라질의 대도시에서는 시민들이 밤길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구 1천만의 대도시 상파울루의 경우 '95년에

5,722명이 살해당해 거의 1시간 30분마다 1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

- 단순강도에 대한 불안도 늘 따라다녀 상파울루 시민들은 차를 몰고 나갈 때 운전대를 붙들며 매기 위해 지팡이 모양의 잠금장치를 갖고 다니며 단 10분 동안의 쇼핑을 위해 길에 차를 세울 때도 카스테레오를 떼어내 숨기고서야 문을 닫을 정도이고

- 대도시의 총격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지만 대개 빈민가 지역의 마약, 조직범죄, 강도사건이 범죄의 대종

○ 언론과 범죄관련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찰의 치안능력 부재와 함께 경찰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

- 지난 달 발표된 브라질 경찰당국의 경찰관련 살인사건 자료에 따르면 '90~'98년 상반기까지 경찰이 총으로 쏘 죽인 시민이 5,384명이며

- 경찰의 범죄진압에 저항하다가 죽은 경우가 많지만, 이 가운데 350명은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고

- 지난 해에는 경찰이 빈민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을 주민을 쏘 죽이는 장면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 주요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고 브라질 사회에 경찰개혁여론을 불러 일으켰으나 결과는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

○ 상파울루대 페르난두 살라(49) 범죄학 교수는 "최근 20년동안 급속히 팽창한 대도시

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피해자가 대부분 혼혈이 많다는 점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구조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장경관의 재판을 사법부가 아닌 경찰이 맡는 현행 제도를 철폐해야 하지만 정치인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

II. 총 기

미, 총기반대 시위

○ 잇단 총기사고로 미국 전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98년 5월 2일 미국의 총기반대주의자들은 미 전역의 총기제조업체 공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총기유통 및 판매과정을 엄격히 규제할 것을 촉구

○ 미국 최대의 총기제조업체인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의 스미스 앤드 웨슨 공장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95년 총기사고로 숨진 19세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상징하는 뜻으로 5천2백85켈레의 신발을 전시

○ 미국에서는 현재 2억5천만정 이상의 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95년에만 3만6천여명이 살인, 자살, 사고 등 총기와 관련해 사망

미, 銃器소유 반대 - 옹호 격론

○ 영화 「벤허」와 「십계명」 등의 주연배우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원로배우 찰턴 헤스톤(73)이 '98년 7월 8일 (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우익단체인 「전미(全美) 총기협회(NRA)」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 이는 바로 「클린턴 대 헤스톤」이라는 불 만한 전쟁이 시작됐음을 예고
- 작년부터 NRA의 수석 부회장을 맡아 온 헤스톤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내 총기난사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NRA의 「대(對)국민홍보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기 때문

○ 1871년 창설된 NRA는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이익단체로, 미국 정가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현재 회원만도 2백80만명

- 그간 미국 언론과 자유주의 진영의 정치인들로부터 청소년 총기 사건은 물론 미국 내 각종 범죄의 「원인제공자」쯤으로 비난받은 한 단체

〈 총기천국 미국 ① 〉

○ 케네디가 암살된 얼마 후에 흑인 지도자 말콤x가 암살됐고 이어 로버트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이 흉탄에 쓰러지자 “미국이 이래도 되는가”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매사추세츠주에서 총기소유금지법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며 바로 케네디 형제들을 배출한 주이고 킹목사의 활동무대였기에 총기소유에 반감을 갖고 있던 주였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2대1 비율로 반대파가 압도적

○ 미국에서의 총기소유는

- 총기 무소유는 도적에게의 초대장이라는 문단속론
- 가게에서 총을 곁에 두지 않고는 안심이 안 된다는 자위론
- 불법화하면 정직한 사람만이 골탕먹으므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서부정신론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 청소년총기난사가 월례행사처럼 벌어져 “미국이 이래도 되는가”의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클린턴 대통령은 총기 소지의 불법화를 모색중
- 그러나 나쁜 것은 총기가 아니라 경찰의 대처미흡, 총기 사건에 관대한 판결, 텔레비전 화면의 폭력프로 범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도덕적 방임이 그 원흉이라며 격렬하게 반대

- 그러나 찰턴 헤스톤은 미국인들에게, 시련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을 이끄는 영화 「십계명」의 선각자 모세와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벤허」로 기억되곤 하며

- 결국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NRA는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되

찾아올 수 있는 책임자로 헤스톤을 선택

- NRA 부회장으로 선임된 웨인 라피에르는 “헤스톤회장 선출로 이제 모세가 우리 편에 서게 됐다”며 “1백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NRA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

〈 총기천국 미국 ② 〉

○ 미국은 로비의 천국이자 총기의 천국

- 극성스런 로비스트나 압력단체들이 좀 심하게 말한다면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외에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할만큼 맹활약
-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정면도전도 불사하며 대표적인 압력단체의 하나인 「전미(全美)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약칭NRA)」의 로비력은 정말 대단
- '81년 3월 정신병력이 있는 청년 존 힝클리의 저격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레이건 당시 미대통령도 병상회견에서 “절대다수의 미국인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총기의 판매·소지는 허용돼야한다” 고 말했을 정도

○ 최근 오리건주(州)와 아칸소주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학교내 총기살인사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 클린턴행정부는 비등한 여론을 등에 업고 총기수입 전면금지, 총기구입자 전력조사를 위한 기금조성용으로 13달러의 총기세 신설, 월별 총기판매총량 제한등 반총기 캠페인을 추진중이고
- 이에 맞서 280만 회원을 가진 NRA는 50개 모든 주에서 「비노출」조건부로 자유스럽 게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

○ 정신병력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총질한 범인을 즉시 무죄방면하고 총격 받은 대통령도 선량한 사람들의 보호를 이유로 총기소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라인 미국은 지금 총기소유 허용여부로 뜨거우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 NRA의 막강한 로비능력이 대세를 좌우하리라는 전망이 우세

-이런 기대는 일단 성공을 거둔 듯하며 우선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그의 회장 선출을 대서 특필했고, 그의 「대(對) 정부 비난」 메시지를 생중계

○ 헤스턴은 지난 6일 시작된 총회에서 “미국인들이 이제 그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神)도 클린턴을 믿지 않는다”며 클린턴의 스캔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또 최근 학교내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이는 총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교육의 문제”라고 반박했으며

-그의 음성은 「신중하고도 나지막」한 바리톤이었고 그의 메시지는 호소력으로 가득차 공감을 환기

-헤스턴은 원래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로 분류돼왔고, 또 NRA 자체가 공화당과 밀착된 단체로서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총무는 총회에서 “이제 총기 소유권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에 지쳤다”며 “범죄인들에 맞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

○ 반면 조 록하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NRA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불편할 수밖에 없는 백악관과 NRA의 관계를 짐작케 하였고 그 한 가운데 헤스턴이라는 미국의 간판 원로배우가 등장한 셈

미, 어린이 100만명 총기휴대하고 등교

○ '97 ~ '98년 학기 동안 1백만명에 가까운 미국어린이들이 총기를 소지한채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유 에스 에이 투데이지가 '98년 6월 18일 보도

○ 이 신문은 비영리 마약예방단체인 「프라이드」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97만3천명의 어린이가 총기를 갖고 등교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오리건주·아칸소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어린이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조사에 따르면 또 총기를 소지한 채 등교한 어린이의 64%는 한달에 한번 꼴로 마약을 복용해 왔으며

-총기소지 이유에 대해서는 51%가 선생을, 63%는 다른 학생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미 켄터키주, 목사에게 권총휴대 허용

○ 미국 켄터키주의 목사와 교회 간부들의 예배당내 권총휴대가 지난 '98년 7월 15일을 기해 무기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휴대한다는 조건 아래서 합법화

-이같은 변화는 켄터키주 의회가 올해 총기휴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이뤄졌으며

-서머셋 그리스도 교회의 윌리 램지 목사는 남녀 성직자와 교회간부들도 권총을 휴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캠페인을 벌여온 것이 주효

- 램지 목사는 여러 교회가 헌금을 노린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부근의 교회들이 20여 차례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켄터키 교회협회의 넨시 조킴퍼 목사는 “예수께서 구도하실 것이다”라며 총기휴대 허용을 비난

미, 의사당서 총기난사

○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98년 7월 24일 오후 4시쯤 (현지시간) 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 경찰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

- 러셀 웨스턴(42)으로 신원이 밝혀진 범인은 이날 관광객들로 붐비던 의사당 1층 건물의 하원 공화당 부총무 톰 딜레이 의원 사무실에 침입,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 의회 경찰관들이 즉각 응사해 이 과정에서 경찰 2명과 범인, 여성 관광객 1명 등 4명이 총격을 받았으며

- 경찰은 부상자들과 범인을 즉각 워싱

< 범인은 40대 피해망상 환자 >

○ 미 의사당에 난입, 총기를 난사한 러셀 웨스턴은 중서부 일리노이주 벨메이어 출신의 백인으로 정신병환자

- '96년 여러 차례 “클린턴 대통령을 해치겠다”는 말을 해 정보기관의 「블랙 리스트」에도 올라 있었으며

- 내성적인 성격으로 항상 외톨이였던 그는 '80년대 중반부터 「피해 망상증」이 심해지면서 장애인으로 분류돼 연방 연금을 받았고

- 그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향 집과 자신이 개발중이라는 몬타나주 헬레나의 금광 지역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고

○ 그는 이웃의 위성방송 수신용 접시 안테나를 보면서 “연방정부가 인공위성을 통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이웃들이 전했고 최근에는 “정부가 내 광산에 지뢰를 설치, 금광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낸 뒤 “근거 없다”는 답신을 받아 불만을 표시

○ 그는 사건발생 하루 전인 23일 고향집에서 고양이 10여마리를 권총으로 쏘 죽여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아버지의 38구경 켈리버 권총을 들고 집을 나갔다고

턴시내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상한 경찰관 2명은 사망

- 범행동기는 아직 수사중이나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범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인물

○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있었으며 상원은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했으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의사당은 구경하러온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 딜레이 부총무의 대변인 존 피허리는 “오후 4시쯤 범인이 공화당 부총무 사무실에 들어와 총을 마구 쏘아댔으며 약 20발의 총성을 들었다”면서 “의회 경찰관이 즉각 응사하는 등 잘 대처해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

대테러기관, 초소형 권총 등 소형무기로 골치

○ 국제사회는 군사용 소형무기에 대한 통

〈 미, 의사당 피습 약사 〉

- 1835년 1월 = 하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중이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향해 한 정신병자가 저격했으나 빗나가 화를 모면.
- 1890년 2월 = 루이스빌 타임스지(紙)의 한 기자가 켄터키주 출신의 윌리엄 톨비 하원의원에게 총격, 톨비 의원은 이틀후 사망.
- 1915년 7월 = 상원 리셉션룸에서 사제폭탄 폭발, 범인은 1차대전 당시 연합국들에 탄약을 판매한 데 분노한 전직 하버드대 교수.
- 1932년 12월 = 한 괴한이 권총을 들고 하원에 침입, 멜빈 마스 하원의원(공화)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마스의원의 설득으로 투항.
- 1947년 7월 = 존 브리커 상원의원이 상원 건물 아래에 있는 지하철을 타려다 전직 의회경찰관으로부터 2차례 총격을 받았으나 빗나가 화를 모면.
- 1954년 3월 = 푸에르토리코의 과격분자들이 하원건물 구내에서 총격, 하원의원 5명 부상
- 1971년 3월 = 월남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원의원 휴게실에서 폭탄 폭발
- 1983년 11월 = 의사당 건물 2층에서 폭탄 폭발, ‘무장저항단체’는 이 사건이 미군의 그레나다침공 및 레바논사태 개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

제를 강화, 소총 등 경무기가 범죄자와 테러 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98년 7월 14일 세계 무기전문가들이 촉구

-21개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온 무기전문가들은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틀간의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요약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

-무기전문가들은 “소형무기통제의 1단계 조치는 내전에서 남겨지거나 냉전시대의 잉여물인 무기의 불법적인 이전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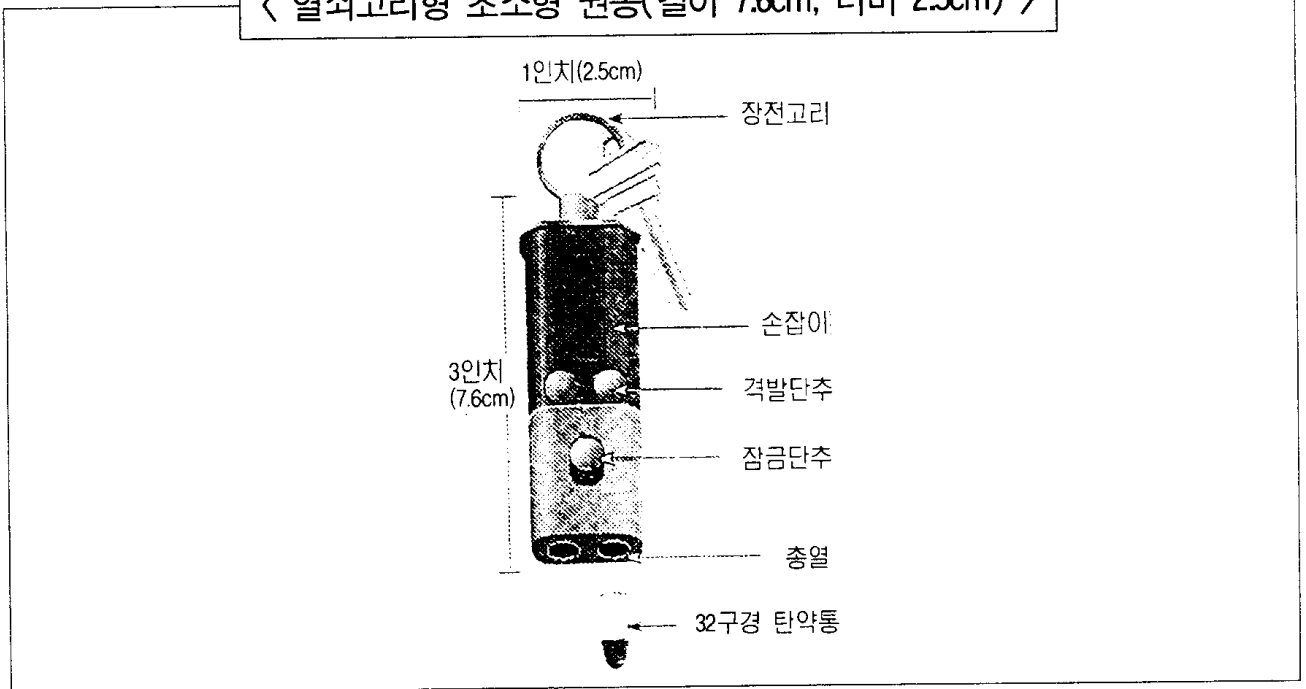
-경무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국제적 통제와 정보를 개선하고 무력분쟁을 겪은 관련국들이 비축분을 처리토록 지원할 것 등을 권고

-이들은 냉전시대에 대량생산된 소형무기 비축분이 폐기되지 않은 채 주로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동원해제된 병사들이 총기류를 휴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유엔은 군사용 소형 무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희생자의 90%가 민간인이며 이중 80%는 어린이들인 것으로 추정

○ 뉴욕 맨해튼에는 스파이용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들이 있고 유엔본부 부근에도 스파이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으며 주로 외교관들이 주고객인 이 상점들에는 각종 도청장치, 비밀카메라, 야간투시기, 비밀잉크 등 희한한 물건들이 많으며 무기들은 전시돼 있지 않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실정

< 열쇠고리형 초소형 권총(길이 7.6cm, 너비 2.5cm) >



-스파이용 특수 살상용 무기 제작기술은 구(舊)소련 KGB가 미국의 CIA보다 한수 위라는 평을 받았고 냉전 종식 후 실직 당한 KGB요원들이 최첨단 스파이 및 군사용 장비를 상용화해 돈을 벌고 있으며

-구소련의 스파이 카메라, 야간안경은 물론 원자폭탄에 사용되던 초정밀 시계까지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상태

○ 북한도 스파이용 특수무기 제작에서는 다른 나라에 지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독총과 독침으로

-'97년에 납파된 부부간첩이 소지했던 독총은 북한 노동당 작전부가 '95년에 개발한 것으로 외견상 파커만년필로 보이나 만년필 뚜껑을 돌리면 독극물이 든 특수탄환이 발사되고

-독침은 볼펜 형태로 볼펜 끝을 몸에 대고 누르면 독침을 통해 독극물이 몸에 주입되는 것으로 둘 다 맞으면 즉사하는 무서운 무기

○ 공항 금속탐지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 일회용ライター크기의 초소형권총도 유통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난감처럼 꺾이지만 성능은 뛰어난 32구경으로 실탄 2발을 장전할 수 있고 사거리 18m에 소음기까지 달 수 있고

-불가리아에서 제작돼 20달러에 팔리고 있어 항공기 납치나 테러에 사용될 소지가 커서 각국 경찰이 비상

Ⅲ. 治安語錄

쉬운 일상용어로 문서작성

○ “문장은 짧게, 수동태 문장보다 능동태 문장을, 단어는 일상 용어를 써라. 문서편집도 읽기 편하고 보기 좋게 해라.”

이는 작문시간 강의내용이 아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98년 6월 1일 연방정부 관리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며, 대(對)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문서가 읽기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미국관리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쉬운 일상용어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고, 또 이미 작성돼 있는 문서들도 2002년 1월 1일까지 모두 쉬운 말로 고쳐써야 한다고

○ 클린턴 대통령은 지시에서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98. 6. 3.>

속도위반

○ “2차대전 당시 전투기를 시속 6백 40km로 조종한 경험 탓에 종종 무의식중에 속력을

내는 습관이 있다.”

- 조종사 출신 영국의 한 노인,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22차례나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법정에 서자 자신의 조종경력을 감안한 선처를 호소하며. <'98. 3. 23.>

교통위반

○ “말단의 공무원이 법집행에 공정하니 영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 처칠 수상이 급히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가다가 교통신호를 무시, 경찰은 정중하게 경례를 한 후 딱지를 떼려고 했으나 운전사가 “저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처칠수상이다”라고 하며 다그치자 경찰은 태연한 표정으로 “약간 닳기는 했으나 우리 처칠수상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기어이 교통위반 딱지를 교부

- 국회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처칠은 연설에서 “말단의 공무원이 법집행에 공정하니 영국의 미래는 밝습니다”라고 경찰을 칭찬

폭탄테러

- 미 국 -

○ “테러세력들은 이곳에서 어떤 친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 빌 클린턴 미대통령,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내달 초로 예정된 북아일랜드 방문을 강행할 것이라며. <'98. 8. 17.>

- 케 나 -

○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테러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다

- 보나야 고다나 케냐 외무장관, 케냐 주재 미 대사관 폭탄테러를 계기로 나이로비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98. 8. 20.>

어린이 폭력

○ “미국의 미취학어린이들은 연평균 5백건의 대단히 위험한 폭력장면에 노출돼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바버라 윌슨교수, 미 TV의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중 폭력장면 출현 비율이 67%나 되고 이 가운데 어린이들이 쉽게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 저지르는 범죄가 40%나 된다면서. <'98. 4. 17.>

여성의 폭력행사 가능성이 더 높다

○ “폭력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 랭커셔대의 존 아처 심리학교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와 다툰 때 따귀때리기, 발로 차기, 물어 뜯기, 목조르기, 무기사용등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98. 4. 20>

축구팬 패싸움

○ “패싸움은 누구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마르세유에서 벌어진 자국민들과 튀니지인들간 싸움을 보고 받고. <’98. 6. 17.>

인도네시아 시민폭동

○ “시민들은 주저없이 곤봉, 창, 칼, 가위 등으로 무장해 스스로를 보호하라”

- 수티요소 자카르타 시장, 인도네시아에 다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며. <’98. 8. 17.>

컴퓨터 범죄

— 일 본 —

○ “컴퓨터 보급에 따른 하이테크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경찰」을 설립해야 한다”

- 세키구치 유코 일본 경찰청장관, 1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하이테크 범죄수사에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하며.<’98. 6. 3.>

— 인 도 —

○ “그들의 보안은 취약하다. 기밀정보를 기계에 저장하려면 최소한 보안에 철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인도 핵개발의 중추인 바바 핵연구센터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한 해커, 6일 14분만에 연구소의 컴퓨터에 들어가 과학자들이 주고 받은 수천개의 전자우편을 훑어보고 홈페이지에 반핵메시지도 남겼으며.<’98. 6. 8.>

— 미 국 —

○ “국방부의 컴퓨터시스템에 침투한 해커는 「영웅이나 전자 천재가 아닌 범죄인」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 미국 하원 국가안보위 소속 허버트 배이트맨 의원, 정부의 중요한 컴퓨터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98. 6. 13.>

약물복용

— 싱가포르 —

○ “아시아 경기침체로 마약남용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싱가포르의 워칸생 내무장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마약밀매로 돈을 벌

려고 하거나 현실 도피를 위해 마약을 복용한다며. <'98. 4. 15>

— 독 일 —

○ “약물 복용은 이를 닦는 것처럼 하루 일과의 하나였다”

- 구동독의 한 국가대표 선수, 구동독이 국제경기에서 메달 획득을 위해 선수들에게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시켰다고 폭로하면서. <'98. 4. 22>

— 영 국 —

○ “마약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의학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영국 GW제약회사의 연구팀장이 국가로부터 처음으로 마약류에 대한 의학용 연구허가를 얻은뒤. <'98. 6. 13>

갱 두목 성공스토리 자비(自費) 영화제작

○ “나도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 마카오 최대 범죄조직의 두목인 완 쾅고이, 자신이 결코 ‘무자비한 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영화 ‘카지노’의 제작비용을 냈다면서. <'98. 4. 4>

절 도

○ “우리가 도둑의 손을 절단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관리, 수도 카불에서 공개적으로 절도범의 오른손을 절단하기 직전 군중을 향해. <'98. 4. 5>

외국인 납치

○ “외국인들은 정말 가치있는 존재다. 그들은 상아와 비슷하다”

- 소말리아의 한 교사, 소말리아에서는 외국인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다라면서. <'98. 4. 20>

금진주의 우익세력의 비밀조직체계 유지

○ “금진주의 우익세력의 미디어산업은 범죄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독일 금진주의 우익세력 척결을 위한 경찰특수대 ‘바이킹 특별위원회’의 토마스 간츠 대장, 독일 금진주의 우익세력이 CD 비디오 잡지 등 미디어를 통해 젊은층에게 우익이념 및 인종 증오심을 확산시키고 그 수익금으로 철통같은 비밀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98. 6. 14>

ICC 설립위한 유엔회의

○ “앞으로 설립될 국제형사 재판소(ICC)에서 미국인이 처벌되지 않도록 100% 보장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에 대한 사법권을 수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제시 헬름스 위원장 대변인,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ICC 설립을 위한 유엔회의에서. <98. 7. 4>

빌 클린턴 대통령 명예사임 촉구

○ “미연방수사국(FBI)이 자기 나라 대통령의 정액을 추적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루돌프 아우스슈타그 슈피겔지 발행인, 17일자 슈피겔지에 실린 「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섹스스캔들을 일으킨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명예롭게 사임할것을 촉구하며. <98. 8. 19>

에이즈 바이러스

○ “이 웨이터가 저지른 범죄적 행동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불가피하다”

-키프로스 남부 항구도시 라르나카의 테프크로스 에코노모 판사, 에이즈 바이러스를 2명의 여인에게 전염시킨 웨이터에게 9일 1년형을 선고하며. <98. 6. 11>

미성년자 성행위 금지 판결

○ “미성년자는 성행위 할 권리 없다”

-미성년자들은 자연적으로 느끼는 성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행위를 즐길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최근 판시.

-법원은 14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체포된 16세 소년이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성에 관한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98. 4. 14>

비아그라 시판후 영업실적 증가

○ “여기에 자주 출입했다 발길을 끊은 남자들이 많았으나 그들이 요즘 다시 돌아오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카슨시의 포주 조 리처드, 비아그라 시판이후 영업실적이 10% 정도 증가했다고 즐거워하며. <98. 6. 16>

남성 나체쇼

○ “가는 곳마다 여성이 희롱을 받고 있으나 여기서만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상하이에 들어선 중국 최초의 남성나체쇼 클럽 지배인, 여성들이 이곳에서 쉬고 즐기기를 바란다며. <98. 7. 25>

IV. 프랑스 월드컵 治安

광기어린 팬들로 경비에 고심

□ 위험한 경기는 특별경계

○ 프랑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 특별경계가 필요한 3대 대결을 ①네델란드 대 벨기에전, ②미국 대 이란전, ③콜롬비아 대 영국전으로 보고 경비대책에 만전

□ 영업시간 제한 주류판매 금지

○ 홀리건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이 있는 지역은 경기당일 술집의 영업시

간을 23:00까지로 제한하고 주류의 판매와 휴대 그리고 거리에서의 음주를 금지

□ 국제소매치단도 집결

○ '아드리아노S'로 불리우는 이탈리아 소매치기집단을 비롯하여 날치기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모로코의 라키드,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폭력소매치기단도 대거 잠입

○ 아드리아노S는 무역업과 컨벤션, 월드컵 관련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라키드는 스위스제네바의 상업계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등 어엿한 직업인으로 위장하고 있어 프랑스 경찰당국이 고심

<p>① 네델란드 대 벨기에</p>	<p>-아시아의 한·일전 양상, 두 나라는 두나라가 대전시 결과에 승복치 않았고 적대적 감정도 있어 경기장 내 외의 화약고 -특히 홀리건들이 대거 참가하고 네델란드는 배정된 6,000매의 입장권을 훨씬 초과하는 20,000매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더 긴장</p>
<p>② 미 국 대 이 란</p>	<p>-미국관중들은 축구보다는 관광에 더 관심이 있지만 미국인들의 이란에 대한 상존하는 적대감이 문제 -이란 응원단이 경기도중 미국을 자극하면 통제할 수 없는 불상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p>
<p>③ 콜롬비아 대 영 국</p>	<p>-조직위측은 광적인 리더급 영국홀리건 65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입국을 금지하였으나 국경을 넘어 올 수 있는 곳은 수 없이 많은 것이 현실 -프랑스 경찰당국은 영국경찰 전문가팀의 공조하에 발견 즉시 영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휴효책이라고 판단</p>

□ 테러용의자 색출작전 전개

○ 프랑스 경찰당국은 '98년 5월 26일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경찰의 대테러팀과 공조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 등 테러조직을 급습하여 77명을 체포하고 관련 서류와 자금을 압수

○ 체포된 테러리스트중 알제리에 본거지를 둔 GIA는 도청을 막기 위해 축구용어를 암호화하여 통화해 왔다하며 예를 들어 「뛰어난 감독」은 GIA총책임자, 「아디다스」와 「리복」은 무기의 종류, 「주축이 되는 선수가 병에 걸렸다」는 GIA간부의 체포등이 었다고

□ 월드컵 관련 처벌법규 특별히 마련

○ 프랑스 경찰 및 검찰당국은 ①불꽃놀이 기구 소지등 가벼운 사안은 50,000~100,000프랑의 벌금, ②위험한 물건을 경기장에 던져 경기를 방해하는 등 난동이 심한 사안은 1~3년의 징역형, ③인종차별폭력등 중요범죄행위는 2년간 입국금지의 해외추방과 최고 5년간 경기장 접근금지형 등의 특별처벌대책을 시행

□ 32개국 선수단 24시간 경호

○ 선수단 경호는 경찰소속 대테러팀 RAID, 군경찰소속 EPIGN이 전담하며 선수단과 같은 호텔 같은 층에서 함께 먹고 자며 연습장이나 경기장에도 함께 나가는 24시간 동행시스템

○ 또한 대회개시 1개월전에 경기장과 그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한 다음 무장한 공수대원을 배치하여 경비를 유지

홀리건(축구장 난동)과의 전쟁

○ 프랑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33일간의 대회기간중 또 하나의 전쟁인 홀리건(HOOLIGAN)과의 대결을 전개

-극성 축구팬들의 난동은 일찍부터 예상하고 대회조직위와 프랑스 경찰당국이 종합대책을 마련, 수차례의 도상훈련과 관계국과의 공조에 의한 홀리건 입국통제를 실시

-그러나 개막 4일만인 6월 15일 잉글랜드 대 튀니지전이 벌어진 마르세이유에서

· 경기시작 10시간전에 150여명의 튀니지인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300여명의 영국인들을 급습, 영국인 1명이 목동맥이 끊어지는 등 20여명이 다치고 영국인 80여명을 체포(영국인 5명 및 튀니지인 1명 추방)

· 경기후 잉글랜드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극성팬들이 튀니지팬들을 상대로 한차례 장외축구전쟁을 야기,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

- '98년 6월 16일 독일 경찰당국은 6월 15일의 미국-독일전에 앞서 경찰을 공격한 독일홀리건 2명을 체포, 3개월형을 살게되었다고 발표

- 홀리건의 원조인 잉글랜드팬들은 그후

에도 난동을 그치지 않았으나 정작 큰 난동을 벌인 극성팬은 독일인들로서 6월 21일 랑스에서 벌어진 독일 대 유고전이 2:2로 종료된 후 독일홀리건들이 소요를 진압하던 프랑스경찰을 집단폭행하여 사망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초래 동료3명과 함께 바리케이트 뒤에서 경비중 독일홀리건들이 땅바닥에 쓰러트리고 흉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 이 프랑스경찰관은 헬리콥터로 리의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

· 프랑스 경찰당국은 6월 24일 독일홀리건 마르쿠스 바르네커 등 3명을 체포하였고 프랑스북부 배틴시 법원은 징역 1년형과 형기 종료 후 2년간 프랑스방문금지를 처분

· 독일 경찰당국도 7월 7일 이사건과 관련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속에서 뇌사상태에 이른 프랑스경찰관을 구타하는 독일인 청년 토비야스(24)를 찾아내어 살인혐의로 체포하였으며 무기징역형을 언도 받을 것으로 예측

□ 독일인들, 프랑스 뇌사경찰 돕기운동 벌려

○ 독일 최대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빌트」지는 6월 24일 올해 44살로 두 아이의 아버지인 뇌사상태의 프랑스경찰관을 돕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28,000달러를 기부하고 1면에 성금모금계좌개설을 알렸으며 벨를린경찰노조 등이 이에 호응

□ 프랑스 대통령, 홀리건난동 성토

○ 6월 23일 지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독일홀리건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프랑스 경찰관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과 관련 엘리제궁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무모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번 사건으로 월드컵대회가 엉망이 되었으며 스포츠정신도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독일총리, 독일홀리건 난동을 국가적 수치로 규정

○ 6월 23일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전날 발생한 독일홀리건들의 난동이 “명백한 국가적 수치”라고 규정하면서 “용의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언명

□ 홀리건난동 계속되면 2006년 영국유치 어려워

○ '98년 6월 16일 영국축구협회 필 카링 상무관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홀리건들의 난동으로 영국은 2006년 월드컵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8,2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폰서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영국축구협회가 홀리건에 대한 확실한 제재조치로 FIFA에 신뢰감을 심어 주지 않을 경우 영국의 월드컵 유치는 물건너 간 것과 같다”고 주장

○ 한편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6월 18일 하원연설을 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홀리건들을 뿌리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 신사의 나라 영국인 축구장의 무법자 홀리건과의 전쟁을 선포

- 홀리건의 난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옷을 벗는 것은 예사로서 복부에는 영국국기인 유니언 잭 문신을 새기고 머리의 반 정도만을 박박 민 몰골로 괴성을 질러대며 폭력을 일삼는 것이 특징

- '80년대에는 20대 초반의 스킨헤드족이나 실업자 또는 블루칼라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90년대에 들어 와서는 점잖은 직장인들도 다수 합류한 상태

○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영국의 홀리건들이 귀국하는 대로 해고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영국산업연합회(CBI)는 제제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우려

□ 유럽전역과 남미까지 번져

○ 현재 홀리건의 난동은 영국을 벗어나 네델란드, 독일은 물론 남미에까지 번지고 있으며 울분을 발산하려는 실업자나 빈곤층보다는 이들에 가세한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은 축구팬들이 더 문제

○ '60~'70년대에는 영국내에 한정되었으나 '80년대초부터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한 홀리건난동은

- '85년 벨기에의 브뤼셀 하이젤 경기장에서 열린 영국리버풀 대 이탈리아 유벤투스간의 UEFA컵 결승전에서 양측 응원단이 출

동하여 39명이 사망 → 희생자의 대다수가 이탈리아인이었고 이로 인해 영국프로팀들은 '91년까지 UEFA대회 출전금지처분

- '89년 4월에는 영국의 힐스보로경기장에서 팬들이 서로 밀고 당기다가 95명이 압사

- '97년 3월에는 네델란드에서 라이벌팀 팬 수십명이 집단결투를 벌려 1명이 피살되는 사례도 발생

□ 영국특유의 억압적 사회분위기가 원인?

○ 일부에서는 영국홀리건의 구성을 영국에 특유한 억압적 사회분위기의 탓으로 진단하면서

- 영국만이 고유하게 지지되고 있는 보수적 분위기에서는 별다른 스트레스해소책이나 욕구배출구가 없어 스포츠에 광분하는 것이고

- 아울러 음주에 관대하고 배타적인 문화가 홀리건발생에 일조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잉글랜드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착안하여 이를 영국기질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

□ 영국, 「축구경기 관전법」까지 제정

○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구장안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영국에서는 '89년에 축구경기 관전법도 제정

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 이번 프랑스월드컵을 앞두고 프랑스 경찰당국은 홀리건이 많은 유럽 5개국 치안당국 자회의까지 열면서 홀리건 신고전화 설치, 리더격 홀리건 65명의 입국금지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상당수의 경찰관들을 파견시켰으나 속수무책 → '97년 10월 이탈리아 경찰당국이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간 월드컵 지역예선 최종전을 앞두고 영국과 합동으로 홀리건 로마 봉쇄작전을 폈으나 역시 실패

□ 영국, 홀리건 밀고전용전화도 운용

- 영국 경찰당국은 프랑스월드컵 개막전

날인 6월 9일부터 폐막 다음날인 7월 13일까지 도버해협 해저터널을 주행하는 특급열차 「유러스타」에서의 알콜음료 판매는 물론 반입을 금지시키고 술은 식당차와 1등실에서 종업원의 서비스를 받는 상태에서만 마시도록 조치

-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이 유러스타에서까지 알콜음료를 제한한 것은 바로 홀리건대책의 일환

- 영국홀리건들이 유러스타안에서부터 취하여 프랑스의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릴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며 홀리건 밀고전용전화까지 개설

〈이색적인 롤리건(ROLIGAN)〉

-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덴마크 응원단은 「롤리건」 - 롤리건은 덴마크어의 '조용하다', '질서정연하다' 라는 의미의 「롤리그」(ROLIG)에서 파생된 단어
- 덴마크 축구팬들은 롤리건은 「맥주와 노래와 춤을 곁들여 축구를 즐기지만 홀리건처럼 미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신조」라고 강조
- 실제로 6월 25일 리옹에서 덴마크가 프랑스에 1:2로 졌으나 덴마크 롤리건들은 시내로 나와 축제분위기를 만들었으나 난동은 단 한건도 없어 이를 지켜본 프랑스경찰관들이 "과연 롤리건"이라고 감탄

월드컵도박의 실태

□ 프랑스월드컵에 판돈 60조원

- 인터넷이나 온라인 망을 통하여 월드컵 경기마다 돈을 걸고 예상결과가 맞으면 배당

률에 따라 돈을 회수하는 월드컵도박은 관련 사이트가 350개나 넘으며 베팅업체는 틀린 내기꾼의 돈을 거두어 일정률의 수입을 뺀 다음 상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업중

- 축구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곳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의 축구리그, 프랑스의 축구리그 등 세계 5대 축구리그가 몰려 있는 유럽이며 유럽은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가 안정되어 도박이나 복권이 아니면 일확천금의 기회도 없는데다 축구열이 높기 때문

□ 영국에서 발달

○ 축구도박은 축구가 태어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였고 지금도 종주국의 입장을 견지, 75년전에 시작된 축구도박의 한 종류인 폴스게임은 매주 3,000,000명이 참가

○ 1923년전 폴스게임을 도입한 리틀우지사는 연간 3조 5천억원(22억 8천만 파운드)의 매출과 426억원(2,370만 파운드)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 리버풀에 본사를 둔 리틀우지사는 매주 5,000,000만장의 쿠폰을 접수하여 평균 최고 상금은 18억원(1,000,000파운드)을 지급하는 등 영국 폴스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 국제적 베팅업체인 SSP인터네셔널의 자회사 APMS사와 함께 합작기업 타이거스 폴스를 설립하고 아시아 베팅산업 진출을 기도 중

○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베팅회사는 비론스사로

-1925년 사업을 개시하여 1974년에는 호주정부와 손잡고 호주에 진출하였으며

- '78년에는 뉴욕 주정부와 제휴하여 뉴

욕스테이트 로터리라는 복권사업을 시작,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복권사업 로토(Lotto)의 모체가 되었고

- '89년에는 호텔체인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레드부룩스사에 합병되어 베팅사업을 계속 중

□ 이탈리아에서 매주 1억건의 베팅

○ 유럽에서 축구열기가 가장 높은 이탈리아는 폴스게임 베팅건수도 세계 최대규모여서 매주 1억건의 베팅이 이루어지며

- 스포츠 육성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부기관인 코니(CONI)가 운영하고

- 전산화에 필요한 간단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매출액의 85%를 배당받은 에이전트들은 주로 카페나 간이술집이며 공항 역 고속도로 휴게소와 소매점에서도 베팅이 가능

○ 또한 이탈리아 3대 일간지와 주요 TV 방송사도 「토토칼치오」라는 베팅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최다 에이전트를 보유한 SSP 인터내셔널사는 인터넷을 통해 월드컵베팅사업을 전개중

□ 스웨덴에서도 성행

○ 스웨덴에는 스벤스카 스펠과 스트룩팁스가 있으며

○ 스트룩팁스는 1934년부터 스포츠베팅이 시행된 스웨덴에서 유일한 폴스베팅사업으로서

- 베틱소매상 - 뉴스에이전트, 주유소, 미니 슈퍼마켓-이 전국에 6,000개소나 있으며
- 베틱소매점의 반 정도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베틱을 접수
- 세빈스카 스펬은 1920년부터 영국인에 의하여 보급되어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34년 스웨덴인 팀스트랄스트가 축구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스웨덴지역 독점사업권을 획득한 업체이며
- 당시 스포츠베틱은 결과를 예측하는 스트룩팁스, 스코어를 예측하는 시퓌팁스, 세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폴스팁스로 나뉘어져

있었고

-1980년까지 팀스트랄스트라고 불리우던 회사이름을 내셔널로터리와 합병하면서 공공 회사인 스벤스카 스펬로 변경

□ 베틱업체를 사회사업에 투자

- 사행성이라는 비판을 회색시키기 위하여 스포츠베틱업체들은 많은 사회사업을 하고 사회사업에 기부하고 있는 실정
- 리틀우즈사는 '96년에 2,200만 파운드를 축구재단에 기부하고 4,700만파운드를 체육 예술기금으로 내놓았으며 프로축구협회 및 경기

〈 가장 인기있는 폴스베틱 〉

- 폴스베틱은 상금규모나 표기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뿐이며 기본게임방식은 대동소이하고 세계 최대업체인 리틀우즈사의 폴스게임이 모델
- 리틀우즈사의 폴스게임은
 - 한 주간에 이루어진 영국 프리미어리그 49경기 가운데 무승부경기 8개를 예측하는 게임이며
 - 가까운 소매점에 비치된 복표에 무승부 8개 경기를 표기해 놓으면 리틀우즈사 소속 복표수거요원 21,277명이 매주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수거(7,254명의 직장방문 수거요원도 운용)하며 고객이 우편이나 전화로 접수시키는 것도 가능
 - 수거된 복표들은 34개 지역사무소에서 모아 중앙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단말기에서 전산처리되며
 - 경기결과가 나와 우승복표가 확인되면 상금은 우승자에게 수표로 전달되는 시스템
- 이외에 최근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스타트 더 볼 게임]으로 매주 60만장 이상이나 등록되는 이 게임은 경기사진에서 축구공을 지은 후 선수들의 위치와 표정을 보고 축구공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매주 150,000파운드를 상금으로 지급

장건설 지원에도 열심

○ 이탈리아에서는 전체베테잉액의 35%가 상금으로 배분되고 65%는 재무부, 축구연맹 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스포츠기구에 배분

○ 스웨덴에서는 스벤스카 스펬의 수익금 일부가 스웨덴 재정부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실내축구경기장과 스포츠박물관 건설에 사용

〈 월드컵 도박열풍 〉

- 태국정부는 '98년 6월 8일 전국 교도소장에게 6월 10일~7월12일간의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교도소내 도박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의 고교와 대학 당국자들에게 월드컵축구경기 내기행위를 단속하도록 당부
- 태국 경찰당국은 월드컵 개막 5일간에 109명의 월드컵 도박꾼들을 체포한데 이어 6월 15일에는 229,000달러가 걸린 도박꾼 명단을 압수, 태국에서는 이번 월드컵 도박규모가 6억 8,2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
- 베트남에서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어느 팀이 먼저 ①슛을 날리는가, ②골을 터트리는가, ③엘로우카드를 받는가, ④페널티킥을 누가 차는가 등을 알아맞추는 내기와 ⑤선수들의 속옷색깔 알아맞추기 등 기발한 도박이 성행

지구촌의 월드컵 사건사고

□ 아르헨티나, 야외스크린 설치 금지

○ 아르헨티나경찰은 8강권 단체관람용 야외스크린 설치를 금지, 이는 아르헨티나팀이 잉글랜드팀을 꺾는 모습을 본 축구팬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 경찰과 충돌하여 70여명이 다치고 128명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 그 이유

□ 네델란드, 수배범체포 호기로 봐

○ 네델란드경찰당국은 수배범들이 월드컵

을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지명수배자의 집 주변에 경찰을 집중배치

□ 영국축구팬, 프랑스배우 살해

○ 영국의 런던에 사는 기술자 폴 버치(43)는 영국축구팀이 패배한 6월 30일 리옹행 열차안에서 33세의 프랑스배우 에릭 프라세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 7월 3일 경찰관과 격투 끝에 체포된 그는 프라세가 옷자 축구에 진 영국인을 비웃는 아르헨티나인으로 착각했다고

□ 독 극우파, 엉뚱한 화풀이

○ 신 나치주의자 6명은 7월 4일 독일팀이 크로아티아에 완패한 것에 격분, 귀가중이던 포르투갈 출신 노동자 5명을 쇠파이프와 체인으로 집단구타하였으며 작센주경찰은 7월 16일 이들을 체포

□ 칠레, 16강 진출에 광란상태

○ 6월 23일 칠레 축구팀이 36년만에 16강에 진출하자 수만명의 시민들이 일시에 수도 산티아고 중심가로 쏟아져 나와 한때 무정부상태를 연출

○ 시민들은 국기로 거리를 뒤덮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경음기를 울리며 트럼펫을 불어대었고 서로 부딪혀안고 춤을 추는 등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경찰은 기마대까지 동원하여 겨우 진정시켰으나 이 혼란을 틈타 불량배들이 은행과 슈퍼마켓을 털기도

□ 태국, 소년범 난동부리고 강간범 탈주

○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50Km떨어진 나콘 라카시민, 교도소에서 400여명의 청소년범들이 6월 17일 월드컵경기 TV중계를 보며

라며 집기 등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는 난동을 부렸다고

○ 또한 남부 라용의 한 경찰서에 7월 5일 수감되어 있는 강간범, 마약범 등 8명의 흉악범이 유치장 간수가 독일 대 크로아티아전 TV중계를 보느라고 넋을 뺏긴 틈을 이용하여 탈주

□ 멕시코팀, 자국기자를 스파이로 오인

○ 6월 11일 멕시코팀은 연습장면을 찍고 있는 사진기자를 발견하고 전력을 탐색해내려는 상대팀 첩자로 생각, 경호경찰을 동원해 체포하였으나 그 기자는 멕시코의 주간지 노티엑스의 기자였다고

□ 코트디부아르, 월드컵 보러 TV훔쳐

○ 아프리카서부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TV 2대를 갖고 있는 절친한 친구에게 월드컵축구경기 기간 중에만 TV 1대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해 아예 들고나오다가 하녀에게 들켜 3개월간 철장 신세가 되었다고

하이테크 범죄대책

하이테크범죄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시간적·지리적 무제약성으로 “범행현장과 피해발생장소가 지리적으로 떨어지고, 피해가 동시에 여러개소에 발생”하는 등 일반범죄와는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글로벌화가 급진전하여 산업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지대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하이테크범죄대책 중점 추진 프로그램]과 미국의 [새로운 위험성을 나타내는 음모의 WEB]을 정책자료로써 소개하였으니, 향후 하이테크 범죄대책수립에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I. 하이테크 범죄대책 중점 추진 프로그램(일본)

1. 배 경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보급은 세계규모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일본정부에서는 1994년 8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95년 2월에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또 1997년 9월, 동 추진본부에 「전자상거래 등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1998년 5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에는 최

종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에 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컴퓨터기술, 전기통신기술을 악용한 하이테크 범죄의 발생 건수의 증가에 더하여, 작년 이후,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외에, 1997년에 발각된 대형 전기통신사업자연구소에 대한 부정접속 사례와 같은 부정접속이 다발하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현저해 지고 있다. 1996년 5월 미국회계검사원(GAO)의 보고서는, 미국 국방성(DoD)의 컴퓨터시스템이 1995년 1년간에 약 25만회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상의 범죄, 테러리즘은 국가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일본정부에서는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이나 전자상거래등 검토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서,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써 보안범죄대책을 상정하여, 제142회 국회 시정방침연설(1998년 2월 16일)에서 내각총리 대신은 「하이테크범죄 등 정보화를 둘러싼 諸問題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표명하고, 하이테크범죄대책을 중요정책과제로 위치를 부여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범주에서는, 1997년 6월에 개최된 덴버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하이테크범죄에의 대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선정되었다. 이어서 1997년 12월 미국에서 G8사법 내무각료급회담이 개최되어, 24시간 체제의 신고체제의 설치, 훈련된 장비취급 인원의 배치, 법제도의 재평가,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중에 1998년 5월 영국에서 개최된 버밍검정상회의에서는 하이테크범죄대책을 포함한 국제조직범죄대책이 주요의제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이테크범죄대책에 관해서는, G8 사법 내무각료급회담에서 합의된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의 신속한 실시가 수뇌부에 새삼확인되었고 「증거로서 전자데이터를 취득하고,

제시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적인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국제적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인터넷 및 다른 새로운 기술의 악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처하는 것에 이바지한다」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더욱이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의 진척상황을 차기 정상회담에 보고하도록 각국 관료에게 요구함으로써 향후의 보강체제의 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정보통신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를 목전에 두고, 일본정부는 하이테크범죄 대책의 새로운 추진은 급선무이고, 경찰로서도 종래부터 진행해온 시책에 더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다음 중점시책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시 책

가. 사이버경찰의 창설

(1) 내셔널센터(HITEC)의 설치

하이테크 범죄는 그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구사되기 때문에 범행수법의 해명, 수색, 압류, 압수된 전자적기록의 해석 등의 수사활동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고도의 최첨단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 하이테크범죄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시간적, 지리적인 무제약성으로 「범행현장과 피해 발생장소가 지리적으로 떨어진다.」 「피해가 동시에 여러장소에서 발생한다.」등 일반범죄와는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하이테크 범죄의 수사는, 하나의 도도부현경찰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찰청에서 도도부현경찰의 수사 활동을 정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서 하이테크범죄도 국경을 넘어서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각국간에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력확보가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이테크범죄의 특성을 기초로 그 급격한 증가에 정확하게 대처하고, 사이버 테러 등의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고도의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통하여 도도부현경찰을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이버폴리스」(Cyber-Police)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셔널센터(HITEC : High-tech-crime Technical Expert Center)를 경찰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하이테크범죄에 관한 경찰 각 부문에의 기술적지원

· 현장임장 등에 의한 도도부현경찰의 하이테크범죄수사에 관한 지원

· 암호 등에 의하여 은닉된 정보의 해독 기술의 연구 개발

· 초고속연산용 컴퓨터 등에 의한 은닉 정보의 해독 실시

· 기술적 수사수법의 개발

· 하이테크범죄에 관련되는 도도부현경찰의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②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하이테크범죄에 관하여 경찰청이 행하는 국제수사협력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

· 24시간 신고체제

· 외국 경찰행정기관과의 정보교환

③ 하이테크범죄에 관한 기술적 조사 분석

· 하이테크범죄에 사용된 기술의 조사

분석

· 컴퓨터 및 정보통신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적조사

·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현황조사

(2) 하이테크범죄 전종수사체제의 확립
하이테크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보급과 함께 증가,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여러 도도부현에 걸쳐서 감행되거나, 국제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많고 그 대부분이 광역적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커그룹의 관여가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사건단서정보의 수집에 노력하는 동시에 사건발생시의 경우에 범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커그룹이 관여한 광역적 하이테크범죄의 수

사임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각 도도 부현경찰에게 하이테크범죄 수사지도관과 그 실행조직을 설치한다.

또 최근 국내외의 테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사이버테러가 현실의 위협이 되어 있다. 거기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테러조직의 동향과약등 단서정보의 수집에 노력하는 동시에, 수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형 테러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요한 도도부현경찰에게 사이버테러대책반을 설치한다.

나아가 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수사협력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설치된 24시간 체제에 있는 신고체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각종 교양기회를 통하여 하이테크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한다.

나. 부정접속 대책법제

컴퓨터 네트워크상 이용자의 본인확인인 사용자전용 ID, 패스워드 등의 이용자식별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용자식별정보의 도용에 의한 부정접속이 행해진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익명성의 입수가 가능하게 되므로 부정접속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회경제활동의 의존도의 고조를 감안하면, 하이테크범죄에 의한 피해는 몹시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그 수단에

사용되는 부정접속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필요가 있다.

또 부정접속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것은 G7국가중에서는 일본뿐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이 국제조직범죄의 도피처가 될 우려가 강하다.

이러한 정세를 기초로하여, 다음 사항에 포함된 부정접속 대책법제의 정비에 관계성정이 일체가 되어 법제작업에 당하고 있다.

(1) 부정접속(정규의 컴퓨터이용자의 식별 정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그 사람의 명의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등)의 금지와 이것에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

(2) 이른바 ID실 등의 부정접속을 조장하는 업무의 규제

(3) 부정접속을 방지 수사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로그화일 보존등)

다. 산업계와의 제휴

익명성, 무흔적성, 지리적 시간적 무제약성이라는 네트워크의 특성은 하이테크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고 있어 경찰력의 강화만으로 금후 예상되는 하이테크범죄의 증가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도 정보통신사회의 실현에 즈음하여서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관점과 경제적 관점과의 밸런스를 도모하면서 양자의 수요가 융합된 조직을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등

산업계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산업계와의 협력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피해자의 상담에 응하여 홍보계발, 관계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의 구축 등을 행하는 정보보안고문을 도도부현경찰에 설치함과 동시에 다음내용과 시책을 ACT2000(Awareness of counter Cyber Terrorism and other high-tech-Crime2000)으로 명명, 이것에 기초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제휴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계의 하이테크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책에 관한 구체적 조언과 지도

(2)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하이테크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책에 관한 홍보와 계발

(3) 하이테크범죄 및 사이버테러의 수사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대화의 추진

라. 국제수사협력을 위한 규칙제정

하이테크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에 관련되는 정보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가 전송되고, 복사되고, 소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 수사기관이 특별히 신속한 국제수사협력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이테크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과정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단말기로부터 외국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내의 데이터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등 국내 수사가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각국간의

국가주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조요청의 실행에 앞서 행해지는 증거보전, 국경을 넘는 수색이나 데이터 소재국이 불명인 경우의 수색에 관한 실행가능한 해결책에 대하여 관계성청과 제휴하면서, 국제적인 검토, 개발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새로운 국제수사협력을 위한 규칙제정을 추진한다.

II. 새로운 위험성을 나타내는 음모의 WEB(미국)

- 가상공간을 위요한 범죄의 현상과 보안대책 -

1. 미국의 네트워크 침입의 現狀과 그 被害

사례1 대담한 침입자(기밀기관에 대한 조직적 공격)

펜타건(미 국방성),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 校) 등의 연구기관을 비롯한 기밀기관의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數週間に 걸쳐 고민하고 있었다. 탐지된 공격대상이 極秘로 취급되고 있던 시스템이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국방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여전히 펜타건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장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FBI의 컴퓨터범죄 그룹의 조사관들은 대담하게 오래 끌어 온 침입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디지털의 迷路에서 기듯이 깊숙히 파고 들어가 잠복하였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추적한 자는 누구였을까.

놀랍게도 처음에 걸려든 것은「마키아벨리」와 「츄쇼트」라는 2명의 캘리포니아 고교생이었다.

지역의 인터넷 제공자가 멋지게 그들을 침입자로 特定하고 나서 2명이 살고 있는 가택에 대하여 강제수색이 행하여졌다.

인터넷 제공자는 기꺼이 FBI에 협력하였다. 인터넷 제공자는 自社가 제공하는 專用線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MIT프라즈마 연구실에 해커 침입을 하고 있다고 통고받았다. 더욱이 미국 공군의 요구에 의하여 재판소로부터의 裁定까지 받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곧 2명의 해커 소년은 매스컴의 寵兒가 되었다. WEB 관련 잡지의 인터뷰에서 컴퓨터 침입을 하게 된 動機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다, 권력”이라고 해커에 전형적인 허세를 부리는 대답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펜타건이 경험한 「가장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공격」이 단 2명의 고교생의 짓이었을까. 꼭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소년 2명의 배후에는 Ehud Tenebaum, 자칭 「아날라이저(analyser)」라는 18세의 難讀症의 이스라엘인 지시자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곧 이스라엘당국에 의하여 自宅謹慎

하도록 되었으나 자신의 은퇴가 닥쳐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이미 이스라엘 의회(Knesset)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이트에 침입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같은 디지털 모험담은 歸家중에 읽는 신문의 一面記事의 표제를 재미있게 하여 주지만, 보잘것없는 시스템공격만으로도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날라이저」와 공범소년의 중대하고 장기적인 공격은 조사에 드는 비용만해도 대략 수백만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악의가 없을지라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최근 사건 중에는 메사츄세츠 주의 소년이 100세대의 전화회선 및 소규모의 공항의 중앙지령탑을 마비시켰다. 인터넷 강도는 흔적이 희미하고 온라인범죄수사는 돈과 시간이 걸린다.

사례2. 「콘돌」 최후의 飛行 (전설적인 해커는 이렇게 체포되었다)

케빈·미트닉, 별명「콘돌」은 1981년 이후 수많은 컴퓨터관련 범죄로 기소된 미국의 가장 전설적인 해커이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의 보호감독하에 있다. 그의 최후의 해킹소동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추적으로부터 무엇이 야기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94년 크리스마스 날, 가석방의 위반으로 2년간에 걸쳐 쫓기고 있던 미트닉은 인터넷 시큐리티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計算物理學者인 시모무라·츠토무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하였다. 미트닉은 시모무라가 개발한 수개의 시큐리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훔치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1995년 1월에 캘리포니아주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의 인터넷 自由化의 시민단체인 일렉트로닉 후리덤 재단의 幹部室 온라인·어카운트에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가 출현한 것을 발견하였다. 의심스러운 데이터 문치는 시모무라로부터 훔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았다. 기술자가 문제의 데이터를 삭제하자 다른 고객의 온라인·어카운트에 나타났다.

2월에 시모무라는 인터넷 제공자의 네트워크·트래픽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수천개나 되는 다른 인터넷 제공자의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타의 파일도 온라인·어카운트에 출현하였다. 휴대전화가 제2의 제공자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된 후는 시모무라는 FBI와 함께 네트워크·트래픽의 감시를 개시하였다.

제공자의 전화회선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던 휴대전화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交換局이 있는 통신회사로 轉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시모무라와 FBI는 재차 조사장소를 바꿨다.

휴대전화의 通信源(根源)을 규명하기 위해

통신탐지기를 이용하여 시모무라와 전화국의 전문가는 공항근처의 주택밀집지역 부근으로 초점을 좁혔다. FBI는 정확한 주소를 밝혀내어 적절한 搜查理由를 얻었다.

1995년 2월 15일, 오후 2시 FBI수사요원은 변호인과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미트닉을 자택인 아파트에서 체포하였다.

사례3 군사연구시설에 대한 침입(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연구실은 미국 공군의 주요한 연구시설의 하나이다. 그 컴퓨터에는 인공지능시스템, 레이더 誘導시스템, 목표물탐지, 추적시스템 등을 포함한 기밀프로젝트가 들어 있었다. 1994년 3월에 누군가에 의하여 스니퍼(패스워드를 검색하는 해커용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로마 연구실의 30개의 컴퓨터가 침입된 사실이 발각되었다. 공군조사단은 누군가의 침입을 뉴욕의 제공자에, 그 후 워싱턴주 시애틀의 제공자에까지 추적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단은 뉴욕과 시애틀의 제공자와 같이 로마 연구실의 키스트로크·모니터링(온라인 상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타이핑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장치)에 착수하여 2명의 해커가 존재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1명은 「쿠지」, 또 한사람은 「데이타스트림·카우보이」라는 이름의 해커이다. 密告者의 협력을 얻어 공군조사단은 해커 2명중 1명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스코트랜드 경찰도 추적에 가세하였다. 이윽고 영국조사단은 해커가 콜롬비아와 칠레의 전화회선을 통하여 뉴욕의 제공자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로마 연구실에 침입하였던 사실을 탐지하였다. 공군조사단은 해커가 南美의 동일전화회선의 경로를 통하여 시애틀의 제공자에 접속하여 거기에서 로마 연구실에 침입하고 있었던 사실이 탐지되었다.

추적이 계속됨에 따라 해커는 일련의 미국 防衛上의 契約을 더듬어 굿다아드·우주비행센타와 라이트공군기지내의 제트 프로팔존 연구소 및 텍사스주, 뉴멕시코주의 공군계약회사를 포함한 다른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선 로마 연구소부터 공격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공격자는 NASA의 미국우주계획 컴퓨터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영국으로부터 南美를 경유하여 시애틀의 제공자에 접속한 해커는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본부 컴퓨터도 공격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가장 불안에 사로잡히게 한 것은 라이트 공군기지에서부터 입수한 데이터가 시애틀을 경유하여 舊소비에트 연방인 라트비아의 시골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탐지된 것이다. 더구나 오싹하게 하는 것은 한국의 원자력연구 시설에 대한 침입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1994년 5월 12일 오후 8시에 미국과 영국의 조사단은 런던교외의 잠복장소에서 4대의 위장순찰차를 타고 있었다. 조사단은 로마 연구

실로부터 휴대전화로 「데이터스트림·카우보이」가 온라인 상대라고 통고를 받았다. 조사단은 가택수색을 하여 해커가 16세 소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 소년 보다 조금 나이먹은 「쿠지」는 身元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쪽같이 행방을 감추었으나 결국 1996년 6월에 체포되었다.

로마 연구실의 침입에 의한 손해액은 미국 공군에서 21만1,722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액에는 공격을 받은 기타의 기관, 즉 NASA, 굿다트 우주비행센타,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프로팔존 연구소의 피해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군조사관인 짐·크리스티는 미상원 調査副委員會에서의 증언에서 공격의 전모는 밝히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로부터 무엇이 다운로드(내려 받기)되었는가, 또한 데이터가 고쳐졌는지 등은 조사할 수 없었다.

더욱이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기밀정보를 고려하게 된다면 국가기밀의 관점에서 본 실제피해총액의 산출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사례4. 布告된 사이버전쟁 (민간기업에의 침입)

미국공식소식통에 의하면 펜타건의 컴퓨터에의 공격은 연간 25만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트닉의 못된 半장난 범죄행위에서 보여주듯이 사어버스페이스의 盜賊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것은 軍事사이트뿐만은 아니라

는 것이다. 알기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의 감사절에 GE, NBC 기타의 기업은 해커침입으로 중대한 기밀누설의 피해를 입었다. 화이어월(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機密保安시스템)의 內面에서 보호되어 있어야 할 네트워크는 몇시간동안이나 혼란상태에 빠졌다. 범인은 성명문을 발표하여 스스로 「인터넷 해방전선」이라고 표명하였다. 인터넷을 「욕망의 소굴」로 하였다고 하여, 기업을 비난하고 사이버전쟁을 포고하였다.

GE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기타의 기업은 코멘트를 삼가고 있지만, 해커 지하조직 소식통의 정보에 의하면 어떤 大통신기업이 「적에게 항복하였다」고 한다. 거기에는 모든

루터(네트워크의 중계장치)의 패스워드가 변경되어 있었다. 루터는 모두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자는 일일이 전원을 내리고 手作業으로 再作動시켜야만 했다. 모든 하브(복수의 워크스테이션을 LAN에 접속하는 중계장치)가 마비되어 있었다.

기업은 自社の 네트워크 콘트롤을 상실하여 顧客 活動을 조사할 수단을 잃었다.

온라인 오퍼레이션이 며칠간, 數週間 또는 몇시간만이라도 정지된다면 당신의 기업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인가?

2. 심각한 침입으로부터 조직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

〈 교 훈 〉

발각하기 어려운 侵入被害의 衝擊은 破壞性을 증가시킨다

수많은 미성년 해커에 의한 것을 비롯하여 증대하고 있는 인렉트로닉침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대의 교훈은, 이와같은 침입이 기밀정보등을 훔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프로나, 고독한 정신이상자(사이버스페이스의 爆彈매니아)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간단히 발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조사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그것들은 전혀 감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들이 미치는 충격은 확실히 한층 더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인터넷을 통한 심각한 침입으로부터 당신의 기업정보를 지키는 데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든 기업스파이에 의한 것이든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기업기밀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행할수 있는 것도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방어대책을 본다.

대책1. 종합적인 해결책 구축(현장인식과 그랜드 디자인)

인터넷의 방어는 문제점을 분리하여 착수해서는 않된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安全上 問題의 8할은 불만이 있는 社員이나 불성실한 사원과 같은 기업내부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2할이 해커나 기업스파이, 프로의 방해자등의 외부자에 의한 것으로 믿어 왔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원들에 의한 위협 또한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電子商去來 및 조사, 연구, 비즈니스통신이나 오락의 수단으로서 월드와이드웹이 혁신되어 감에 따라 해커와 같은 외부자에 의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1998년도의 컴퓨터 시큐리티협회(CSI)와 FBI의 컴퓨터범죄와 안전성에 관한 조사가 이 불길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빈번한 공격거점으로서 인터넷접속을 하는 기업의 수는 1997년에는 전체의 47%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54%로 상승하였다. 1996년의 37%에 비하면 1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빈번하게 공격받는 거점으로서 인터넷접속에 의한 공격을 행하는 것이 내부 시스템에 의한 공격이라는 回答이 同數만큼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경향은 다른 데이터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연 1~5회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인정한 기업 중, 74%가 발생사건이 외부에 의한 것이라고 회답하고 70%가 내부

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때문에 광범위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과제이다.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부정침입에 이러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라든가 「외부로부터의 부정침입에는 저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다. 실제 「내부자」라든가 「외부자」라는 용어는 사장되었다.

다국적기업이든 거대한 정부의 일선기관이든,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어디에서 내부 네트워크이 끝나고 어디부터 인터넷이 시작되는가 하는 아웃라인을 확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防禦線이 사라진 것이다.

컴퓨터의 안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흑판에 분필로 선을 그어 선의 한 쪽에 있는 것 전부는 내부이고 반대쪽에 있는 것 전부는 외부라고 생각하여 안심하는 것같은 얼빠진 생각은 버리고 사이버스페이스를 전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컴퓨터의 안전프로그램이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잘 되지 않는다.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엄격하고 계속적인 위협분석과 관리
- 일련의 적절한 정보관리규정의 엄수
- 충분히 힘을 축적한 컴퓨터 管理 人員
- 고도의 테크놀로지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기본요소를 하나씩 검증하여 보자.

대책2. (위험 분석 ①) 위험의 중요도와 방어비용의 측정

예상되는 모든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 안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을 잃게 될까, 그것을 잃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를 自問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용의 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전략을 안출해내야 한다.

이런 類의 사업을 위험분석촉진과정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다우케미칼社의 단·아윈, 사이버세이후社의 톰·페르티아, 프라이스위타 하우스社의 웨리·자코비 등의 컴퓨터 관리의 전문가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테크닉의 본질은 常識이다.

대책3. (위험 분석 ②) 넷트의 활용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검토

여러 가지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위험으로부터 1건씩 정리하여 모든 항목을 현상유지 상태로 보유하는 것과 적절하게 대처하여 나가야 하는 항목의 어느 쪽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들면 인터넷으로부터의 공격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인터넷활용법에 의하여 인터넷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도 달

라지게 된다. 만약 WWW베이스의 電子商去來를 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를 행하는 경우라면 광범한 범죄행위로부터의 防禦에 많은 자금을 소비하여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을 전자메일 및 웹 사이트의 브라우저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어떤 類의 악덕한 행위에 대한 방어대책의 도입만을 고려하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인터넷에서의 電子商去來를 검토하지 않으면 예를들어 인터넷에서의 금전상의 부정행위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위험분석」은 컴퓨터의 안전관리프로그램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는 것이다. 한번 고려하였다고 해서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위험, 위험성과 약점을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課題考慮의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원조하기 위하여 리스크워치社(아나폴리스, 메릴랜드州) 등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자동위험분석장치도 있다.

대책4. 룰(Rule)의 작성(적절한 정보관리규정의 작성)

인터넷 및 WWW는 空前(註: 비교할 만한 것이 전에는 없었음을 의미)의 이익과 성장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나 동시에 空前의 위험성도 초래하였다. 이 새로운 리스크, 위험성 및 약점에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

은 기업내부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전체에 적용하는 정보관리규정(「최적의 규정」또는 「기준」이라고 불려지고 있다)의 작성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들어 1996년 후반에는 뉴욕의 연방리저브 은행은 금융서비스업계의 정보관리활동의 기준설정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안전관리팀을 결성하였다. 팀은 안전관리회사, 프로바이더(제공자), 운수업자, 공인회계사사무소 기타의 관련기업과 함께 금융서비스기관의 대표부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인터넷테크놀로지의 전체상과 인터넷에 접속된 인터넷사이트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관리규정과 함께 개인적으로 로컬(Local) 광역네트워크와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관리규정의 지침을 보급시키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뉴욕주의 연방리저브 은행이 지적한 인터넷 정보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정보관리규정

- 파이어월과 사이트서버의 배열을 심플하게 유지한다
- 企業비지네스의 요구(Needs)를 지탱하는 화이어월과 인터넷·사이트서버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 및 서비스만을 남기고 그밖의 것은 제거한다
-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액세스콘트롤을 정확히 構成한다
- 市場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정기적으로 네트워크와 화이어월의 약점을 검색한다

- 어플리케이션마다 분리된 프로키시·서버(실제의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代理서버)를 강구한다

- 서비스프로바이더의 시큐리티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큐리티를 포함한 총괄적인 계약을 프로바이더에게 요구한다

-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있는 각 데스크 탑 시스템에 바이러스검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電子郵便의 프로키시·서버 등의 중요한 엔트리포인트에 바이러스檢索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外部유저(사용자)로부터의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Telnet接續(인터넷으로 접속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임)을 불가능하게 한다. 外部에 대한 Telnet接續은 지정한 개소에서만 하게 한다

- 고객과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하여 公開키(key)와 비밀키(key)에 의한 暗號化技術의 도입을 강구한다

- 거래상의 서비스를 電子上에서 가능토록 하는 경우, 고객에게 확고한 認證方式을 요구한다

대책5.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시큐리티팀의 편성·강화)

리스크분석을 확실히 하여 적어도 이론상 당신의 기업과 관련한 정보관리규정을 엄수하

였다고 하자. 그러나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절한 人員數의, 적절하게 배치된 컴퓨터정보 관리스태프가 그 프로그램을 조직전체에서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다.

많은 기업에서는 사원1,000명에 대하여 1명의 컴퓨터·시큐리티담당자가 配定되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인원 배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바, 사실 기업이 인원을 늘리지 않은 채 인터넷 보호를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태만이 될 것이다.

베이스라인 소프트웨어社(www.baselinesoft.com)의 컨설턴트인 차일즈·크렛센·우드의 協力下에서 컴퓨터·시큐리티협회에 의하여 정리된 1998년도「정보관리인원수 및 적절한 배려」에 의하면 조직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 정보시큐리티 인원이 全勤勞者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에 비하여 49%나 증가하였다.
- 회답자는 시큐리티인원수가 금후 1년간 15%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 회답자는 정보시큐리티의 예산이 금후 1년간 20%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 금년도의 情報시큐리티의 外部發注의 作業이 조직 내외의 모든 업무내용의 7%까지 증가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의 시큐리티부문은 기업내의 어느 부문에 報告義務를 지우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조직에서는 컴퓨터·시큐리티담당자는 情報管理시스템部(IS)에 소속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監査部나 保安部에 소속되어 있다.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컴퓨터·시큐리티는 IS부, 監査部 및 保安部로부터 떼어내어, 임원(가장 적절한 것은 情報部門의 간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치된 생각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組織的인 決定權이 집중된 임원에게 보고토록 하는 형태는 인터넷관련 컴퓨터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동안은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압축하여 組織的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대책6: 전문적인 기술도입 (情報保護프로그램의 有效性 測定)

그러한 체제를 시행한 후에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고도의 기능을 가지는 테크놀로지 도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 인터넷 경유의 인터널·콘트롤·트래픽에 대한 화이어월
- 화이어월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사하는 侵入探知시스템(IDS)
- 크립트·시스템(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정보흐름(flow)의 機密性 및 디지털 인식에 의한 정보·유저(사용자)를 認證한다.

조직은 리스크분석과 정보관리규정 등의 컴퓨터·씨큐리티管理專門家외에 화이어월, 攻撃探知시스템 및 크르트·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테크니칼·인터넷·씨큐리티의 기술적 전문가를 조직내에서 필요로 한다.

컴퓨터·씨큐리티협회는 정보보호평가키트(IPAK)를 案出하여 정보관리규정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 키트는 자기평가테스트이며 조직의 정보보호프로그램의 유효성 측정을 돕는다.

IPAK는 20개 항목 하나 하나가 10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바 예를들면 인원의 씨큐리티와 워크스테이션의 씨큐리티와 같은 다른 광범위한 관점의 안전관리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WWW兩者의 씨큐리티항목도 다루고 있다.

50페이지의 WWW씨큐리티用的 IPAK체크리스트는 인터넷·씨큐리티의 인스트라터, 릭·화로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WWW씨큐리티用 체크리스트

□ 가능한 한 단순화한 시스템 구성(塞호스트)이 있다(서버가 복잡화함에 따라 시스템 노출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와 같은 것이 점점 증가한다)

□ 퍼블릭콘텐츠가 있는 웹서버는 화이어월의 외측에 설치하여 CGI스크립트에 의하여 화이어월의 내측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낸다

□ 설정의 시스템코맨드나 CGI스크립트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버側에서 "Include"코맨드의 사용을 피한다

□ 웹서버에 대한 접속은 업무에 필요한 것에 제한한다

□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強力한 패스워드(1회에 한해 유효한 원타임 패스워드가 바람직하다)를 사용한다

□ 사용되지 않은 셸/인터프리터는 배제한다

□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로그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예: 이상하게 긴 리스트를 가진 CGI스크립트는 침입의 시도를 나타낸다)

□ 적절한 파일, 디렉토리에 대하여 소유자명/악세스/ACL 등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예를들면 서버의 루트디렉토리는 관리자만이 記入 가능하고, 문서화일은 콘텐츠관리자만이 기입할 수 있도록 함)

□ 콘피규레이션(시스템構成) 및 로그화일은 관리자 이외에는 공개불가

□ 自動디렉토리表示는 피한다

□ 심볼릭링크는 피하고 그 대신에 파스에이리어스를 사용한다. 웹콘텐츠는 관리되고 있다(사전검사없이 새로운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유저(사용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디렉토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서버는 가능하다면 非管理者모드로 실행된다(WindowNT에서는 불가능)

□ 非관리자에게 記入許可가 주어지지 않는 한, FTP서버와 디렉토리의 계층구조는 공유할 수 있다. 문서화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경우 IP어드레스와 사용자 認證을 짜 맞추어 사용한다

□ 暗號化(SSL 또는 SHTTP)는 電子商去來에서는 機密情報(개인정보, 신용카드번호 기타)의 통신에 이용된다

□ CGI스크립트는 cgi-bin 또는 스크립트디렉토리에 보존된다

□ Perl이나 command-com과 같은 인터프리터는 cgi-bin 또는 스크립트디렉토리에 절대 넣지 않는다

□ CGI스크립트에서는 C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사용한다. CGI스크립트는 근원이 어디부터 인가를 반드시 세밀히 검사한다. 사용자의 CGI스크립트에 대한 입력은 올바른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로그나 URL기록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폼(form)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GET가 아니라 POST를 사용한다

□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로 되는 정보만을 로그하여 그러한 로그는 비공개로 한다

【용어설명】

• CGI스크립트: WWW서버가 발신하는 데이터 처리를 기술하는 一種의 프로그래밍 언어

• 셸: 입력된 코맨드를 해석하는 프로그램

•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의 해석과 실행을 행하는 프로그램

• 디렉토리: 컴퓨터 기본소프트의 파일관리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개념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 最上位의 계층을 루트디렉토리, 하위의 디렉토리를 서브디렉토리라고 함

• ACL: 파일의 액세스 制御리스트

• 서버루트: 서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디렉토리

• 자동디렉토리 表示: 파일의 알람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것

• 심볼릭링크: 루트로부터 목적의 파일에 이르는 經路의 정확한 기술

• 파스에이리어스: 목적의 파일에 이르는 經路를 省略形으로 기술된 것

• FTP: 네트워크上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手順의 一種

• 스크립트: 프로그램이나 마크로(복수의 命命群을 하나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도록 정의한 것) 등을 기술한 텍스트. 일반적으로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言語가 아니고 통신소프트의 自動運轉用의 마크로 등을 일컫는 경우가 많음

• C프로그램: C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기술된 프로그램

• URL: WWW上의 홈페이지

- GET/POST: CGI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코맨드의 일종

대책7. 해커 雇用的 위험성(해커를 컨설턴트로 채용하지 말 것)

해커의 불가사의함에 반한 매스컴의 탓인가, 최근에는 해커나 前해커를 씨큐리티컨설턴트로서 채용하는 나쁜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명한 전문가의 압도적 대다수는 해커를 씨큐리티의 전문가로서 채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짓이라고 한다. 파듀대학의 컴퓨터조작·검사·정보관리기술연구소(COAST)의 진·스파호드 博士는 「그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채용한 사람은 이미 법률을 무시하고 타인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또는 그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장소에 자진해 침입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걱정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방화광이 다른사람에 비하여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해커는 다른사람과 비교해서 고도의 지식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스파호드 박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해커를 채용하는 것은 기능면에서도 좋지않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해커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특수한 방법에 의한 침입경험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큐리티에 대하여 또는 시큐리티의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면 해커를 고용하는 것의 손실에 관하여는 어떠한가?

내부자에 의한 채무사기, 사보타주, 산업스파이 활동 등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의한 범죄가 빈번히 문제점으로 부상하는 중에, 일렉트론(전자)지하조직이 기업정보시스템의 유일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해커자신이 특유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컴퓨터 시큐리티협회의 교육부문의사인 존 오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채용한 해커와 지불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시스템에 그이외에 어떠한 조작을 했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해커가 어떤대책을 강구하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해커가 당신의 내부정보를 외부의 누군가에게 누설할 가능성은? 당신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당신의 고객은 당신이 해커를 고용한 것, 그 해커가 시큐리티가 파괴를 시도, 그 결과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만일 정보의 기밀성, 정합성, 또는 유효성을 파손하는 돌연의 침입이 발생했다면, 당신은 고객과의 소송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스파호드는 기타의 손해의 가능성도 지적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타격을 받는 것은 당신이다. 해커를 채용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의 지불을 조속히 승낙하겠는가? 주주에 의한 소송시에 해커를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면 당신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8. 暗黒面의 연구(해커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류한다)


해커의 채용을 고려할 여지는 있는가? 대답은 「NO」이다. 다만, 범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악인이라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들의 활동을 배울 기회도 잃는 것이어서 이것은 소홀한 생각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신뢰가능한 제3자를 통하여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해커와의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다. 하부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컴퓨터 지하조직과 밀접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컴퓨터시큐리티 협회는 이 체제를 도입하여, 컴퓨

터시큐리티 연차회의와 그 전시회에서 「적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적과의 대화」는 권위 있는 제3자를 통하여 중계텔레콘(텔레타이프 상호영상장치)을 경유하여 재산(재무)500의 기업이나 정부기능의 컴퓨터시큐리티 전문가가 지하조직사람들과 기술적인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터넷에서의 해커의 성공은 거의 리스크분석, 정보관리규정, 인원의 할당, 인원의 훈련 및 컴퓨터시큐리티 담당자의 배속이나 화이어월의 적절한 설정 및 관리의 고려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해커특유의 재능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대부분의 경우 해커 특유의 기능은 “시스템에 침입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에 제한된다. 이 지적 정도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당신조직의 기업비밀을 노리는 것, 보다 위험성이 높은 기업스파이나 프로의 사보타주에 직면하는 것은 곤란하다.

WEB의 가능성을 잘 이용하는 것은 그 暗黒面, 막다른 음모의 WEB도 전문적으로 철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장 제 언

- 
- [巡]과 [察]은 만점, [警戒] [制壓]은 미숙/ 이돈일
- '98. 7.16. 03:47. 신창원 발견시 교훈 -
※ 범죄대응력강화방안
 - 치안상황 구내방송/ 황규정

[巡]과 [察]은 만점, [警戒] [制壓]은 미숙

- '98. 7.16. 03:47. 신창원 발견시 교훈 -

<치안연구소 연구관>이 돈 일

[警察]이라는 두 글자를 [警戒+巡察]과 [警戒+査察]이라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순찰]은 제복경찰관의, [사찰]은 사복경찰관의 근무방식을 각각 지칭하는 것이라 하며 [경계]는 제복과 사복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경계](뜻밖의 현상에 부딪쳐 뜻밖의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다잡아 조심하고 상응한 견제 제압태세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無知하다 할 정도의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관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순경교육시에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계순찰]과 [경계사찰]입니다.

① 순찰 또는 사찰을 하는 방법, 그에 따른 질문방식과 경계요령이 말로서가 아니라 實演教育(배우는 사람이 그 役을 실제로 해보는)을 통하여 교육기간 내내 매일 반복시켜야 합

니다.

②. 그 다음은 [正直性]교육입니다. 아무리 경계순찰을 잘하고 경계사찰을 몰생틈없이 하더라도 그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다면 그 직후의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1건씩의 허위·축소·과장·은폐보고의 사례를 놓고 토론케 하고 所感을 발표케 하여 그 폐해에 물들지 않도록 각인시켜야 합니다.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계순찰(사찰)]이며 가장 원칙적인 것은 [정직성]입니다. 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관을 길러내는 교육이야말로 경찰관교육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교과과정을 기본과 원칙위주로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방법도 직접 해보는 實演교육(경계순찰(사찰))과 자신의 의견을 직접 앞에 나가 발표하는 사례체험교육(정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범죄대응력 강화방안

범죄대응력강화방안

[참 부]

- 탈주범 신장원 검거실패를 교훈으로 -

【基本技가 몸에 배도록 : 순찰 팀문 검문검색 발표 등】

【原則이 몸에 배도록 : 업정성 정직성 친절성】

항목	체 용	신 임 교 육	보 직 관 리	보 수 교 육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의 단계적 인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장기적 인육의 인력지원 계획 부재 -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이 일정하지 않아 공직지망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춤으로서 우수인력 응시에 장애 ○ 채용요건의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일반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필기시험으로 업무활용도 미흡 - 확실적인 신체검사, 면접시험기준을 설정 가능별 업무특성을 무시 ○ 우수지원유인책 및 홍보활동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신문광고, 캠퍼스방문 유인활동등 적극적 홍보 활동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과정 교육기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채순경의 경우 24주(6개월), 특채는 12주(3개월)의 단기교육으로 충분한 교육효과 기대 곤란 ○ 교재의 전문성 및 기저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관요원들이 경위급으로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담당과목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 곤란 - VTR, OHP, 발표프로젝트, 566급 컴퓨터등 영상교육매체가 교육인원에 비해 절대 부족 ○ 교과목의 과다 및 이론과 실수가 조화되는 교육운영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내에 너무 많은 교과목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교육효과 저하 - 이론위주의 교과편성으로 신입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 - 관서실습을 교육후반(3/4시점)에 편성, 실습과 교육의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직관리 불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관리의 편견,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보직배치 개연성 상존 - 직무교육 또는 간부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찰관이 타부서에 배치되는 사례 허다 ○ 경과 및 전문특기제도 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화를 위해 채택된 특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 ○ 보직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 비능률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비례의식으로 보직 경쟁 격화 - 인간관계 저해, 불신증조 및 능률·사기저하 - 수사인부의 잦은 교체로 조직역량 및 일관성 있는 수사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의 중복성 및 비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정보로 소양·교양, 실무과목으로 확립적으로 편성, 차인화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능력 부족 - 재직자교육도 신입교육과 유사한 교과목을 편성 - 반복교육을 실시, 교육충전에 대한 흥미 상실 ○ 교육의 체계성 및 보직과의 연계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또는 전문화교육이 일정한 체계나 단계·절차 없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되어 보직과의 연계성 및 교육효과 미흡 ○ 정신교육 및 현장교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직업관, 사명감,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 미흡 - 이론중심교육 및 교관요원들이 실무경험이 적어 실무와 연계된 생생한 현장교육 실시 곤란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인력계획 및 연간 시험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규모, 기능별배분, 경기적계급구조개선등 인력계획 수립 - 년간 전반적 시험일정을 연중상설로 게시, 우수지원요집 유인 ○ 채용요건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조직 건반에 대한 이해도 및 역할에 관련된 지식 측정을 위해 경찰행정학 또는 범죄학 시험과목 포함 - 형사요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위험성 등을 고려 체력조건강화 - 신장 165cm~168cm, 체중 55kg~58kg이상자 선발, 유단자 우대 ○ 채용의 적극화 및 홍보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TV광고, 인사담당자 캠퍼스방문등 적극적인 홍보 및 인재유치 활동 전개 - 경찰서, 파출소 등에 경찰지원 문의창구 상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과정 교육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특채 12주, 공채 24주 교육기간을 1단계로 전과정 24주(6개월), 2단계 36주(9개월), 3단계 52주(13개월)로 연장하고, 대졸이상 학력소지자는 1/2로 단축 ○ 우수교관 및 기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실무경험 3년이상, 학위소지 경위급이상 을 교관으로 선발 교육의 내실화 도모 - VTR, OHP, CD-ROM이 달린 566컴퓨터등 교육기자재 확보 ○ 기초 및 실무중심 교과목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훈련과정(기본교육, 직무교육)에서 중복되는 유사과목은 축소하고 기초·실무중심의 교과목으로 편성, 실무이론 숙지 및 대응력 제고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서실습시기는 교육기간 1/2시점으로 조정 - 신입교육과정에 순찰·검문검색 요령, 체포연행술·홍신술 등 무도훈련 및 사격훈련 심도있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보직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보직기준을 설정,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보직배치 - 직무교육, 전문화교육, 간부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찰관은 해당업무분야에 우선중점 제도화 ○ 경과 및 특기제도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및 특기제도를 최대한 활용,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잦은 보직교체 지양 및 순환기간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업무분야별 전문성 및 연계성을 고려, 잦은 보직교체 지양 - 보직의 순환은 경위이하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경찰 경험은 일반경찰행정가로서 능력발휘가 가능한 방향으로 시도 <p>※ 순찰의 경우 임용후 처음 보직은 파출소 → 기동대 근무를 원칙 → 이후 적성·능력 감안, 전문분야 3년 내외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의 통합조정 및 교육기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교과목을 교육과정별로 분류·통합 - 주입식 강의위주에서 탈피,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 분임토의, 모의연습, 역할극기등 신교육기법 도입 ○ 직무과정과 교육과정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체계를 단계별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양체로 체계화 - 일정단계에서 일정기간(2~3년)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인교 교육충원을 받도록 제도화 ○ 정신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윤리의식 및 직업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신교육강화 → 특히 정직성 친절성 청렴성 - 비밀지킬 수 있는 경찰행동규범, 경찰정신(혼)을 주입시킬 수 있는 정신교육 강화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교관 확보 - 실무과목의 경우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자 선발

항목	직장훈련	외근경찰의 의식 및 근무체계	범죄초동 조치 및 대응 체제
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훈련에 대한 관심도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훈련에 대한 지휘관 및 간부의 관심도가 높아져 직장훈련 자율참여 및 열의저조 - 직장훈련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지 곳에 참여 ○ 범죄대응훈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사용요령, 시각, 무도훈련 등 평소 직장훈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훈련성과 미흡 및 근무 기강 해이 - 특히 순찰·검문검색 요령에 대한 교육 미흡 ○ 훈련시설 및 기구 정비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경찰서별로 상무관 또는 강당을 이용, 직장훈련을 하고 있으나 훈련시설 및 체력단련 기구·장비 등 거의 전무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형사 근무기피 분위기 확산으로 우수요원 확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형사 년중무휴, 잦은 동행 및 업무과중으로 지원기피 심화, 형사요원 충원에 예외 ○ 파출소 요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출소 근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정계처분자·고령자 등 부적격자 파출소 우선 배령 ○ 사명감·책임감·끈질긴 직업인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살고 있다고 인식, 사회통조가 일선경찰관들에게 파급되어 끈기, 노력 등 기본적인 경찰직업관 결여 ○ 수사·형사 및 파출소직원 근무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발생시간 인수인계가 안되고 교대조 및 동료간 불신감 조성 - 범죄발생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관행적 근무지정으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효과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 소홀 및 상송전파체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등을 이유로 신고접수 기피, 타파출소로 신고중용, 능력 출동 및 상황보고 지연 - 112신고 접수시 정확한 현황위치 확인 결여, 관할구역 착오 등 기본적인 상황전파체제 미흡 ○ 현장 근무경찰관 문제의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금 스티카를 발부하면서 공개수배된 범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 문제의식 부족 - 범죄금 스티카를 발부하면서, 체포를 위한 직정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대처 미흡 ○ 돌발사건에 대한 대비태세 및 응급해결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인에 대한 경계 등 현상대태세와 진압요령 미숙으로 총기 피발 및 범인으로부터 위해 저조 - 강력법 수사 및 검거상 총기적용사용 요령 미숙 - 법인법 수사 및 주격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격능력 부족으로 범인검거 실패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교육의 실효성 확보로 직업인성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 및 현장대처능력 반복교양 - 범죄요인분석 심리 및 강력사건 현장대응 시뮬라 교과제 개발·활용 ○ 지방청단위 직장교육 지정·교과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및 경찰서 경감·경정급 과·계장을 지정, 순회현장감독 및 직무교양 실시 - 무도·시각훈련 강화 - 무도·체포연습을 월1~2회에서 주1회로, 형사 및 파출소 직원 외근사격을 년4회에서 6회로 배가(장제사격 상하반기 2회 포함 총8회) ○ 일상교육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신고접수·처리, 상황보고, 초동조치, 각종 사건사고 처리, 검문검색, 총기사용요령 등 실무사례중심 교양 실시 - 과·계·파출소단위로 1일초회 확행 ○ 지휘관 및 간부의 관심도 제고 및 현지확인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관 및 간부가 출신수범 예방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현지확인 점검 확행 ○ 직장훈련시설 및 기구장비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훈련 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등 정비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근형사 휴무일제 시행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외근형사 휴무일제 보장, 시기제고 ○ 파출소 형사제도 시행 및 내근근무 전담경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경력자 또는 형사요원을 파출소에 배치 - 폭력 등 경미범죄 전담 및 관내 우범지역 집중관리 ○ 파출소 내근근무 전담경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교통사고발생 등 각종 치안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외근요원(파출소, 형사)정신교육 강화 및 적성 검사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교육, 일일초회시 사명감·자긍심·소명 의식 고취 등 정신교육 반복 실시 ○ 외근근무에 요구되는 신체 및 운동능력을 일일 정·연령제(40세이상)에 대하여 2~3년 단위로 측정 ○ 근무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출소·수사·형사근무자 아간회합시간대 취약지역 거점배치 순찰 및 검문활동 강화 - 방순대, 기동대 등 가용능력 확대 등한 주요 '막' 과 우범지대에 중점배치 방법활동 및 범법자 입퇴로 차단 - 도보 및 112순찰 배가 범죄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정확한 신고처리 및 상황전파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구두신고시 관할 및 가능능력 시간수리, 112 지령실용을 통한 신속·명확하게 전파하도록 반복교육 실시 및 감독자 수시확인 확행 - 중요사건 발생시는 인접시 형기차 및 인접파출소 112순찰차동 현장동시출동 지원 협조 - 112지령실용 상황실과 통합운영, 상황실장이나 당직관이 직장 관리 - 지령요원은 경합있고 유능한 경사급으로 배치, 긴급사건에 즉응 - 중요사건은 당직관 또는 상황실장이 우전기통 검고 직접지휘 ○ 중요사건수배자 숙지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감독 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수사와 조회사 중요수배자 및 지시사항 숙지여부 등 반드시 확인 - 중요수배자 및 지시사항은 소환전단 등 제각 형사 휴대하도록 의무화 ○ 범죄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체계적·조직적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대응 모의훈련 실시 - 범죄예방을 기성, 가용능력·장비를 총동원 장기적인 모의훈련 실시로 신속한 경위배치 및 범인조기 검거 등 범죄대응능력 배양 - 총기사용에 대한 교양 및 무도·사격훈련 강화 ○ 외근형사, 파출소경찰관 등 일상 교양 및 무도훈련 강화, 현 장대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사용요령 총기사용 5대안전수칙, 사격자세, 조준 등 사격 기강 연마 - * 무기사용요건에 해당할 경우 1차: 경고, 2차: 공포발사, 3차: 대피부 이하 발사 사용요건 * (CASD) 제작 확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문검색 방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적위험 검문행태를 지양하고 검문검색 실시목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검문대상을 선별적·전략적으로 선정 실시 - '꼭' 을 효율적으로 선정, 검문검색 효과 배가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만 해소 ○ 검문검색시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교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정·침착하고 불의의 기습에 대비 장봉 및 권총휴대 피검문자 중심으로 진후 또는 좌우로 경계대세 유지 - 범죄용의차량은 차내부 및 뒷좌석까지 철저한 수색 - 차량승무자 인상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정차, 엔진을 끄게한 후 하차하도록 유도 - 언어구사에 유의하고 의연·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불심정을 불차히 규명 ○ 공조수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조수사에 대한 일제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일선 경찰서에 공조수사업무 전담인력 확보 - 범죄정보는 관련 경찰관서간 공유하도록 '수사정보 교환시스템'(경찰청 형사과 지도관실 또는 공조계)구축 ○ 중합적 판단에 의한 구체적인 명확한 사건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은 실무경찰이 풍부한 수사간부가 장의, 지휘·감독하도록 제도화 - 사건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 수사요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확한 임무 부여

치안상황 구내방송

- 모르는 상태에서 공감할 수 있는가 -

〈치안연구소 경위〉 황 규 정

경찰관이 그날그날의 치안상황이나 사건사고에 알게되는 방법은 거의 100% TV뉴스나 신문보도를 통해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결국 지나간 [過去]만 알고 지내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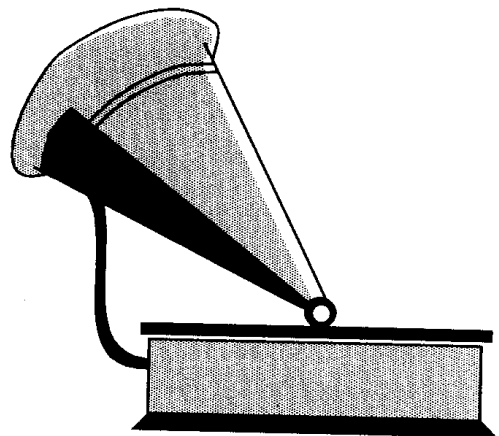
[오늘]이나 [지금 이시각]의 치안상황은 캄캄한 실정입니다.(물론 담당부서에서야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지방청은 지방청마다, 경찰서는 경찰서마다 구내방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경을 중심으로 전 의경과 남자경찰관이 참여하는, 취미활동으로서의 [구내방송클럽]을 만들어 2시간 또는 3시간 간격으로 치안상황을 스포츠식으로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 5분내외가 적당하고 그 이상 길어지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치안정책연구

발행일 : 1998년 9월

발행인 : 이 규 식

발행처 : 치안연구소

인쇄처 : 대한문화사

본지 수록 내용은 치안연구소나 경찰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비매품>

